

#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 9 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 제 9 호

### <평 양>

학술대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관계법의 특징에 대하여” 발표논문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구성체계와 특성	안 효 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강 정 남	16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문 철 만	32

### <서 울>

20세기 서울경제 100년의 전개과정

-인구와 산업별 변화를 중심으로-

유 광 호 60

美軍政期 教育財政의 實態

이 길 상 82

### <일 본>

한국의 FTA정책

고 용 수 97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금융노동에 있어서의 Dualism의 심화

-은행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창 명 107

조선에 있어서의 인건직물업의 전개와 일본제국경제권

福岡 正章 121

#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구성체계와 특성

안 효 식

김일성종합대학

## 1.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구성체계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구성체계에 관한 문제는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들이 어떤 종합적인 구조와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립법기관이 수많은 채택, 발표하는 대외경제관계의 부문법들을 대체로 어떻게 종합일반화하고 분류할 수 있겠는가 하는 학술리론상의 문제이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구성체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가지는 것은 공화국의 대외경제정책의 진수와 그 발전방향, 현행 대외경제관계법들의 내용들에 대한 명백한 리해를 가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면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은 어떤 종합적인 구조와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경제관계들을 포괄범위로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공화국대외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법들은 우리 식의 독특한 구성체계를 이루고 있다.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법은 크게 3개의 체계 즉 무역관계법, 투자관계법, 분쟁해결관계법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1) 무역관계법

무역관계법은 상품 및 기술수출입과 관련한 계약체결질서, 수출입검사질서, 위생검역질서, 외화관리질서, 수송 및 항만리용질서, 보험질서 등을 규제한 법규범들의 총체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법, 기술수출입법, 대외경제계약법, 수출입상품검사법,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외화관리법, 귀금속관리법, 해운법, 항만법, 해상감독법, 보험법, 세관법 등을 포괄하고 있다.

무역법은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된 것으로서 무역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무역법의 기본, 무역회사, 무역계획, 수출입허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무역법의 기본》에서는 수출을 장려하며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할 데 대한 방침, 신용제일주의원칙과 자립적민족경제보호원칙 및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 그리고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

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무역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당의 기본방침과 원칙적요구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무역회사》에서는 무역활동의 담당자로서의 무역회사의 법적지위와 그에 대한 허가, 무역회사의 활동원칙, 무역회사의 책임 및 해산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무역계획》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의 하나로서의 무역계획의 종류와 수립원칙 그리고 무역계획실행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수출입허가》에서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으로서의 수출입허가의 중요성과 허가절차, 수출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품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무역발전의 중요담보로서의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하며 이를 위해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로 경제외교 및 무역지도위원회를 둔다는것, 교통운수기관, 무역회사, 외화관리기관, 세관 및 상품검사기관, 검역기관 등 해당 기관들의 무역활동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활동원칙, 무역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의 원칙 등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수출입법은 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507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 수출입허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수출입기술의 심의, 기술의 수출입허가,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에서는 수출입의 대상으로 되는 기술의 범위, 국가의 기술수출장려원칙, 수출입기술에 대한 심의 및 허가원칙, 기술수출입의 당사자로서의 무역회사, 수출입분야에서 국제적교류와 협조원칙등에 대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에서는 기술수출입허가의 선행공정으로서의 수출입 기술심의사업의 원칙,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에서는 기술수출입사업발전의 기본담보로서의 수출입허가와 관련한 허가기관, 허가절차, 허가원칙, 반출, 반입승인질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국가의 기술수출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으로서의 지도통제원칙과 위법현상들에 대한 제재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계약법은 1999년 2월 26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무역법과 함께 수정보충된것으로서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대외경제계약의 양도

와 변경, 취소,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에서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으로서의 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지켜야 할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 당사자책임의 원칙, 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 등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에서는 당사자들이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을데 대한 문제, 계약의 효력발생조건,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의 정확한 리행 및 불리행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지니는 책임,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변경, 취소하는것과 관련한 제반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에서는 손해보상책임의 원칙 및 면책사유, 분쟁을 협의 또는 공화국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검사법은 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및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에서는 수출입검사의 대상으로 되는 상품과 검사기관, 검사원칙과 검사신청 및 신청서에 대한 검토확인, 검사료금, 철도역, 무역항, 국경역, 국제항공역 등 각이한 검사장소에 따르는 구체적인 검사방법들과 절차, 감정증명서 발급, 세관과의 연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경위생검역법은 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된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또는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원, 운수수단, 물품이 들어 오거나 나가는 경우에(제2조 1항) 국경위생검역질서를 세워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검역기관 및 대상, 검역장소, 검역수속 및 절차, 검역기관의 조치 및 제제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국경동식물검역법은 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된것으로서 국경에서 동식물검역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전염병과 병해충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검역기관, 검역대상, 검역장소, 검역신청 및 검역절차, 검역대상의 국경통과 및 처리원칙, 검역료금, 제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외화관리법은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반출

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함으로써(제2조) 외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외화관리법의 기본, 외화의 리용, 외화의 반출입, 제재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에서는 외화 및 외화관리기관에 대한 정의, 외국환 작업무기관, 외화의 류통원칙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2장 《외화의 리용》에서는 외화를 리용할수 있는 거래범위 및 결제 방법, 그에 대한 감독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외화의 반출입》에서는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및 귀금속의 구체적특성에 따르는 반출입질서,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리윤 및 소득금의 송금원칙을 규제하고 있다.

제4장 《제재》에서는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당사자들에 대한 각종 제재, 보상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귀금속관리법은 1999년 2월 26일 무역법, 대외경제계약법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된것으로서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귀금속관리법의 기본, 귀금속의 장악, 귀금속의 보관, 귀금속의 리용,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귀금속관리법의 기본》에서는 귀금속의 종류로서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루테니움, 로디움, 팔라디움 등을 들고 이에 대한 국가의 유일적인 장악,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귀금속의 장악》, 제3장 《귀금속의 보관》, 제4장 《귀금속의 리용》, 제5장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귀금속관리의 선차적공정으로서의 귀금속에 대한 장악사업을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것과 관련한 원칙 및 질서, 중앙은행 및 귀금속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귀금속보관원칙, 귀금속의 공급 및 소비와 관련한 신청, 귀금속수출과 관련한 원칙, 귀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에서 비밀엄수, 감독통제원칙, 손해보상 및 제재원칙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해운법은 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2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배관리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해운법의 기본, 배, 선원, 항해, 해상수송, 배에 대한 봉사, 해난구조, 해상보험,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분쟁해결 등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로서의 배에 대한 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배관리운영기관의 독자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배국적증서발급절차와 국기계양원칙, 배의 항해안전성, 로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전성, 바다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해상감독기관의 검사문제, 배의 문건문제, 배수리 및 매매질서, 선장 및 선원의 자격 및 권한과 임무, 항해질서와 관련한 배관리운영자 및 배길표식기관, 수로기관 등의 임무, 공화국 령해와 항수역에서의 항해질서, 해상수송중의 선택에서 우리 나

라의 짐을 우선적으로 실어 나를데 대한 원칙, 용선과 관련한 계약체결 및 배짐증권발급원칙, 배운임지불, 배관리운영기관의 면책사유, 선박대리기관에 의한 외국배의 대리업무, 배길안내, 배끌기, 배에 대한 물자공급 기타 배와 선원에 대한 봉사 및 방조문제, 해난구조에서 사람부터 구원하는 원칙, 공동해손과 관련한 제반원칙, 해상보험계약체결 및 리행의 원칙,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원칙과 제재방법, 분쟁해결과 권리보장기간, 판결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원칙, 우선적해사청구권의 순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만법은 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된 것으로서 항만법의 기본, 항만건설, 항만관리, 항운영,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과의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문제, 입출항과 관련한 배검사와 배길안내, 배선, 짐상하선, 짐보관, 항만비용, 항만리용질서를 어긴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 및 손해보상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사감독법은 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된 것으로서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해난사고의 처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해사감독법의 기본,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등록과 선원의 배기술자격심사, 해난사고의 처리,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와 의장품의 설계심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과 관련한 심의절차와 그 내용표기, 배등록의 구체적인 종류에 따르는 절차, 삭제리유 및 절차, 배검사의 구체적종류에 따르는 절차, 선원증, 배기술자격증의 발급절차, 해난사고의 종류와 범위, 사고에 대한 조사심의,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보험법은 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된 것으로서 보험법의 기본, 보험당사자, 보험계약, 보험보상,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조건, 보험대상의 양도의 효과, 보험보상의 원칙, 제재 및 분쟁해결원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세관법은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된 것으로서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세관법의 기본, 세관수속, 세관검사, 관세, 제재 및 신소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세관법의 기본》에서는 관세를적용의 일반원칙, 세관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에 대하여, 제2장 《세관수속》 및 제3장 《세관검사》, 제4장 《관세》에서는 세관수속에 필요한 문건 및 그 제출자, 세관검사의 장소와 방법, 요금, 세관신고, 관세를, 관세의 계산단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 관세납부기일, 보세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제재 및 신소》에서는 연체료, 억류 및 몰수 등 제재방법과 분쟁해결 및 신소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무역관계법들의 존재형식, 원천으로는 우와 같은 국내법들만이 아니라 공화국이 체결했거나 승인한 구체적인 무역협정, 조약, 국제관례들도 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경제계약법 제5조에서는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 해운법 제10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2) 투자관계법

투자 관계법은 외국인들의 공화국령역에서의 투자형태와 방법, 특혜대우, 기업 및 시대관리운영질서를 규제한 법규범들의 총체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포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원칙과 질서를 규제한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제2조 1항)

외국투자가, 외국투자기업,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외국기업의 정의 및 특별히 장려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투자분야, 토지임대기간 및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 납세의무, 외국투자기업을 국유화하지 않는데 대한 담보, 외국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경영비밀의 비공개담보,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작법은 1999년 2월 26일 외국투자법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제2조)형태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국가가 장려하는 합작기업분야, 기업창설절차 및 기일, 기업의 양도, 합작기업에서 로력채용, 투자몹의 상환 및 리윤분배, 송금질서, 기업결산, 세금납부, 기업의 해산,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영법은 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영계약조건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합영법의 기본, 합영기업의 창설, 합영기



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려하는 합영기업부문, 유한책임, 창설절차 및 기일, 출자 및 출자 몫의 양도, 등록자본의 규모, 리사회 기타 관리기구, 규약, 영업허가 및 경영활동에서 우리 나라 보험에 들데 대한 원칙, 결산년도와 결산방법, 예비기금적립, 세금납부 및 송금질서, 합영기업의 해산에 따르는 청산수속 및 기일, 신소 및 그 처리기일, 협의, 중재,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기업법은 1999년 2월 26일 외국투자법, 합작법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인기업을 창설 운영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외국인기업의 창설,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금지하는 외국인기업분야, 외국인기업창설과 관련한 신청수속 및 절차, 기업규약의 승인, 돈자리개설원칙, 로력채용원칙, 송금질서, 보험가입, 세금납부질서, 기업의 해산수속, 파산수속, 분쟁해결방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은행법은 1999년 2월 26일 외국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4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가가 합영은행이나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을 설립운영하는것과 관련한(제2조)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재 및 분쟁해결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영은행, 외국인 은행,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수속, 절차, 투자재산의 양도, 등록자본, 적립금의 규모, 허가받을수 있는 업무, 예금지불준비금, 결산년도, 우대조치, 제재 및 분쟁해결원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대법은 1999년 2월 26일 외국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토지임대법의 기본, 토지의 임대방법,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토지임대료,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재 및 분쟁해결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토지임대기간과 토지리용권의 범위, 협상, 입찰 및 경매에 의한 구체적인 토지임대방법들과 그에 따르는 수속, 절차, 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에 의한 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 임대료, 토지리용권의 반환기일과 수속, 제재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원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제1조)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제재 및 신소의 9개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절차, 세금납부의 계산단위,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봉사소득 등 기업소득세와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등 개인소득세 그리고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의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세율, 납세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1999년 2월 26일 외국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라선 경제무역지대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제2조)의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관리운영기관의 임무와 권한,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관세, 통화, 금융, 담보 및 특혜, 분쟁해결 등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무역, 외국투자, 지대의 개발과 그 관리운영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하고 있다.

공화국 투자관계법들의 존재형식, 원천으로는 우와 같은 국내법들만이 아니라 공화국이 체결했거나 가입, 승인한 구체적인 투자협정, 조약, 국제관계들도 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제7조에서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라 세금을 바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3) 분쟁해결관계법

분쟁해결관계법은 대외경제거래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분쟁문제들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기 위한 질서를 규제한 법규범과 규정들의 총체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사소송법, 이 밖에 조정 및 협의와 관련한 규정들을 포괄하고 있다.

대외민사관계법은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된것으로서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사이의 재산가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제(제2조) 함으로써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재산관계, 가족관계, 분쟁해결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본국법, 거쳐지법, 기국법, 계약체결지법, 행위수행지법,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 위법행위지법등의 구체적인 대상들과 그 기본원칙 그리고 분쟁해결을 위한 관할권, 재판 또는 중재수속의 거부 및 중지사유, 증거수집, 외국 판결 및 재결의 승인 및 집행절차와 관련한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채택된것으로서 무역, 투자, 봉사, 해상, 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등과 관련한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중재제기, 중재심리, 재결과 그 집행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에서는 대외경제중재로 심리해결할수 있는 분쟁과 중재활동에서 객관성,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허물있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원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중재제기》와 제3장 《중재심리》, 제4장 《재결과 그 집행》에서는 중재제기로부터 심리의 종결과 그에 따르는 재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200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69호로 수정보충된것으로서 공화국대외민사관계법에 규정된 재판관할에 속하는 무역분쟁사건들을 소송절차로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일반규정, 소송당사자, 증거, 재판관할, 소송의 제기, 재판준비, 재판심리, 판결, 판정, 제2심재판, 비상상소, 재심, 판결, 판정의 집행 등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사건에 대한 관할원칙, 사건의 조사 및 심리의 원칙, 재판소구성, 소송기간, 소송비용, 조서, 판결서, 판정서작성원칙 등 사건해결과 관련한 원칙적문제들과 절차상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에서 분쟁해결관계법의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사자들사이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질서와 질서를 규제한 조정 및 협의규정들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조정 및 조정을 위한 독자적인 법전이나 법규는 없고 단지 대외경제계약법이나 대외경제중재법, 합병법 등 대외경제관계법들에 개별적인 조항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을뿐이다.

공화국분쟁해결관계법들의 존재형식, 원천으로는 우와 같은 국내법들만이 아니라 공화국이 체결했거나 가입, 승인한 구체적인 분쟁해결협정, 조약, 관례 등도 될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외민사관계법 제6조는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중재법 제 7조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이상과 같은 모든 국내법들과 국제협정, 관례들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과 성격, 원칙과 요구 등의 측면에서 서로 떼어놓지 않고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유지, 보충하는 긴밀한 관계속에서 하나의 전일적인 우리 식의 대외경제관계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외민사관계법 제13조가 정한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다.

## 2.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특성

우리 식의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은 일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의 특성은 첫째로,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무역활동에서 신용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과 신용제일주의원칙은 공화국의 대외경제활동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되고 있다.

공화국무역법에서는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에 대한 지도와 보장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제7조),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무역발전의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한다.》(제44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제54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수출입법에서는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술수출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제21조),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제22조1항), 대외경제계약법 제7조 1항에서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 일체 대외경제활동은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에 기초하지 않은 일체 거래는 무효라는 것을 의미하는 규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은 무역회사의 등록과 영업허가, 가격승인, 수출입허가, 반출입승인, 무역계약의 체결과 리행, 시장개척 등 전반적인 무역활동을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투자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유효성, 집행력을 결정짓는 기본조건으로도 된다.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성질의 거래 및 그와 관련한 담보제공, 투자 등 행위들은 당사자들의 주관적의사나 행위만으로는 절대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대외경제거래와 관련한 모든 법률행위는 오직 국가적으로 승인된 계획에 따라 국가가 정해 준 한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 수행될 때에만 국가적보호를 받게 된다. 공화국 무역법 제14조에서는 무역회사들이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진행하며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기술수출입법 제18조 2항에서는 나라의 안전과 리익과 지장을 줄수 있는 기술은 수출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요구, 국가의 법과 규정을 어기고 수행하는 위법행위, 불법행위 그리고 거래의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국가의 법적통제를 《합법적으로》 벗어 나는 이른바 《탈법행위》에 기초한 재산거래와 그 《안전》을 위해 맺은 담보계약이나 행위들은 철저히 무효이다.

공화국민법 제26조와 무역법 제46조 2항, 제55조들에서는 해당 민사법률행위가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들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국가통제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법적담보없이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을 내보내는 행위를 할수 없으며 영업허가증없이 무역거래를 하였거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반출입승인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상품과 돈을 몰수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는 일단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거래들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은 무역거래를 비롯한 모든 대외경제활동의 선결조건이며 생명이다. 공화국 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 원칙적으로 준수할것을 요구하는 신용은 국가의 신용이 아니라 무역회사를 비롯한 개별적거래당사자들의 신용이다.

국가는 무역회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거래 당사자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거래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상 의무를 제때에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화국무역법 제22조, 대외경제계약법 제6조에서는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해당 무역회사의 책임은 다른 회사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으며 그 리행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가 책임지도록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거래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은 무역회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거래에 참가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 조건, 지불기일 등 계약상의 의무를 제때에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공화국은 모든 대외경제거래들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법

적으로 규제하고 그를 어기는 현상들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경제계획법 제32조 1항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법에서는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때에 리행하도록 한다.»(제4조), «무역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계획실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제34조), «세관과 상품검사기관, 검역기관은 수출입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할수 있게 무역화물을 제때에 정확히 검사, 검역하여야 한다.»(제50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활동에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원칙과 신용제일주의원칙은 계획경제의 특성에 맞게 대외경제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들의 신용도를 최대한 높여 주는 우리 식의 대외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의 특성은 둘째로, 모든 대외경제활동을 철저히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하는데 지향시킨다는데 있다.

상품을 하나 수출하고 설비를 하나 수입해도 그리고 외국의 투자를 하나 받아 들이고 기업을 하나 창설해도 그것이 철저히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대외경제정책이다.

이로부터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는 모든 대외경제거래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고 공고발전시키는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한 무역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 수출입허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한 기술수출입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한 세관법 제1조가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 규제하고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보호 및 공고발전원칙은 우선 수입보다 수출을 장려하는데서 표현된다. «수출입허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며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공간이다.»고 규정한 무역법 제6조 1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수출품의 질을 높여 수출계획지표와 수량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수입원료, 자재, 연료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실속 있게 벌려 수입계획지표와 수량을 체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규정한 무역법 제28조 2항과 제29조 2항,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품의 비중을 높이며 보세가공무역, 샅가공무역, 위탁무역, 중계무역, 입찰무역과 금융, 보험, 수송, 통신, 상품검사 같은 여러 분야에서 봉

사무역을 적극 벌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수출품생산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려야 한다.», 《수출품, 수출협동품 생산계획과 수출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금을 준다. 첨단 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단위에는 특혜를 준다.》고 규정한 무역법 제46조 1항, 제51조, 제53조들이 그 대표적인 조항들이다.

수입보다 수출을 장려할데 대한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기본요구, 기본정신은 시장수요가 높은 상품, 기술, 로력 등 외환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출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계획지표와 수량을 끊임없이 늘이며 각종 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외화를 많이 획득하는 한편 수입원료, 자재, 연료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수입계획지표와 수량을 체계적으로 줄이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공고발전시키도록 하자는것이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 규제하고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보호 및 공고발전원칙은 다음으로 투자분야에서 외국의 투자가들로 하여금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도록 여러가지 특혜조건을 제공하는 반면에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대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데서 표현된다.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규정한 외국인투자법 제8조와 러선경제무역지대안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들에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으며 그다음 2년까지는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주는 등의 특혜조건을 보장해 주는것과 관련한 외국인투자법 제9조의 규정,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과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10년까지 낮추어 주거나 면제해 줄수 있다고 한 토지임대법 제33조 2항,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 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세관법 제34조 3항, 그리고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 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규정한 외국인투자법 제11조,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수 없다.》고 규정한 외국인기업법 제3조 2항,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특수경제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세관법 제 35조 2항을 비롯한 여러 조항들이 그 대표적인 규정들이다.

외국의 투자가들로 하여금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금지하거나 제한할데 대한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기본요구, 기본정신은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건설 부문, 과학연구부문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나라의 산업을 현대화, 과

확화하며 그에 저해를 주거나 지장을 줄수 있는 대상들의 투자를 금지, 제한함으로써 나라의 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에서 규제하고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보호 및 공고발전 원칙은 다음으로 외국투자기업들에서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는것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서 표현된다.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로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내보낼수 있다.》고 규정한 외국인투자법 제16조 1항 및 3항, 그리고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데 대한 합작법 제11조 1항과 합영법 제26조 1항 등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외국투자기업들에서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할데 대한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들의 기본요구, 기본정신은 어디까지나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튼튼히 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고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는것이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에서 수입보다 수출을 장려하며 외국의 투자가들로 하여금 국가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도록 여러가지 특허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들에서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는것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는것들은 다 대외경제활동을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하고 공보발전시키려는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의 특성은 셋째로, 경제거래과정에 있을수 있는 분쟁문제들을 신속정확히 해결할 목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위한 교섭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최우선시하고 기타 분쟁해결방법들인 중재나 소송도 이에 복종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공화국무역법 제58조, 대외경제계약법 제42조, 외국인투자법 제22조, 합작법 제21조, 합영법 제47조, 외국인기업법 제31조, 해운법 제102조,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42조를 비롯한 많은 법들에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분쟁해결원칙을 정한 조항들에서 하나같이 제1항에 당사자들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 또는 3항들에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사이의 화해를 위한 교섭활동과 제3자에 의한 조정활동을 최우선시하고 기타 분쟁해결방법들인 중재나 소송도 이에 복종시키고 있는 대외경제관계법들의 특성은 특히 당사자들사이의 협상 또는 제3자의 조정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진행중에 있는 중재 및 소송절차를 중지하는것은 물론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도 화해를 할 목적으로 해당 진행중에 있는 중재 및 소송수속을 중지해 줄데 대한 당사자들의 제기가 있거나 제기가 없어도 중재 및 소송수속을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대외경제중재법 제33조에서는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사이에 화해가 이루어 지면 진행중의 중재심리를 끝낸다.》, 제34조에서는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있다. 조정은 조정인과 분쟁당사자들 로 구성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제출한 안에 쌍방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민사관계법 제56조에서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사항중의 하나로서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수속을 중지할데 대하여 합의한 경우 즉 분쟁을 그만두기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협의나 조정에 의한 분쟁쌍방의 화해를 중재나 소송수속에 의한 분쟁해결에 선행시키고 있다.

대외경제거래과정에 제기되는 분쟁들을 중재나 소송보다도 화해를 위한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나 제3자의 조정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의 특성은 제기되는 분쟁문제들을 분쟁당사자 본인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맞게 신속, 정확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데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공화국대외경제관계법은 변화된 현실적조건에 맞게 사회주의적성격을 견지하면서도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응할수 있는 자기식의 우월하고 독특한 체계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강 정 남

김일성종합대학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에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관광 등의 중심지로서의 라선지구를 특수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현재 신의주지구를 특별행정지역으로, 개성지구를 현대적인 공업지구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지대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외국투자자와 기술이전 등과 관련되는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외국투자관계법규범들과 규정들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제투자를 통하여 나라와 나라사이, 지역과 지역사이의 경제적연계와 대외적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절실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선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와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을 더욱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대외적협조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는 광복직후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다른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왔다.

지난 시기 조선-쏘련해운주식회사규정(1949년),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회사등록에 관한 규정, 회사파산에 관한 규정(1966년), 합영법(1984년), 합영회사소득세법(1985년) 등을 채택하여 세계 100여개 나라들과 대외관계를 맺고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경제기술적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을 구현하여 여러가지 외국투자보호와 관계되는 법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라의 생산적, 물질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경제기

술적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문제도 역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여 짐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성이 강화되고 기술장비와 수단들이 현대화되었으며 생산 및 경영방법의 과학화가 전면적으로 다그쳐 지고 있다.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확대되고 그 기술장비수준이 보다 훨씬 높아진 나라의 경제발전의 현실은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발전에 상응하게 그 기술장비수준과 관리운영수준을 부단히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데 필요한것을 새로 창설하거나 부족한것을 보충 또는 갱신하며 선진적인 기술장비와 과학기술을 받아 들여 인민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가 외국투자를 받아 들여 합리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리용하는것이다.

다른 나라의 투자를 주체적립장에서 받아 들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짧은 기간안에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고 상품의 국제적경쟁력을 높여 대외시장도 폭 넓게 개척할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외국투자를 받아 들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유리한 법률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외국투자에 대한 법적담보를 마련해 주는것이 선차적인 요구로 나선다.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투자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외국투자관계법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던것이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외국투자보호제도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안에서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연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며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하는데 기초하고 있다.

외국투자보호제도는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들이 규제하는 사회관계안에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재산권,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것과 관련한 법규범과 질서의 총체이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의 형태로 진행된다.

합영기업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서로 다른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그 결과 얻어진 리익을 투자몹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기업이다.

합작기업은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서로 다른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 투자자가 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외국인단독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과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을 포함하는 외국투자기업들은 기업의 형태와 법률형식에 따라, 투자방식과 기업운영방법에 따라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들(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은 외국투자를 전제로 하며 외국투자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과 규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법인기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공화국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바친다는 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한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외국투자보호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은 어느것이든 다 투자의 안정성과 담보성을 해당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공통성을 가지게 된다.

외국투자에 대한 투자수입국정부의 투자안정성담보는 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외국투자를 법적으로 담보하고 외국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것은 그들의 투자의욕을 높여 나가는데서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들은 어느 나라와 지역의 어떤 대상에 투자하여 얼마만한 이익을 보겠는가를 면밀히 타산해 보고 일정한 이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야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권보호와 같은 외국투자에 대한 담보, 세금의 면제 또는 감면과 같은 국가가 취하는 특권, 특혜조치는 투자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투자관계법들에 투자보호와 관련한 법조문들을 규제함으로써 외국투자보호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관계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는 외국투자보호제도는 두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하나는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담보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투자보호와 관련한 담보내용이다.

공화국의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로,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담보방식에 관한 법적규제이다.

담보방식에 관한 문제는 외국투자보호에서 초미의 문제이다.

그것은 외국투자보호를 법적으로 어떻게 담보하는가에 따라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이 좌우되기때문이다.

그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법적담보방식에는 우선 헌법적담보가 있다.

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헌법은 외국투자보호를 규제한 국가의 기본 모체적인 법으로 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개별적인 부문법들에 비하여 우위적이며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헌법은 다른 부문법들과는 달리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일반 제원칙들과 국가기

관들의 구성과 임무, 그 활동원칙 등 국가사회생활의 기본문제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부문법의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고 있다.

헌법적담보는 공화국령역안에 들어 온 외국투자자들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9.5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에서 규제하고 있는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7조는 우리 공화국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담보를 주는 조문이다.

이 조문이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헌법적담보로 되는것은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에 대한 국가의 장려가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재산권의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한다.

우리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연개발 및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과학기술, 관광, 금융, 류통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투자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에 대한 헌법적규제는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획기적인 향상을 보장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여 준다.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법적담보방식에는 다음으로 외국투자법적담보가 있다.

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1992.12.11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4차 회의에서 승인)은 외국투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부문법전이다.

외국인투자법이 외국투자보호의 기본부문법전으로 되는것은 그 규제내용이 외국투자보호와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당과 국가의 정책적문제들을 비롯하여 투자장려와 담보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을 장려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있기때문이다.

공화국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을 비롯하여 외국투자보호내용을 담은 일련의 법들은 외국인투자법을 부문별로 더 전개하고 구체화한 개별적인 부문법들이다.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보호를 직접적으로 담보해 주는 법적수단은 공화국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이다.

이 법들은 해당 명칭이 보여 주는것처럼 외국투자보호와 관련하여 전반내용을 담

지 못하고 외국인투자법이 규제하고 있는 원칙에서 각기 투자보호와 관련한 해당사 회관계의 일정한 분야만을 전개하고 구체화하여 규제하고 있다.

외국투자법적담보는 공화국령역안에 들어온 외국투자자들이 재산이나 재산권을 보호할것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관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1조 2항,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한다.》(제1조 2항)

《국가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 경영활동조건을 보장 한다.》(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제4조,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제4조)

《외국투자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관리와 경영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 한다.》(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것을 장려한다.》(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은행법》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은행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제6조 2항과 제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 하고 있다.

《국가는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제6조 1항)

《국가는 장려하는 대상과 해외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외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제7조)

여러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이러한 법적규제들은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와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할것을 법적으로 담보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뚜렷한 립장이고 확신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보호에 대하여 왜 두가지 법적담보방식으로 규제 하게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투자보호에 대하여 두가지 법적담보방식으로 규제하게 된것은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보다 공고하고 완벽한 법적담보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헌법적담보와 외국투자법적담보를 결합시키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보호의 공고성과 완벽성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적담보는 외국투자법적담보에 비하여 그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인것으로 하여 그 규제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변경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헌법에서는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전략적인 기본방향과 방도를 제시해 준다. 그렇기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은 해당 나라에 대한 투자에 앞서 그 나라의 외국투자관계법들보다도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초점을 돌리고 그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한다.

헌법에서 대외경제분야에 대한 법적규제의 부단한 변경, 수정보충은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변동과정이므로 이것은 외국투자자들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들의 투자이익을 떨어 뜨릴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그 규제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변경절차는 매우 심각하며 엄격하게 검토되는것이다.

그런데 헌법은 국가경제활동의 기본원칙만을 규제하고 있기때문에 외국투자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제할수 없는 불리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불리한 측면들은 외국투자법적담보를 통하여 해결할수 있다.

그것은 외국투자관계법들이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회관계만을 전문적으로 규제하기때문이다.

외국투자법적담보는 그 규제내용에서 헌법적담보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규제하는것과 같은 유리한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리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적규제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변경절차가 헌법처럼 엄격하고 복잡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헌법적담보에 비하여 상대적안정성은 미약하다는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헌법적담보방식과 외국투자법적담보방식은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 놓여 있다.

헌법적담보방식과 외국투자법적담보방식을 결합하여 외국투자보호제도를 규제한것, 바로 이것이 공화국의 외국투자보호제도의 특징이며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명확히 합법화한 뚜렷한 징표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외국투자관계법들을 채택함으로써 외국투자보호제도가 더 한층 완비되고 외국투자보호를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와 조건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 벌려 나갈수 있게 되었다.

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중요한것은 둘째로, 외국투자보호의 내용에 관한 법적규제이다.

외국투자보호의 법적규제내용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해당 외국투자관계법이 규제하는 투자에 관한 보호관계를 명백히 하고 그것을 전개하고 구체화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외국투자보호의 법적규제내용에 관한 문제가 해당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기업창설과 활동의 전반내용을 규정하는 원칙적이고도 기초적인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공화국외국투자보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여 외국투자에 대한 담보와 특혜로 규제되어 있다.

공화국외국투자보호의 법적규제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에 대한 담보이다.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에 관한 담보는 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근본문제를 이루는 규제내용이다.

그것은 외국투자재산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에 관한 담보가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의 안전에 대한 법적담보이고 보상을 전제로 하는 법적담보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외국투자재산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담보는 외국투자자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안전에 대한 법적담보이다.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재산에는 화폐재산과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같은 것이 속한다.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이러한 재산들은 외국투자기업의 재산으로 된다.

우리측 당사자가 외국투자기업에 투자한 재산은 국가소유나 우리측 당사자소유의 재산으로 되지 않으며 새로 기업을 창설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으로 된다.

그러므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단독기업인 경우에도 공화국의 외국투자관계법이 규정한 범위안에서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지위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 경영상 독자성으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재산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되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나 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법은 그 나라들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서도 례외가 아니다.

즉 공화국령역안에 들어 온 외국투자자의 재산이나 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서는 그의 본국법이 적용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외국투자자들은 공화국령역안에 재산이나 재산권을 투자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우리 국가의 법적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그것은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재산이나 재산권의 대부분이 그들의 사적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공화국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가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안전에 대한 담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19조 1항이 바로 그 담보조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19조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가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한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에 대한 공화국외국인투자법에서의 법적규제로 하여 외국투자관계를 규제하는 모든 외국투자관계법규범과 규정의 제정과 그 집행에서 확고한 지도적 원칙이 확립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법적규제로 하여 외국투자자들은 공화국령역안에 자기들이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몰수 또는 국유화에 대한 위구심을 완전히 없앨수 있는 믿음직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외국투자재산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금지담보는 외국투자가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보상에 대한 법적담보로도 된다.

외국투자자들에게 공화국령역안에 그들의 투자한 재산이나 재산권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법적담보를 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 특히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 도입으로 발전된 경제를 건설할 목적으로 그들의 투자재산에 대하여 몰수 및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전쟁이나 전쟁위험, 비상사태 등 해당 국가의 주권적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측할수 없는 긴급한 정황이 발생할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국제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정,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국가의 존엄이나 자주권, 국가의 리익에 심대한 손해가 끼쳐 졌거나 끼칠 우려가 생긴 경우에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이나 재산권은 국가가 몰수 또는 국유화할수 있다.

이것은 국제법상 공인된 질서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외국투자가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몰수 또는 국유화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와 보상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규제내용이 없으면 외국투자가의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한 안전이 담보될수 없으며 그것이 나아가서 임의의 시기에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사유를 근거로 침해 당하거나 침해 당한것과 같은 심각한 후과를 빚어 낼수 있기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외국투자보호에 대한 법적담보는 의의를 상실하게 될것이며 빈 종이장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당 법전에서 명확히 성문화하여 규제하도록 하였다.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에서는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투자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국유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한 립법적절차를 밟으며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19조 2항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외국인투자법에서 규제한바와 같이 우리 국가는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국투자자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몰수하거나 국유화하는 경우 그에 해당한 충분한 보상을 할것을 법전에 정확히 명문화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할 경우에 단지 전쟁이나 전쟁위험,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의 주권적침해나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정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우리 국가의 전망적인 국토건설총계획에따라 사회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투자기업과 사전합의를 한 다음 필요한 보상을 하고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이게 된다.

이와 같이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재산에 대한 국가의 몰수 및 국유화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외국인투자법에서의 법적규제로 하여 외국투자자들은 공화국령역안에 투자한 재산이나 재산권이 설사 몰수 또는 국유화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믿음직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외국투자보호의 법적규제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재산에서의 송금담보이다.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투자재산에서의 송금은 리윤 및 원금과 로임에 대한 송금이다.

리윤 및 원금과 로임에 대한 송금은 화폐자금의 형태로 진행된다.

외국투자자들의 화폐자금에서 송금될수 있는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및 확대에 필요한 투자자금
- ② 리윤, 리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 ③ 대부상환금과 리자
- ④ 투자재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 ⑤ 투자와 관련하여 설립된 기업의 외국인종업원들이 받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 소득
- ⑥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의 필요한 조치로 몰수 또는 국유화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보상금
- ⑦ 기타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는 보상금 등

리윤 및 원금과 로임에 대한 송금담보는 외국투자보호제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것은 리윤 및 원금과 로임에 대한 송금담보가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실현하려는 근본목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을뿐만아니라 외국인종업원들의 사활적인 근본이익과도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리윤 및 원금의 송금담보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실현하려는 근본목적과 직접관련되어 있는 담보이다.

외국투자가가 공화국령역안에 재산이나 재산권을 투자하는 근본목적은 그를 통하여 일정한 리윤을 얻자는데 있다.

일정한 리윤을 획득할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투자가는 없다.

그러므로 외국투자가들은 투자를 통하여 공화국령역안에서 얻은 합법적인 리윤과 투자하였던 원금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환성화폐 또는 자기 나라의 화폐와 교환하여 공화국령역밖으로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외국투자가들에게 리윤 및 원금의 송금에 대한 안정되고 확고한 법적담보를 주기 위하여 공화국 외국투자관계법에서는 리윤 및 원금에 대한 송금제도를 확립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가들의 리윤 및 원금에 대한 송금제도의 특징은 그 리윤 및 원금에 대한 송금에서 제한이 없다는것이다.

리윤 및 원금에 대한 송금에서 제한이 없다는것은 그 송금절차와 방법에서 어떤 조건부적인 담보조건이 없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송금할수 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송금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20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이란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에서 리윤 및 원금에 대하여 규제한 법규범을 의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제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어 있다.

《외국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 없이 전부 송금하거나 자기 자본을 제한없이 이전할수 있다.》(제27조)

외국투자가의 리윤 및 원금의 송금제도는 기타 여러 외국투자관계법들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제2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제28조 4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법》 제42조에서 이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즉 《외국투자가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 비롯한 소득을 다른 나라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 들어 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제한 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 제3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재투자할수 있으며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도 있다.》(외국인기업법 제22조), 《외국투자가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리윤, 기타 소득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합작법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4.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수 있다.》(외국투자은행법 제28조 4항). 《다른 나라 합병당사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 받은 자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합영법 제42조)로 규제되어 있다.

이것은 외국투자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하며 그로부터 얻은 합법적권리와 리익에 대한 국가의 법적보호제도의 뚜렷한 증시이다.

이처럼 공화국의 리윤 및 원금의 송금에 대한 담보제도는 조건부적인 송금담보제도인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송금담보제도이다.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송금담보제도인것으로 하여 외국투자자들은 공화국령역안에서의 투자활동과정에 연계 되는 합법적인 리윤과 원금을 본국이나 제 3국으로 자유롭게 제한없이 송금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종업원의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는 외화에 대한 송금담보제도도 확립되어 있다.

외국인종업원의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에 대한 송금담보는 외국인의 사활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이다.

외국투자기업은 앞선 선진기술과 경험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 들일것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기업이다.

그것으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에는 공화국공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종업원으로 일할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이 조성되게 된다.

외국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종업원들의 대부분이 기능이나 기술자격을 가지고 일하는것으로 하여 그들은 로임뿐만아니라 기술봉사와 기술비결제공 같은것으로 인한 보수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

그런데 만일 외국인종업원의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원금 및 리윤의 송금과 같이 자유로운 송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외국투자기업

에서 외국인채용자수가 늘어 나게 되어 나라의 로력관리에 지장을 줄뿐아니라 외화의 해외류출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빚어 내어 나라의 화폐제도를 안정시키고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자의 자금과 앞선 선진기술과 경험에 대한 리윤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할데 대한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한 법적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화국의 해당 부문법들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종업원들의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송금에 대한 반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공화국법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종업원들의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는 외화의 송금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인 송금제도를 확립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제2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는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여기서 보는바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만약 60%를 넘는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는 경우에는 공화국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어긴 경우에는 해당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로임 및 기타 합법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송금담보제도는 바로 이러한 제한적인 송금제도인것으로 하여 외국인들은 공화국령역안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라 하더라도 그 전액을 송금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외국투자보호의 규제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장려담보이다.

외국투자기업의 실현은 다른 나라의 투자를 직접 받아 들이는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자면 외국인투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

외국투자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받아 들이자면 그에 맞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장려하는 법적담보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는것이다.

자본은 언제나 유리한 투자환경을 찾는다.

외국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투자환경이란 곧 높고 안전한 리윤을 얻을수 있는 조건이다.

이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들여 경제발전을 장성시키려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투자환경을 마련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투자환경은 정치법률적환경과 경제적환경으로 구분할수 있다.

여기서 정치법률적환경은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번 리윤에 대한 안정성담보이고 경제적환경은 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하여 얻게 될 리윤에 대한 담

보라고 할수 있다.

투자의 정치법률적환경은 해당국가의 대외경제정책작성과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해당 나라에 투자하는데서 지켜야 할 의무와 질서, 그들이 보장 받을수 있는 권리를 규제한 법규범들을 완비함으로써 마련된다.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투자의 정치법률적환경은 우리 당과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작성과 그것을 법화한 사회주의헌법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세분화한 외국투자관계법규범들을 제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원만히 마련되었다.

투자환경에서 정치법률적환경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경제적환경이다.

경제적환경은 해당 나라의 경제적잠재력과 시장형편을 비롯한 외국투자활동의 제반 경제적조건들을 포괄한다.

경제적환경에서는 하부구조의 정비상태, 경제의 일반상태, 투자와 경영조건 등이 기본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 졌으며 이에 기초하여 하부구조들이 비교적 원만히 꾸려 져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 져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선진과학과 기술을 받아 들여 나라의 경제를 최단기간내에 선진국가들의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외국투자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기업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세금공간이다.

외국투자기업을 받아 들이는데서 올바른 세금정책을 실시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국가의 세금정책이 나라의 외화수입과 함께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정도와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둘러 싸고 주재국과 외국투자가사이에 많은 리해관계가 대치된다.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 들이는 주재국에서는 될수록 세금을 많이 받는데 리해관계를 가지지만 외국투자가는 세금을 적게 바치는데 리해관계가 있다.

외국투자기업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올바른 세금정책을 실시하자면 이러한 리해관계의 대립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기간 합영회사들과 외국인들에게서 세금의 한 형태인 소득세만을 받아 왔다.

오늘의 현실은 지난날 합영기업 일면에만 치중하고 있던 외국투자기업이 합작기업, 외국인단독기업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맞게 새로운 세금제도를 세울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1985년에 채택된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

소득세법에 따라 합영회사들과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던 소득세제를 폐지하고 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 법령으로 승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을 채택하여 새로운 세금제도를 확립하였다.

새로 채택된 공화국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령역밖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할뿐아니라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기업과 공화국령역밖의 조선동포들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외국투자자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제24조에서 《외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제18조에서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제38조에서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를 규제함으로써 우리 당의 세금정책이 올바르게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담보를 주었다.

세금에서 기본은 소득세이다.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그 나라의 세금관계에서 가장 주목을 돌리는것은 소득세문제이다.

소득세는 해당 나라의 령역안에서 이루어 지는 일체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이루어 진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장려하면서 소득세률을 장려목적에 맞게 규정하는것과 함께 특별히 장려해야 할 부문들에 대한 소득세는 면세 또는 감면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률과 소득세특혜조건들을 규제하고 있다.

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10%로한다.》(제12조)

《외국기업이 공화국령역안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를 비롯한 기타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제13조)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투자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중국 일반적인 지역 30%, 경제특구 15%이며 싱가포르 31%, 일본, 뽐스까, 마자르 각각 40%, 프랑스 50%, 영국 52%, 인디아 66.6%)

공화국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특혜조건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융조직이 공화국정부와 국가는행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이 우리 나라의 은행 또는 기업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생산부문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여 그 다음 2년간을 50% 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 10년전에 철수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이미 감면 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여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

4.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 총 투자액이 6,000만원이상 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투자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여 그 다음 3년은 50%범위에서 덜어 줄수 있다.》(제15조)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수 있으며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수할 경우에는 반환 받은 소득세액을 바친다.》(제16조)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율과 소득특혜조건을 외국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기타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감면조치들을 규제하고 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제25조 2항), 《다음과 같은 대상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1.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2.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 생산부문과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50% 덜어준다.》(제42조) 등이 그 대표적이다.

세금에서 2중과세방지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2중과세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세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저촉 문제로부터 생겨 나는 문제이다.

세계 각국의 세금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나라에 거주하는 법인과 개인, 그의 재산뿐만아니라 해당 나라에서 얻어 지는 소득에 대하여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공화국의 해당 세금법도 역시 이와 같이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투자자와 외국인의 국적은 다른 나라이며 투자기업의 국적은 공화국의 법인이고 투자결과 얻어지는 리윤과 분배몫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외국투자자와 외국인,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공화국의 법에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하며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서도 세금을 물게 된다. 즉 2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것을 외국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수익을 낮추어 그들의 경제적리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하며 따라서 투자의욕을 떨어 뜨리게 된다.

공화국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는 세금납부에서 이러한 국제사법상 저촉문제 즉 2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와 외국인이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협정에서 우리 나라의 세금법규와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한 경우에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 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세금을 바칠수 있다.》(제7조)

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서 세금을 두 나라들사이의 협정에서 정한데 따라 물데 대한 법적규제는 외국투자자들의 2중과세납부를 피하고 국가적관심속에서 투자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목적에 기초한것이다.

이처럼 공화국외국투자보호제도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기업을 장려하고 그에 여러가지 형태의 국가적특혜조치들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투자활동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공화국의 외국투자보호제도의 기본내용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보호제도를 발전완성시키는데서 우리 법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대외경제환경이 크게 변화된 현실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거래를 확대발전시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사업을 능숙하게 할수 있는 법전문가들을 비롯한 투자관계전문가들을 육성하며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외국투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공화국의 외국투자보호제도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협조와 대외적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할것이다.

#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 문 철 만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아시아가 21세기 세계경제의 활무대로 나날이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동북아시아의 중심적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세계적인 관심이 특별히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길데 없는 유리한 지정학적위치와 함께 풍부한 경제적잠재력과 세계적인 명승지들, 유적유물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리상적으로 결합되어 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로씨야의 원동지역과 중국동북지방 및 몽골을 후배지로 하면서 로씨야, 중국과는 철도 및 육로로 접경하고 있으며 바다를 통하여 일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잇달아 있어 룡해운련결의 지름길이면서도 동북아시아의 관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와 전반적으로 중등교육이상의 교육을 받은 기능과 기술수준이 높은 풍부한 로력이 있다. 뿐만아니라 천하절경 금강산을 비롯한 세계적인 명승지들과 문화유적과 유물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때문에 아시아, 대양주, 유럽 등 전세계는 우리 나라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국제경제교류의 대통로로, 전도유망하고 리상적인 지역적 및 세계적경제협조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관망하고 여기에 투자할것을 희망하고 있다.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는 특수경제지대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인 공화국헌법에 따라 전개하고 구체화한 특수경제지대관계법과 규정들의 총체이다.

공화국헌법 제37조에는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적규제는 특수경제지대법규의 작성방향과 기준, 투자유치와 경제활동의 기본문제를 밝혀주는 립법적기초로 된다.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는 헌법적요구에 기초하여 지대의 투자 및 개발, 그 관리운영과 관련한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을 행위규범으로 구체화하여 전개하고 있다.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법》과 그 집행을 위한 여러개의 법규정들이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신의주특별행정구법과 그 시행규정들은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지대개발과 관리운영의 담당자가 라선시인민위원회와 중앙무역지도기관이며 따라서 외국투자유치와 투자기업의 창설 및 승인, 등록, 영업허가

등을 이 기관들이 맡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은 해당 지구의 개발은 지구토지를 일괄임대 받은 개발업자가 하며 해당 지구 관리운영은 개발업자와 해당 지구 중앙지도기관이 추천한 성원들로 개발업자가 조직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금강산관광지구관리기관이 맡아 하도록 규제되어 있다. 이로부터 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책임지며 투자유치, 기업창설승인, 기업등록, 영업허가 등 해당 지구안에서의 모든 경영활동에 대한 관할은 해당 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법에서는 이 지구 개발을 특별행정구당국이 맡아 하되 특히 립법, 사법, 행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은 지구의 특성에 맞게 조직진행된다.

우와 같은 특수경제지대법들과 그에 따르는 그 시행규정과 세칙들은 해당 지대법의 특성에 맞게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발원칙과 투자유치, 경제활동조건 의 보장, 관세, 금융 및 통화담보 및 특혜문제 등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 글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한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집행을 위한 여러 법규정들의 내용을 서술 하려고 한다.

## 1. 특수경제지대법규

특수경제지대법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법규는 이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의 기본문제를 규정한 해당 지대법규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특수경제무역지대법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에서 특수경제지대의 창설과 운영의 기본질서를 규제한 법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1993년 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되고 1999년 2월 25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84호로 수정보충되어 현재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말그대로 라선시지구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이 지대의 개발과 관련한 우리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를 법화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법은 우선 이 법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정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주로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거래를 하며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의 변강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적협조를 두만강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것이 유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라선시지구를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고 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사명에 관한 법적규제는 이 지대를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개발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법의 규제내용을 정하고 정확히 준수집행해 나갈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다음으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법 제2조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정한 영역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특수경제지대밖의 다른 공화국영역보다 무역 및 중계수송, 수출가공, 금융, 봉사활동에서 특혜와 담보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이 지대에서는 상품수출입절차의 간소화, 특혜관세의 적용, 경영활동의 유리한 조건의 보장 등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지대에서는 그 누구든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투자하여 외국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으며 기업관리와 경영활동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관세 및 소득세 등에서 특혜와 투자재산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또한 이지대에 대한 관리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지대의 관리운영질서를 바로 세우는것은 외국투자위치와 지대개발을 다그치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대법에서는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국가적인 통일적지도를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맡아 하며 지대에 대한 직접적관리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한다고 밝히고 그들이 지니는 권한과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지대의 무역, 외국투자와 관련한 국가적인 집행대책을 세우며 해당 중앙기관들과의 연계밑에 지대의 대외경제무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고 외국투자대상신청을 접수, 심의처리한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무역과 지대개발과 관련한 계획을 작성, 선전, 집행하며 외국투자신청을 현지에서 접수하고 그 심의승인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제기하고 기업등록, 영업허가를 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로력채용을 방조하며 토지, 건물리용권의 양도를 심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에 그 승인을 제기한다. 그리고 시설물 등의 건설, 개건에 대한 봉사를 비롯한 지대관리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지대법에서는 투자기업창설승인 및 통지기간, 투자금지 및 제한대상, 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라선시의 기관, 기업소대표와 외국투자가 대표들로 지대관리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또한 지대에서 경제활동조건보장, 특혜 및 담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대에서의 경제활동조건보장과 특혜 및 담보질서를 명확히 규정하는것은 지대의 투자위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개발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의 하나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지대에서의 경영활동조건의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지대에서는 모든 상품을 들여다 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수 있고 지대밖으로 내갈수 있으며 외국투자자들은 투자하여 합영, 합작,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하며 중계수송을 하며 토지를 임차하고 개발하여 양도할수 있다. 그리고 로력알선기관을 통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수 있다. 지대안에 있는 무역항에는 무역배와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드나들수 있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지대밖의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을 할수 있다. 지대에서 류통화폐는 조선원으로, 거래에 대한 결재는 조선원이나 전환성외화로 할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 합의하여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으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다. 뿐만아니라 지대안에 있는 은행은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할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지대에 적용되는 특혜 및 담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된다. 지대안에 들여 오는 투자물자, 가공수출용 물자, 지대건설용 및 지대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기 위한 물자와 통과화물에 관세를 면제하며 외국투자자는 지대안에서 얻은 리윤과 그밖의 소득을 국외로 자유롭게 송금할수 있고 기업경영기간이 끝난 다음 투자한 재산을 국외로 내갈수 있다. 그리고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립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임대료를 낮추어 줄수 있으며 경영활동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수 있고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우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수 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수 있다. 그리고 지대에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고 해당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체류거주할수 있다.

또한 지대안에서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이밖에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분쟁해결절차와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투자와 개발 및 그 관리운명을 위한 원칙적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규제는 다른 지대법규정들에 구체화되어있다.

특수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과 관련한 법규에서 중요한것은 개성공업지구법이다.

개성공업지구는 2002년 11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정령 제3491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용에 대하여》에 의해 나왔다.

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를 내오고 그를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을 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공포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우선 이법의 제정목적과 개발 및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는 이 법에 따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개성공업지구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며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것으로 나눈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는 남조선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할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같은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 지구에서는 로력의 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공업지구에서 투자와 경영활동을 할수 없는 대상에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같은것이 속한다. 투자장려대상에는 경공업부문, 최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대상이 속한다.

공업지구사업에 대한 관할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이 지구의 사업을 관할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사업에 관여할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관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는 투자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으며 사회공동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 들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개성공업지구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들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 규제된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기본정책을 법화한것이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다음으로 지구개발의 담당자와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정해진 개발업자는 지구개발을 위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리용증을 개발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토지리용증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다.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하며 이 기간이 지난 다음

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더 연장할수 있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작성하여 중앙공업지도기관에 내며 중앙공업지도기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공업지구의 개발은 이 개발총계획에 따라 해야 하며 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는 경우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게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하며 그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개발공사는 이러한 철거가 끝나는 차제로 시작하여야 하며 개발을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개발공사 가운데서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양도, 위탁하여 할수 있다.

개발업자는 하부구조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지구개발총계획에 맞게 투자기업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에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양도하거나 재임대할수 있다.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중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들의 지구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성공업지구개발에 대한 법적규제는 공업지구개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개발업자와 투자자로 하여금 개발과 투자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기본담보로 된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다음으로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의 담당자와 그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조직과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질서를 바로 규정하는것은 공업지구에 대한 투자유치와 지구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업자의 지정, 대상건설설계문건의 합의, 공업지구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 판매실행,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이 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투자조건 조성, 투자유치,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과 건물 및 료전기재의 등록,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환경보호 및 소방대책, 남조선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이 밖에 중앙공업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을 하는것을 기본임무로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관리기관 성원으로 될수 있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리사장이며 그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지도한다.

공업지구의 운영자금은 수수료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다음으로 공업지구의 출입, 통신, 관광, 광고, 물자의 반출입, 관세, 검사 및 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조선지역에서 공업지구로 드나드는 남조선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들어올수 있으며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통하여 이 지구로 드나드는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공업지구에서 남조선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으며 정해진 질서에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지,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것을 관광할수 있다.

또한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수 있으며 야외광고물의 설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하며 공업지구로 들어 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조선 또는 다른 나라로 나가는 물자, 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나가는 물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물자를 그대로 공화국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는 다음으로 개성공업지에서의 기업창설 및 운영질서를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창설절차, 로력채용, 경영범위, 물자의 구입과 판매가격, 류통화폐, 예금, 회계, 세금, 외화반출 등에 대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공업지구로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기업창설신청서를 만들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승인 또는 부결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으면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안으로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로력으로 채용하며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남조선 또는 다른 나라의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지구밖의 공화국령역안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공화국령역안에 팔수 있다.

공업지구안에서 상품가격과 봉사료금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며 류통화폐는 전환성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것을 리용할수 있다.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은행돈자리는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두어야 하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고 다른데 들수도 있다.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서,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율은 결산리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 및 첨단과학기술부분은 10%로 한다.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들여 오거나 내갈수 있으며 배당 리윤과 그밖의 소득을 자유롭게 송금 또는 반출할수 있다.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설치하며 등록하여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이밖에도 공업지구개발과 그 관리운영에 대하여서 기업활동에서의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는데 대하여서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 법에 대한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이상과 같은 개성공업지구법의 규제내용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이 지구의 개발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북남간의 민족경제발전을 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법규에서 중요한것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이다.

금강산관광지구법은 2002년 11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위원회 정령 제3413호로 채택공포되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이 법의 제정목적과 금강산관광지구의 법적지위 및 관광사업의 일반적요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이다.

금강산관광지구에서 관광은 남조선 및 해외동포들이 하며 외국인도 할수 있다.

관광은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인식하고 등산과 해수욕, 휴양으로 건강을 증진하며 금강산을 유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광업밖의 경제활동은 이 법과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할수 있다.

법규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중앙관광지도기관과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관광지구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이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광지구사업에 관여하려는 경우 중앙관광지도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중앙관광지도기관은 관광지구관리기관과 관광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대상건설설계문건의 합의, 관광지구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관광지구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물자와 기념상품의 보장, 관광지구세무관리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하여야 한다.

관광지구의 개발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발업자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관광지구개발과 관광사업권한을 행사할수 있으며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수 있다.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은 개발업자가 작성하여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승인된 관광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는 경우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 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다음으로 이 지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관광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관광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관광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의 구성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한다.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도 그 성원으로 될수 있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계획의 작성, 관광자원의 조사와 개발 및 관리, 관광선전과 관광객 모집, 관광조직,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및 영업허가, 토지리용권과 건물 및 료전기재의 등록, 관광지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관광지구의 보호와 소방대책, 남측지역에서 관광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의 작성, 관광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과 관련한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이밖에 중앙관광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관광지구관리기관은 관광지구에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여러가지 버림물을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지구관리기관은 높은 수준에서 관광이 진행될수 있게 관광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앙관광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광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은 수수료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지입장료를 받을수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다음으로 관광과 금강산관광지의 지대적특성으로부터 관광객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제하고 있다.

관광객은 무기, 총탄, 폭발물, 흉기, 정해진 확대배수 또는 규격을 초과하는 렌즈가 달린 쌍안경, 망원경사진기, 록화촬영기, 무전기와 그 부속품, 폭약과 마약, 방사성물질 같은 유해물질,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물건,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각종 인쇄물, 그림, 글자판, 록음록화물, 애완용이 아닌 짐승과 이밖에 관광에 관련이 없는 물건을 휴대할수 없다.

또한 관광객은 정해진 로정을 따라 관광해야 하며 사회제도와 주민들의 풍습을 존중하고 민족의 단합과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인쇄물, 그림, 록음록화물 같은것을 류포시키지 말며 관광과 관련이 없는 대상을 촬영하지 말아야 하며 출입금지 또는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가지 말며 통신기재를 관광과 관련이 없는 목적에 리용하지 말고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물, 천연기념물, 동식물, 온천 같은 자연관광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관광객은 관광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해당 관광증명서를 발급받아 금강산관광지구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수 있다. 또한 관광객은 단독으로 또는 집체적으로 자동차같은 륨전지재를 리용하거나 걸어서 자유롭게 관광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행사, 문예활동, 사진촬영, 록화촬영, 투자상담, 무역계약체결 같은것을 할수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또한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과 운영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관광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하여 련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업을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이 지구에 할수 있다.

투자장려대상에는 관광과 관련된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가 속하며 투자금지 대상에는 금강산의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거나 변화시킬수 있는 부문의 투자가 속한다.

관광지구에 투자하려는자는 관광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은 다음 업종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경우 정해진 출자를 하고 기업등록과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해당 기관에 해야 한다.

관광지구에서 외화관리와 리용, 이 지구의 출입질서는 개성공업지구출입질서와 같다.

이밖에도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관광지구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은 이 지구의 관광자원을 개발리용하고 보호하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북남간의 경제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2.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규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에서 중요한것은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과 규정들이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과 규정들은 이 지대의 투자와 개발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지대의 개발과 활성화가 기업의 창설과 운영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담보하여 주는가 하는데 달려 있기때문이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규에는 합영법, 합작법과 외국인기업법 및 그 시행규정과 외국투자기업파산법, 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물론 이밖에 앞에서 언급한 특수경제지대법들과 외국인투자법도 있다.

공화국의 외국인투자법과 합영, 합작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은 특수경제지대밖의 공화국령역에도 적용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창설과 운영에 관한 법규에서는 중요하게 기업창설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기업, 합영기업,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해당기업창설수속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계획, 제정, 과학기술, 국토환경보호, 건설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지대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낸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해당 지구관리기관에 낸다.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투자가명, 창설하려는 기업의 명칭, 업종, 생산품종과 규모, 총투자액 및 등록자본, 거래할 은행명, 투자방식과 기간, 주요생산 및 기술공정자료, 종업원수, 조업예정날자 등을 밝히고 기업규약, 경제타산서,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 공업소유권 및 기술비결의 설명문, 투자가의 신용확인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업의 규약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기업창설목적, 경영범위와 생산규모,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방식과 기간, 기업의 기구 및 관리성원의 임무, 계획 및 생산조직, 생산물처리, 해산과 청산, 규약의 수정보충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힌다.

경제타산서에는 투자계획, 생산계획과 관련한 자료, 주요생산공정 설비의 기술 및 유리성 분석자료, 건축공사와 관련한 자료, 주요원자재의 품종과 소요량, 생산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 종업원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별 수익성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된다.

투자하는 설비와 자재명세서에는 그 명칭, 규격, 용도, 수량, 단가, 총액 등 필요한 내용을 밝히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설명문건에는 그 명칭과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을 밝히고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소유권증서사본 같은것을 첨부해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합병,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병 또는 합작계약서, 기업규약, 경제기술타산서의 초안을 만들어 국가계획 기관, 중앙재정관리기관, 중앙과학기관과 해당하는 내용을 합의한 다음 외국투자가와 합병 또는 합작계약서, 기업의 규약, 경제타산서를 작성하여 기업창설승인신청서와 함께 지대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낸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신청문건을 지구관리기관에 낸다.

합병, 합작기업창설승인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당사자명과 소재지, 창설 목적과 유익성,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출자몫과 출자액, 출자기간, 계약날자, 존속기간, 조업예정날자, 업종과 경영범위 등을 밝혀야 한다.

합병, 합작계약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계약당사자명과 소재지,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과 존속기간,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액, 출자몫의 양도,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경영관리기구와 기술이전, 기금의 조성 및 리용, 결산과 분배,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면제, 분쟁해결, 계약내용의 수정보충, 보험, 준거법, 해산과 청산, 계약의 효력 등을 밝혀야 한다.

합병, 합작기업의 규약에는 외국인기업의 규약에 밝혀야 할 내용외에 출자몫의 양도, 결산과 분배 등을 더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합병, 합작기업의 경제타산서에 밝혀야 할 내용과 자료들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타산서의것과 거의 같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지대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창설 승인신청문건을 받으면 10일안으로 의견을 붙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하며 이를 접수한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외국인 기업인 경우 80일안으로, 합병, 합작기업인 경우 50일안으로 심의한 다음 기업의 창설승인 또는 부결결정을 하고 지대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창설 승인문건에는 해당 기업명과 소재지, 당사자명,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출자기간, 조업예정일, 업종과 경영범위, 거래은행명, 관리기구와 종업원수 등을 밝히며 부결통지문건에는 부결근거와 권고할 내용을 밝힌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등록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30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는 10일안에 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를 하고 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신청서를 내어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명과 주소, 국적, 기업의 형태와 명칭, 기업책임자이름, 직무,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정날자 등을 밝히고 기업창설 승인서 사본, 토지리용증사본, 출자실적확인문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지대관리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에 검토한 다음 기업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해당 기업의 창설일로 되며 이 날부터 공화국법인으로 된다.

투자기업은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세무 및 세관등록을 20일안으로 하여

야 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내오며 다른 기업과 연합할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건설은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질서는 기업창설에서 시간과 로력비용을 절약하고 기업창설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며 그의 정상적운명을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특수경제지대에서 기업창설 및 운영에 관한 법규에서는 또한 기업에 대한 출자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출자질서를 바로 규정하는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기업창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창설 승인문건에 정한대로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재산권, 기술비결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은 투자가의 소유권 또는 리용권에 속한것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것이어야 하며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경영관리를 개선할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특히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의 평가액이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물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지 등의 필요한 내용을 밝힌 명세서와 대외상품검사기관의 검사문건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면적, 용도, 가격, 부동산권의 유효기간을 밝힌 소유권 또는 리용권증서, 부동산설명서와 도면, 기술자료, 평가가격계산자료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기술과 지적소유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기술과 지적소유권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기술비결 제외)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자료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출자하는 화폐재산은 기업의 거래은행에 예금하였을 경우, 부동산과 지적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끝냈을 경우,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수속을 끝내고 기업구내에 옮겨 놓았을 경우에 인정된다.

출자재산의 가격은 출자당시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출자한 재산의 총액이 기업창설 승인문건에 정해진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출자가가 그 차액을 더 보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정한 출자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해당 심사승인기관에 출자총액과 미출자액, 연장기간과 그 근거를 밝힌 출자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장할수 있으나 총 연장기간은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12개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는 6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은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소득세는 법에 정한 데 따라 감면받을수 있다.

기업은 출자가들이 출자를 할 때마다 출자증서를 발급해 주고 회계검증사무소의 출자확인문건을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출자몫은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출자몫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당사자 또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중앙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밖의 특수경제지대에서는 기업규약에 정한데 따라 주식채권 등을 양도할수도 있다.

투자가들이 출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업 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며 정한 기간내에 출자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 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정해진 등록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는 등록자본이 총투자액의 65~30%(투자액에 반비례한다.)이상으로, 합작기업에서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금액의 총액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는 투자총액의 10%로 한다.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등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지구에서 토의하고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기간의 연장, 출자몫의 양도, 상속, 등록자본의 변동, 기업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에 관한 법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업관리지구에 대한 규정이다.

기업의 관리지구는 경영활동의 조직지휘의 담당자이다. 따라서 기업의 관리지구를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성에 맞게 옹게 조직하는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리지구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각이하다.

합영기업에서는 최고결의기관으로서 리사회, 그리고 경영관리지구가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작기업에는 리사회가 법규정에 예견되어 있지 않고 경영관리지구만 예견되어 있다.

합영기업의 리사회는 리사장과 부리사장이 있다.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리사장은 합영기업 최고결의기관 대표자이다.

리사회의 정기회의는 년 1차이상, 림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리사회는 전체 리사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리사회의에서는 규약의 수정보충 및 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기업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검열원, 재정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 등록자본의 증가, 출자몫의 양도, 업종의 변경, 존속기간의 연장, 해산, 청산위원회조직과 같은 중요문제를 토의결정한다.

기업의 기본규약의 수정보충, 출자몫의 양도, 업종 및 등록자본의 변동, 존속기간의 연장, 기업해산에 대한 결정은 리사회회의에 참가한 리사전원의 찬성으로, 그밖의 문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리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수 있다. 리사회결정은 손을 들어 하거나 비밀투표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합영기업에는 경영관리기구를 둔다. 여기에는 기업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부기원과 이밖에 필요한 성원을 두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성원들을 포함하여 협의기구를 둘수 있다.

합영기업의 경영관리성원은 자기 잘못으로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 그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상과 같은 관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적규제는 관리성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기업운영을 정상화하고 당사자들의 리익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법규에서는 관리기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합작기업법규에서 공동협의기구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특수경제지대에서 기업의 창설 및 운영에 관한 법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영업허가와 경영활동에 대한 규정이다.

기업의 영업허가와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규제를 바로 하는것은 기업활동을 국가적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며 기업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경영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는 해당 지대관리기관이 한다.

영업허가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지적한 조업예정날자안으로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안에 영업허가를 할수 없는 경우 그 기일을 연장하는 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은 총 12개월을 넘을수 없다.

영업허가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야 받을수 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신청문건에 투자확인문건, 생산공정 및 시설물의 안정성, 환경보호를 확증하는 문건, 생산물의 시제품견본 같은것이 첨부되어야 한다.

영업허가는 해당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개성, 금강산지구는 7일)안에 하여야 한다.

기업은 영업허가를 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업종변경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변경이 승인된 경우 영업허가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계획을 해당 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공화국령역안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수 있으며 생산제품을 수출하거나 공화국령역안에 판매할수 있다.

또한 기업은 필요한 물자를 저장, 보관, 가공, 조립, 선별, 포장, 수리, 판매, 리용할수 있으며 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기업은 또한 지대밖에 물자의 임가공을 위탁



할수 있다. 기업은 지대에서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경우 세관에 반출입신고서를 내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로력을 공화국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과 관련한 법규에 따라 채용하고 리용하며 재정 및 회계, 세무, 관세 등도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 및 운영과 관련한 법규에서는 또한 기업의 존속기간 및 해산질서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창설 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한다. 경영기관간 계산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한다.

기업의 경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해당 관리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한 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영활동을 더 할수 없는 경우, 경영손실로 기업경영을 더 할수 없는 경우, 파산이 선고되었을 경우, 법규범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해산된다.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리사회(투자가총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하고 기업해산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지대관리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해산이 승인되면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책임자, 채권자대표, 회계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해당 지대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채권채무자에게 기업해산에 대하여 통지하며 채권자회의를 소집하고 기업재산을 넘겨 받아 관리하며 기업재산을 재평가하고 청산안을 작성하며 세금을 납부한 다음 채권채무를 확정하며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확정 및 처리하며 이밖에 청산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한다.

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세금, 로동보수, 기업채무순서로 처리한다.

청산위원회는 기업의 채무가 청산재산보다 많을 경우 재판소에 기업의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파산에 의한 기업의 해산은 공화국의 해당 파산법에 준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청산보고문건을 만들어 해당 지대관리기관에 내며 기업등록취소를 하고 세무, 세관 등에 해당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 벌금적용, 영업중지, 기업해산과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준다. 그리고 당사자들사이의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는 중재 또는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상과 같은 특수경제지대 외국인투자기업법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과 운영 및 그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질서를 명확히 규제함으로써 그의 창설과 운영에서 제도과 질서를 세우고 투자가들의 리익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3. 부동산관계법규

특수경제지대법규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부동산관계법규이다.

이 법규에는 토지임대법과 그 시행규정, 건물의 양도 및 저당규정 등이 있다.

공화국토지임대법규에는 토지임대와 관련한 원칙적문제와 임대절차와 방법,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토지임대료, 토지임대료의 반환 및 토지임대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및 분쟁해결문제가 규정되어 있다.

토지임대법규에는 우선 토지임대차 당사자와 임대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토지임차자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으며 임차한 경우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그의 재산권으로 된다.

토지임대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될수 있다.

토지임대기간은 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하여 50년까지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는 협상 또는 입찰, 경매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토지를 입찰하려는 당사자는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위치와 면적, 지형도, 토지용도, 건축면적, 토지개발계획, 건설기간, 투자최저한계액,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사항, 토지임대기간, 임대토지의 개발상태자료를 받을수 있다. 협상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희망자가 토지자료를 연구하고 기업창설승인문건 또는 거주승인문건사본을 첨부한 토지리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토지임대기관은 이를 접수하고 승인하는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리용권을 넘겨 주고 그 값을 받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해준다.

입찰을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자료와 함께 입찰장소, 입찰날자와 개찰날자, 입찰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입찰희망자에게 보내주며 응찰자에게 입찰문건을 낸다.

응찰자는 보증금을 내고 입찰함에 입찰서를 넣는다. 토지임대기관은 관계부문성원들로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락찰자를 정한다. 토지임대기관은 락찰자에게 락찰통지서를 보내며 이를 받은 락찰자는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을 발급받는다. 락찰자가 통지서에 지정한 기간안에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락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돌려 주지 않는다.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대하려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임대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 토지임대기관은 락찰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권값을 받고 토지리용증을 발급해 준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임대토지의 면적, 임대목적과 기간, 용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밝힌다.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자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토지임대차절차에 관한 질서는 토지임대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

하고 토지를 용도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토지임대법규에는 임대토지의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밑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은 임대토지료전액을 물고 약정한 투자를 하여야 할수 있다.(상속제외)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 간다.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에 등록하며 토지이용권판매에 대하여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토지이용권 명의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토지이용권을 재임대하려는 경우 토지임대차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차자는 대부받기 위해 토지이용권을 저당할수 있다.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려는 경우 당사자들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하며 저당계약을 맺고 토지임대기관에 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권의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계약상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해산, 파산되는 경우 저당물과 그 부착물을 처분할수 있다. 이 경우 처분한 저당물을 양도 받은 자는 해당한 등록을 하고 본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해야 한다.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자와 저당권자는 토지이용권저당등록의 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토지임대법규에는 또한 토지임대료와 토지이용권의 반환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토지임대료에는 토지이용권값과 토지사용료값이 속하며 토지개발비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임대료를 받을 때 토지개발비를 포함하여 받는다.

토지이용권값은 전액지불해야 한다. 장려부문이나 토지이용권값이 클 경우 토지임대기관과 협의하여 분할하여 물수 있다.

토지이용권값을 제때에 물지 않는 경우 해당한 연체료를 물며 연속 50일간 물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매해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10년까지 낮추어 주거나 면제하여 줄수 있다.

토지료리용권은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임대자에게 반환된다. 이 경우 건물을 비롯한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40년이상 임차한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10년전에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잔존가치를 보상해 줄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리용증을 반환하고 해당한 취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임대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여 승인을 받고 다시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토지리용증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기간안에 취소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

하려는 경우 미리 임차자와 합의하고 대토 또는 보상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자는 임대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설물과 설비, 부착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반환질서는 토지를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며 그 리용에서 당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토지임대법규에는 이밖에도 토지임대와 임차한 토지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원상복구 등의 법적제재를 준다는 것과 의견처리방법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토지임대법규에 규제된 사항들은 토지임대차에서 당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토지를 용도에 맞게 개발리용하도록 하는 힘있는 법적담보로 된다.

다음으로 건물 양도 및 저당규정에는 건물의 임대차, 건물의 매매 및 교환 건물의 상속, 건물의 저당질서가 규제되어 있다.

특수경제지대에서 건물의 양도와 저당질서를 바로 세우는것은 건물을 보호하고 정확히 관리하며 당사자들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이 규정에서 우선 건물의 임대차질서를 규제하고 있다.

건물의 임대차는 건물의 리용권과 그 사용료를 넘겨 주고 받는 행위이다.

건물을 임대차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건물위치와 면적, 임대차기간, 용도,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지불기일 등을 밝혀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건물임대자는 계약기간안에 임대해준 건물을 되찾을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해준 건물을 되찾을 경우 임차자에게 다른 건물로 보상해 주거나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건물임대자는 임차자의 건물리용정형을 늘 살펴야 하며 임차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보수해 주어야 한다.

건물임차자는 건물의 손해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러한 손해방지대책을 세웠거나 필요한 보수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임대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다.

건물임차자는 임차한 건물에 장식을 하거나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임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건물을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데 따라 물어야 한다.

건물임차자는 임대료지불을 공탁할수 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건물임대자의 승인없이 건물용도를 변경시켰거나 건물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거나 임대건물을 제때에 수리지 않는 경우, 계약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할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건물의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건물임대차의 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또한 건물의 매매 및 교환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판매하거나 다른 건물과 교환할수 있다.

매매 및 교환건물에는 임대준건물,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게 된 건물이 포함된다.

건물매매에서 구매권의 순위는 건물임차자, 건물공동이용자, 건물관리기관, 건물저당권자로 된다.

건물의 매매는 협의나 입찰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입찰의 방법으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건물가격의 0.2%를 리행보증금으로 세워야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와 건물의 위치, 가격, 토지이용권의 양도조건, 리행담보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기간, 위치, 설계보장조건 같은것을 더 밝혀야 한다.

임대하여준 건물을 매매한 경우 임차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도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넘어 간다. 건물가격은 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하여 정한다. 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 당사자들은 건물 취득 및 삭제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다른 건물과 교환할수 있다. 교환하는 건물의 차액은 화폐 또는 다른 물건이나 채무로 청산할수 있다.

건물의 교환절차는 건물의 매매절차와 같다.

이 규정에서는 또한 건물의 증여 및 상속질서를 규제하고 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임대 또는 저당한 건물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그에 대하여 임차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또는 저당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어 간다.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서를 만들어 공증을 받아야 한다.

건물의 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안으로 하여야 한다. 건물을 상속받으려는 자는 상속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증을 받아야 한다.

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해당한 등록을 하고 건물소유권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또한 건물의 저당질서를 규제하고 있다.

건물소유자는 금융기관에 건물을 저당할수 있다.

공동소유건물을 저당할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임차자에게 통지를, 은행대부받아 구입한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동의를 받아 하여야 한다.

저당한 건물은 덧저당할수 있으나 저당총액이 건물가격을 넘을수 없다.

건물저당은 저당계약을 맺고 하여야 한다. 저당계약에는 건물명, 저당자주소, 건물면적, 수량, 저당채무액, 저당기간, 리자, 보험, 처리 같은 조건을 밝혀야 한다.

저당계약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저당계약을 맺었을 경우 건물의 저당등록을 건물관리기관에 하며 저당계약이 만기, 취소되면 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저당자는 저당건물의 가치가 떨어 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가치가 떨어 졌을 경우 그를 보상하여야 하며 저당권자의 승인밑에 저당건물을 다른 자에게 임대, 판매, 교환, 증여할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물취득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저당권자는 저당자가 책임질수 없는 원인으로 저당건물의 가치가 떨어 졌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저당자가 받는 보험보상금이나 손해보상금에서 저당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저당자가 정한 기간안에 채무를 리행하지 못했거나 그가 사망한 다음 상속자가 없는 경우 저당건물을 처분할수 있다. 이 처분질서는 건물의 양도절차와 같다.

저당물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은 처분비용의 지출, 세금의 납부, 저당채무, 이 밖의 채무순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저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저당권은 저당자가 채무를 리행했거나 저당건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소멸되며 이 경우 건물저당권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이밖에도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관리기관이 한다는것과 이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와 분쟁해결질서를 규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건물의 양도 및 저당질서는 이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특수경제지대의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4. 중계무역 및 수송과 관련한 법규

특수경제지대법규에서 중요한것은 중계무역 및 수송과 관련한 법규정들이다. 이 규정들에는 중계무역규정, 중계집임자대리업무규정, 무역항규정 등이 있다.

중계무역규정은 1996년 7월 15일 정무원결정으로 승인되고 2000년 10월 27일 내각결정 제62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이 규정은 특수경제지대안에서 중계무역과 관련한 질서를 세우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이 지대를 세계적인 중계무역지로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지대에서는 지대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중계무역을 할수 있다.

중계무역은 신고제방식으로 한다.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품질검사를 받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검역,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역, 검사를 받고 해당 증명문건을 발급받을수 있다.

중계무역품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 해당 지대관리기관에 반출입신고서를 내어 합의 받은 다음 세관에 낸다. 중계무역품에 공화국의 원산지증명서, 상표를 붙여 반입할수 없다. 중계무역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계무역품은 세관이 승인한 창고, 야적장같은 일정한 보관시설을 갖춘 장소에만 보관할수 있으며 보관장소에서 또는 다른데 위탁하여 선별, 가공, 재포장, 수리 등과 같은것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에 해당 신고문건을 내야 한다.

중계무역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대관리기관과 세관이 한다.

규정에는 이밖에도 중계무역질서를 어긴 경우 적용되는 제재와 분쟁해결질서를 규제하고 있다.

중계집임자대리업무규정은 1995년 7월 13일 정무원결정으로 승인되고 1999년 3월 21일 내각결정 제27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짐을 특수경제지대를 거쳐 제3국에 중계수송하려는 집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 중계짐의 원만한 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31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중계집임자대리의 설립과 대리업무계약과 그에 동반되는 여러 계약의 내용과 체결 및 중계짐의 접수 및 보관, 발송, 사고짐의 처리 및 중계비용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계집임자대리기관을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집임자대리기관 창설신청문건을 기업창설승인심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문건에는 신청자명, 대리기관명, 소재지, 창설근거, 대리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대리업무와 관련한 다른 당사자와 맺은 계약서 초안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승인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승인하는 경우 집임자대리기관 창설승인문건을 발급해 준다.

집임자대리기관은 지대관리기관에 해당 신청문건을 내어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집임자대리기관은 집임자와 대리업무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리업무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날자, 대리업무의 내용, 집임자의 의무와 대리기관의 의무, 중계집수송런계방법, 비용과 청산방법, 문건송달과 통신방법, 사고처리와 분쟁방법, 계약리행기간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집임자대리기관은 짐의 중계수송과 관련하여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과 해당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집임자대리기관이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 짐수송기관에 해당한 의뢰문건 또는 신고문건을 내어 합의하였을 경우 그것을 계약으로 대치할수 있다.

집임자대리기관은 짐을 실어 보내기전에 해당 짐문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집임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짐을 기차로 보내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수기관에, 비행기로 보내려는 경우에는 항공역에, 자동차로 실어 나르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반출입신고문건을 내야 한다. 또한 중계짐이 도착하면 해당문건을 넘겨 받고 짐을 확인하고 짐보관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중계짐의 검수, 검량은 지대에 있는 검수, 검량기관이 한것에 준한다.

집임자대리기관은 중계짐에 사고가 생기면 집임자에게 통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계짐의 검사, 검수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장소에서 하며 해당한 확인문건을 발급 받아야 한다.

중계짐의 비용청산은 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은 비용청산종합계산서를 만들어 짐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규정에는 제재 및 분쟁해결문제에 대하여 규제되어 있다.

무역항규정은 중계무역 및 수송과 관련한 법규의 내용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중계무역과 중계짐수송이 많은 경우 무역항을 통하여 이루어 지기때문이다.

무역항규정은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는 무역배와 짐의 국적,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무역항에 자유로이 나들수 있으며 이러한 배와 짐에는 관세, 톤세, 운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중계짐수송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수송비를 줄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무역항에서 중계무역짐은 세관검사, 위생 및 수의, 식물검역을 받지 않는다. 오직 이러한 검역,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이러한 법적규제는 중계짐의 항통과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한다.

무역항에서는 짐을 싣고 부리며 운반, 포장, 선별 같은 작업은 항기관과 짐작업계약을 맺고 한다. 짐작업계약에는 짐명, 수량, 작업의 종류, 포장종류, 개당 중량, 매입항예정날자, 작업끝내는 날자와 시간, 짐취급과 관련한 사항, 이밖에 필요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짐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항기관과 짐보관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짐명, 수량, 포장종류, 개당 중량, 짐도착날자 및 보관기간, 짐보관비용, 이밖에 짐취급에서 주의할 사항 등을 밝혀야 한다.

항에 짐을 보관하는 경우 10일간 보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법적규제내용은 무역항에서 중계짐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짐작업과 보관 및 취급에서 사고를 없애고 당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중계짐의 성과적수송을 보장함으로써 특수경제지대를 국제적인 중계짐수송지로 개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5. 외국인투자기업 재정 및 회계관계규정

특수경제지대법규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특수경제지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 및 회계관계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특수경제지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와 부기계산 및 회계검증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특수경제지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대표적인 것은 <<라선



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규정》이다.

이 규정은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2000년 5월 13일 내각결정 제35로 제정되었다.

10개장 94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기업자본과 그 조성절차와 방법, 계획항목과 작성방법, 류동재산과 고정재산의 관리, 생산비와 그 계산방법, 재정수입과 결산 및 분배, 재정청산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활동은 필요한 재산과 화폐자금을 자체의 계획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경제관리활동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는 기업의 재정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불하고 수입을 보장하며 투자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자본에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등록자본, 기업운영과정에 늘어 난 자본, 차입자본과 같은 자본이 포함된다.

등록자본의 구성과 그 규모 및 출자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차입자본은 정한 기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의 재정계획은 자체로 세우고 집행한다.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는 조업준비비만 예견하여야 한다.

조업준비비에는 행정관리비, 설비조립비, 건설물의 건설 및 관리비, 건물임대비, 시제품생산비, 기능공양성비 같은것이 포함된다.

재정계획의 항목에는 자본금계획, 판매봉사수입금계획, 원가계획,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 리운 및 분배계획, 국가납부금계획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재정계획은 다음해 12월 25일까지 지대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정보충하려고 할 경우 지대재정기관과 합의하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은 류동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기업은 투자당사자들이 출자를 끝내고 영업허가를 받은 조건에서 대부를 받을수 있다.

기업은 류동재산실사를 달마다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류동재산에 대한 평가, 재평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고정재산은 해당 등록대장에 형태별로 올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은 취득한 날부터 1개월안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은 년에 한번이상 실사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등록된 고정재산은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회계검사를 받고 해당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비에는 원가, 기타 지출같은것이 포함된다. 샅가공비도 생산비에 포함된다.

원가항목에는 공업생산원가, 농업생산원가, 건설원가, 수송원가, 류통원가 항목들

이 포함된다.(항목의 구체적내용은 전개하지 않는다.)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변동으로 인한 손실, 파산당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 화학상품의 재가공, 재포장비 등과 같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비용이 포함된다.

지출된 조업준비비, 종업원들의 로임, 직업동맹활동자금, 대외사업비(대표단영접비, 교제비, 대표단파견비 포함), 사회보험료는 원가에 넣는다. 영업시작전의 건설자금은 따로 계산하였다가 건설공사가 완공된 다음 원가에 넣어 처리한다.

기업이 구입하고 있거나 계약에 투자하기로 된 재산, 종업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의 식사비, 후방사업 같은 지출은 원가에 넣지 않고 문화후생기금에서 지출한다.

기업의 재정수입에는 기업활동에서 얻은 자금과 기타 수입이 포함된다.

조업준비기간의 시제품판매수입금, 기타 수입금은 조업준비자금의 원천으로 리용하며 판매수입금에 넣지 말아야 한다.

재정수입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의제가격으로 계산한다. 샅가공의 재정수입은 받은 가공비로 계산한다. 거래세는 과세대상물을 판매하거나 봉사한 다음 얻은 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기업은 분기, 연간별로 재정결산을 하여야 한다.

기업의 연간재정총화는 리사회에서 하며 재정결산문건은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소득은 리윤, 결산리윤으로 갈라 계산하여야 한다.

리윤은 판매수입금에서 원가를 뺀 소득이며 그것을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기타 리윤으로 갈라 계산하여야 한다.

기업은 리윤에서 거래세, 기타 지출을 공제한 다음 결산리윤을, 결산리윤에서 기금, 기업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다음 분배할 리윤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결산리윤에서 예비기금을 등록자본의 25%가 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예비기금은 기업손실을 메우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리용할 수 있다.

기업은 10%범위안에서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것을 조성하고 리사회에서 토의한대로 정한 항목에 쓸 수 있다.

분배할 리윤은 투자자에게 분배 또는 투자몹상황에 리용한다.

외국투자가는 분배받은 자금과 상황받은 투자몹을 공화국령역밖으로 마음대로 내 갈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해산되는 경우 재정청산을 하여야 한다.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채권자대표를 선출하며, ② 기업의 재산과 도장을 넘겨 받고 그것을 관리하며, ③ 해산날 현재로 기업의 재산을 확정하며, ④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다음 명세표를 작성하며 처리방법을 협의하고 결속하며, ⑤ 해산날 현재로 확정된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⑥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청산안을 작성하며, ⑦ 미결된 업무를 처리하며,

⑧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 세관에 기업의 해산을 통지하며, ⑨ 세금을 바친 다음 채권,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하며, ⑩ 청산원들의 로임, 러비 같은것을 청산비용에 넣어 청산하며, ⑪ 이밖에 기업해산과 관련되는 문제를 처리하는것이다.

청산재산의 처리는 청산비용, 종업원들의 노동보수, 국가납부금, 담보채권이 붙은 채무, 일반채무의 순위로 청산하여야 한다.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투자당사자들에게 출자몹에 따라 분배하거나 상환하는데 써야 한다. 투자당사자가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이 해산되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는 그가 보상해야 한다.

이밖에도 청산위원회는 청산문건의 작성과 그것의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제출, 청산완료후 해당 등록의 취소 등의 사업을 한다.

이상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의 기업재정관리질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재정적으로 보장하고 재산관리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회계)계산규정은 특수경제지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회계법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화폐자금의 조성, 분배, 리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회계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4일 정무원결정으로 채택되었다.

이 부기계산규정에는 부기계산의 원칙과 계산자리 및 계산방법, 부기결산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재정상태의 변동과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적으로 계산하고 기록하여 정리하는 경영계산이다.

부기계산년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와 부기결산서, 전표가 포함된다.

부기계산은 복식기입으로, 조선원으로 한다.

부기계산은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결과를 사실대로 진실하게 하며 부기계산수법과 절차에 따라, 거래와 손익관계를 구별할수 있게 회계년도안에서 계산방법을 변동시키지 않는 원칙에서 해야 한다.

부기계산자리의 기입은 계산자리의 항목에 따라 재산계산자리의 기입은 재산의 증가와 잔고를 차방에, 재산의 감소를 대방에, 채무 및 자본계산자리의 기입은 채무 및 자본의 증가와 잔고를 대방에, 채무 및 자본의 감소를 차방에, 수입계산자리의 기입은 수입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초부터 결산기 말까지 루계액으로 대방에, 지출계산자리의 기입은 지출의 증가와 잔고를 년도 초부터 결산기 말까지 루계액으로 차방에 한다.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산재산으로 갈라 한다.

이 규정에는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계산방법, 재산의 구입가격계산방법, 류동재산의 취득가격계산방법, 채무의 계산방법, 자본의 계산방법, 제품판매와 건설물의 인도가격 및 기타 수입가격 등의 수입계산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규정에는 지출의 계산은 판매원가, 건설원가, 기타 지출로 갈라 한다

는것과 판매원가계산법, 원가항목과 항목별 비용지출 계산방법, 기타 지출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는 부기결산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부기결산은 결산기간의 재정상태와 경영활동의 재정적결과를 확정하는 종합적인 재정총화활동이다.

부기결산은 월, 분기, 년도별로 하며 매년 부기결산서를 작성한다.

부기결산서는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본표로 하여 만들며 그를 분석하는 부표를 만든다. 규정에서는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그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부기결산서의 비준 및 검증절차와 세무기관제출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정회계에 대한 법적규제에서 중요한것은 부기(회계)검증질서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질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에 예견되어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부기검증과 그 내용, 부기검증의 원칙, 부기검증사무소의 조직과 부기검증원의 자격, 부기검증대상과 검증절차와 방법 등이 규제되어 있다.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업이다.

부기검증은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적법성,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한다.

부기검증사무소는 부기검증원자격을 가진 부기검증원들로 조직한다.

부기검증사무소는 그 창설이 승인된 날부터 15일안으로 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기검증원자격은 부기검증원자격심의위원회가 준다.

부기검증대상에는 부기계산문건(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상품생산 및 판매계산서, 원가계산서,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 송금환자계산서, 같은 계산문건), 투자뭉 및 투자 실적과 관련한 문건, 로임계산문건,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황과 리자계산지불문건, 이밖의 부기계산관련문건과 기업의 파산, 병합, 분리, 분쟁과 관련한 문건이 속한다.

부기검증을 받으려는 경우 부기검증의뢰문건을 해당 부기검증사무소에 내야 한다.

부기검증사무소는 이 문건을 검토하고 부기검증원을 선정하여 부기검증을 하도록 한다.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과 관련하여 현지확인, 부기계산문건열람, 자료료해를 진행하며 투자액, 재산가격, 재산평가가격 같은것을 검증한다. 검증이 끝나면 부기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준다.

부기검증원은 또한 부기상담 및 검사 부기문건의 작성방조 같은 사업을 한다.

이밖에도 검증보고문건의 보관 부기검증사무소의 경비, 제재 및 분쟁해결질서들

이 이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상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회계질서는기업의 경영활동을 재정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통제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의 내용은 이밖에도 관광, 통계, 외국인 출입 및 체류,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채용 및 리용,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세관 및 관세, 국경통행 및 검역, 지구개발 및 경영, 외화관리, 환경보호, 외국투자은행의 창설 및 운영 등의 질서들이 있다.

이러한 질서들은 해당 법규정에 규제되어 있으며 지대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반사업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앞으로 공화국특수경제지대법규의 내용들은 지구개발과 그 활성화에 따라 부단히 심화되고 개선완성될것이다.

# 20세기 서울경제 100년의 전개과정

## -인구와 산업별 변화를 중심으로-

유 광 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 서언

「 」

이 글은 2000년도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20세기 서울경제 100년의 전개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경제 100년의 변천을 서술하는 데는,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이 될 수 있으나, 필자는 우선 두 가지 시각에서 서울경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시각은 서울이 한국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20세기 100년간 서울경제의 전개과정을 기본적으로 20세기 한국경제의 전개과정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시각은 서울이라는 지역경제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경제의 100년을 간략히 회고해보면, 한국경제의 지난 100년은 거세게 몰아닥친 외부충격에 힘겹게 내적으로 대응했던 고난의 역사였다. 한국민족은 20세기 최초의 도전인 제국주의의 확산에 맞서 근대국가를 건설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경제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20세기를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거의 반세기에 걸쳐 식민지 수탈상태를 경험하였고, 광복이후에도 군정과 분단, 6.25전쟁 등으로 50년대 말까지는 세계의 最貧國 중의 하나였다.<sup>1)</sup>

그러나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군사정변을 겪고 난 후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한국은 급속한 공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하여 불과 1세기가 안된 지난 1995년에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제11위 권으로서, 경제규모는 국민총생산액으로 따져볼 때 240배나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였다. 한국경제는 실업률 2%, 수출 1,000억 달러를 넘기는 경이로운 대기록을 세웠다. 그러다가 한국경제는 그간 관행이 되어버린 기업과 은행의 불투명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1997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1999년 말부터 한국경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

서울이라는 지역경제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이란 시각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원래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의 정의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

1) 1961년 현재 전세계 후진국 74개국 중 한국은 끝에서 12번째로 가난한 국가였다(Adelman, I., & Morris C.,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p.237).

의 지속적인 증가'이지만,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의 확대와 인구증가로 인한 전체 경제규모의 확대와 발전도 의미한다. 지난 1세기 동안 서울에서는 1인당 소득수준의 증대도 일어났지만,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서울의 인구증가가 서울의 경제규모를 확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00년도 대한제국의 한성은 인구가 20여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100년이 지난 1999년의 서울은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변모하였다. 경제이론에서는 한 나라의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면 경제적 強國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sup>2)</sup>

경제성장 또는 경제발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1인당 소득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이외에 구조적인 변화(structural change)도 동시에 발생한다.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의 예는 산업구조가 변하여 공업화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동함으로써 도시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의 시대구분과 병행하여 서울의 행정구역 확대와 이에 따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화 등이 일차적인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인구와 산업구조의 큰 변화만을 서술할 예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신문 잡지 등 1차 자료와 통계, 그리고 서울경제를 소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산하 중요 구청의 역사, 경성부사, 서울시사, 서울육백년사 등 각종 문헌과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논저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 2. 半食민, 식민지시기의 서울경제

### 1) 인구와 산업별 취업자

조선조의 漢城에 거주하고 있던 인구는 1425년 최초 인구조사에 의하면 10만3천 명이었으나, 1899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22명이 되었다. 한일합방 당시인 1910년 238,499명이던 京城의 인구는 1920년 국세조사결과 250,208명으로 증가하였다. 한일합방이전의 조선은 지역간의 인구이동도 활발하지 못하여 인구의 재분포도 거의 변화 없이 안정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합방 후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인구 분포의 전환점을 이루게 하였다. 합병 초기에 京城은 농산물과 지하자원을 일본으로 移出하는 항구도시와 식민 행정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에 들어서는 일본이 滿洲사변과 中日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종전의 식량보급기지에서 대륙침략의 전진 기지화함에 따라 식민통치의 거점으로서 경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성의 인구는 1930년 355,426명으로 약 1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1935년에 경성의 인구가 404,202명으로 증가되고 인구밀도 또한 11,117명으로 높

2)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인구 1,000만 명, 그리고 하버드대학의 체너리(Hollis B. Chenery)는 인구 1,500만 명을 경제적 大·小國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아지사, 1936년 京城府域을 고양군, 시흥군, 김포, 영등포 방향으로 확대하여 경성에 편입시킴으로써 인구는 727,241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 후 경성인구는 계속적인 증가를 하여 1942년 1,114,004명으로, 경성의 인구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일제 말기 대도시 인구소개령과 징병 등으로 인해 경성인구는 감소되어 1944년에는 947,630명이 되었다.<sup>3)</sup>

강점 전후부터 경성에 거주하는 조선인 거주자의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일본인은 대폭 늘어났다. 조선인의 수는 강점 이후 1919년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다소의 증감은 있지만 대체로 1910년 이후 1935년까지 경성의 총호수와 인구수 중 조선인과 일본인 거주자의 구성은 7 : 3 정도였다.

1920년대 이후 한인 거주자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농촌 거주자의 서울 이주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층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이주하였고, 또한 지주층의 경우도 경성에 각종의 교육·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농촌 지역은 각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성으로 많이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중반부터 한인 거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제가 도시 접경 지역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경성부역을 대폭 확대시켰기 때문이다.<sup>4)</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경성의 인구는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구이동이 심하여 자연증가보다는 府域확대에 따른 경성에 편입된 인구와 사회적 이동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식민지기간 중 경성의 인구증가는 1910년 23만8천 명에서 1944년 94만7천 명으로 70만9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8.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업분야 종사자가 전국의 평균보다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1900년대에도 서울에는 농업분야 종사자가 많지 않았다. 1910년 5월 현재 한성부 조선인 직업별 현황을 보면 총 56,010명 중 상업종사자가 가장 많은 13,672명(24.4%)이었고, 다음이 농업종사자 8,643명(15.4%), 공업종사자 3,310명(5.9%)이었다. 1906년-1910년간 한성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직업도 농업종사자의 수보다 상업종사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sup>5)</sup>

## 2) 농업

일제시대 서울의 농업지역은 서울로 편입된 현재의 성북지역, 성동지역, 동대문지역, 도봉지역, 송파지역, 서대문지역 등이었다.

일제시대 성북지역과 그 이북의 일대는 조용한 농촌지역이었다. 오늘날의 농촌처럼 시장에 내놓기 위한 채소나 화훼(花卉)를 재배한 것도 아닌 순전한 미곡 單一耕

3) 이창섭, 「서울의 인구성장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7쪽; 서울특별시편, 『제39회 서울통계연보』, 1999, 80-81쪽.

4)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제10호, 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130쪽.

5)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통계자료집 대한제국시기편』, 1996, 86-89쪽.



작의 농업경영이었고, 부업으로는 새끼.가마니를 짜서 換金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1933년 12월말 현재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성북지역이 속했던 고양군 송인면 내의 총호구수는 7,416호, 36,79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농림.목축업에 종사한 것은 1,431호(19.3%), 8,489명(23.1%)이었다.<sup>6)</sup> 그러나 경성의 도심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里洞 등, 예컨대 성북리의 경우 총 호수 589호 중 농업호수는 불과 2호로 0.3%에 불과하였다.

일제강점기, 1936년까지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의 구역은 대체로 오늘날의 동대문구, 성북구 및 도봉구 등 3개 區의 구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의 송인면 일대는 거의 3분의 2가 울창한 산림.임야였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거리가 전.답이었다.<sup>7)</sup> 1930년대 말경의 淸涼里일대도 전답뿐이었고 그 전답 사이사이에 약간의 주택이 산존했다. 그리고 당시 동대문지역의 농업은 타 지역에 비해 그 기술수준에서 매우 앞서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때부터 선농단.東籍田의 전통을 이어 받은 데다가 일제하에선 경기도 농사시험장이 지난 날 동적전 뒷터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동대문지역 농업은 벼농사.보리농사 이외에 蔬菜재배도 대단히 성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성동구 왕십리나 사근동 일대가 미나리의 주산지였듯이 전농동.답십리 일대도 미나리의 주산지였으며, 그 미나리짚(=밭)은 1960년대의 말까지도 존속했다. 일제하의 동대문지역이 농업 선도지역이었음은 전농동에 경성농업학교가 입지한 점에서도 추측할 수가 있다.

일제하의 광주군 中垜面은 현재의 송파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송파구를 이루는 지역일대의 1940년경의 모습은 인구 6천 명 정도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농촌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중대.彦州.大旺面 등 3개 面民은 비록 나룻배를 이용하여 서울에 접근했지만 지리적으로 서울에 가까워서 비교적 다수의 일본인이 농업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다.<sup>8)</sup>

### 3) 공업

1910년 이전 서울의 공업은 서서히 공장공업단계로 이행하고 있었다. 1880-90년대 정부의 식산흥업정책에 의한 기술도입 및 회사, 공장의 설립과 민간에서 회사, 공장의 설립 시도는 비록 단명하였지만 외국상품의 유입에 대항하여 공장공업화를 위한 첫 시도를 보여주었는데, 러일전쟁 이후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에 의한 공장 설립과 이에 대응한 조선인 상인.수공업자의 공장 설립은 식민지에 진출한 일본인 자본과 조선인 자본의 대립 속에서 공장공업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인이 제일 먼저 착안한 것은 역시 방직공업이었다. 光武元年(1897년)에 安駒

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성북구지』, 1993, 429쪽.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지』,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4, 560쪽.

8)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송파구지』, 동강포인쇄, 1994, 566쪽.

壽가 중심이 되어 大韓織造工場의 설립을 추진시켰다.<sup>9)</sup> 광무 4年(1900年)에는 종로 白木塵이 주동이되어 鐘路織造會社가 건립되었다. 1902년에는 군소 기업인인 金德昌이 직조공장을 건설하였다. 그 밖에 군소 가내공장이 많았다.

견직공장으로서의 대한부인회 소속의 織造所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직조생산의 보급을 위하여 1902년에 龍山養蠶所를 설립하고 양잠기술을 습득케 하였던 바, 이 양잠소에 絹織機 2대를 설치하고 직공 2명을 두어 견포를 직조케 하였다.

방직공장 이외의 공장으로 1903년에 설립한 砂器工場은 이색적 업종이다. 李容翊이 설립한 사기공장은 사기수출을 목적으로 러시아인 기사를 채용하였다. 이용익은 1904년에 銃器製造所의 설치도 계획하고, 그 시설을 일본에서 도입했으나 노일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이 밖에 철공장, 인쇄공장, 연와공장, 정미공장, 연초공장 등이 있었으며, 근대공장으로서는 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이 특징이었다. 1911년 조선내 공장의 총수(종업원 10명 이상 동력사용공장)는 270개소였으며, 그 중 조선인 공장은 86개소, 나머지는 일본인 소유였다. 일본인 소유공장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을사조약후 일본 통감부가 설치된 후 자본이 풍부한 일본인의 대거 진출에 원인이 있었다.<sup>10)</sup>

일제시대 조선의 공업은 1910년대 근대적 공장공업의 발흥과 30년대 중공업 등의 발전으로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공업의 발달은 외형적이고 기형적인 발달이었으며, 조선의 산업발전을 오히려 구조적으로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우선 조선에서 발달한 화학공업 등 중공업은 조선경제와는 하등 연관 없이 일본경제와 연계되는 산업이었고, 게다가 이러한 업종의 자본은 거의 일본인 자본이었다. 조선인 자본이 가장 활발하게 투자되었다는 방적산업에서도 조선인 자본은 겨우 11%에 불과하였다.<sup>11)</sup> 그리고 공업기술이나 경영은 거의 일본인이 담당하였고, 주요시설재는 모두 일본에서 도입하였다. 이는 광복이후 조선공업이 겪게 되는 어려움에서 잘 나타난다.

일제하 경성은 공업입지 면에서 볼 때 조선 전체의 공업발전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1910년대 경성은 전국 공장수의 약 25-30%, 전체 노동자수의 30-40%라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 내에서 민족자본의 대표적 공업은 직조공업이었다. 1910년대에 조선인 직조공장의 수는 38개소였으나 대부분 영세규모였으며, 이들의 자본주는 대개 귀족 출신들의 전직관료들이었다. 1923년에 와서는 24개의 직조공장으로 줄어들었으나, 직공들의 수나 자본금은 약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1910년대에는 경영자의 일부가 일본인들이었으나, 1920년대에 와서는 모두 조선인으로 이루어져 직조공업이 순수한 민족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sup>12)</sup>

9) 『日韓通商協會報告』 第36號(1898年), 47쪽 이하.

10) 『京城商工會議所月報』, 1921년 4월, 제4호, 47쪽 이하(趙璣濬, 「開港前後의 市場經濟의 發展과 思想」 韓國精神文化研究院編, 『韓國資本主義의 形成과 展開』, 1984, 42-43쪽에서 재인용).

11)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49년도판.

직조업계를 뒤이어 조선 내의 산업으로는 고무공업을 들 수 있다. 최초의 공장은 1921년 중림동에 설치된 ‘半島고무工業所’가 효시이며, 이후 경성역을 중심으로 고무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36년에 와서는 25개소의 공장이 세워졌으며, 1942년에는 2개소가 늘어난 27개소로, 신설동 지역에만도 4개소가 새로이 세워졌다.<sup>13)</sup>

1930년대에 들어서 永登浦가 새로운 공업지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몰려들게 되었다. 영등포 지역은 원래 陶製品을 생산하기에 좋은 토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와나 기와 등을 생산하던 영세공장들이 많았던 지역이다.<sup>14)</sup>

1910년대 경성에는 공장공업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가내공업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1910년대 초에는 공장공업과 가내공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sup>15)</sup> 그러던 것이 1910년대 말과 20년대 초가 되면 공장공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공장공업화할 수 있는 업종이 어느 정도 정해짐에 따라 가내공업은 공장공업과 다소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1922년에 행해진 조사를 보면 당시 경성에서는 직물업, 編組物業, 紙製品제조업, 재봉업, 筆제조업, 唐傘제조업 등이 가내공업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가내공업이 대량생산에 부적합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공업적 작업에 적합한 품목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상업

1876년 개항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무역의 확대라 할 수 있다. 개항 이후 교역액은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1893-1909년의 15여 년 사이에만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sup>16)</sup> 무역상대국은 일본·청국·러시아 등이었고, 무역품은 대부분 서구산 공장제품 등이 증개무역 형태로 수입되었고, 조선에서는 곡물과 원료 등이 수출되었다. 그러나 항상 적자상태라 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많은 금이 수출되었다. 금의 수출은 1886년-1909년의 20년 사이에만 약 5.5배나 증가하였다.<sup>17)</sup> 한성은 부산항, 인천항과 더불어 해외무역의 중심지였고, 그 중 인천항은 경성의 무역항 구실을 겸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성에는 많은 외국 상인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日商들은 1882년 8월 30일에 체결된 韓日修好條規續約에 의한 한성의 開市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자, 일상 10여 명이 한성에 진출하였다.<sup>18)</sup> 청일전쟁에서 전세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

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4권, 1981, 490쪽.

1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동작구지』, 성광문예, 1994, 225쪽.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지』, 1990, 297쪽.

15) 『경성상공업조사』, 35-40쪽.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 제6호, 인쇄공업협동조합, 1995, 212쪽에서 재인용).

16) 朝鮮貿易協會編, 『朝鮮貿易史』, 1943, 48-51쪽.

17) 朴贊一, 「한말 금수출과 금광업 덕대경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18) 자세한 내용은 유광호, 「개항 이후 한말 경제양상의 변화(1876-19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되자 일상들의 서울진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1890년 말까지 한성에 거주한 일상 은 625명이었으나 露日戰爭이 끝난 후 116업종에 1,231명으로 늘어났고, 통감부가 설치된 후 1907년 6월에는 143업종에 4,654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었다.<sup>19)</sup>

인천이 개항되자 淸國의 상인도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청상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한성에 진출하였다. 1882년 8월에 체결된「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후인 9월부턴 入京하기 시작하여 1884년에는 이미 48개 점포에 352명의 청상이 상업활동을 벌여 일본상인을 압도하고 있었다.<sup>20)</sup> 청일전쟁후 한성상계에서 청상이 차지하던 위치는 전도되었고, 많은 청상들은 폐점, 귀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 5년 뒤 1899년에 淸國公使館이 서울에 자리잡으면서 청상들은 다시 한성에 들어와 3천명에 이르러, 다시 일본인들을 누르는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 이후에는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 1910년 말 현재 한성의 청상 수는 519호, 1,828명으로 나타났다<sup>21)</sup>

개항이후 개항장에 외국상인들이 상륙하고 이들을 통하여 대외무역량이 증대하자, 객주, 여각 등 조선상인들도 상사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상인과 대항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외국인 상사의 영향을 받아 1883년 惠商公局과 같은 상인단체를 결성하면서 商會社의 설립을 권장하였다.<sup>22)</sup>

이러한 상사회사들은 商社, 公司 혹은 會社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883년 平安道人이 최초로 세운 大同商會를 위시하여, 서울에 長通會社가 설립되었고, 그밖에 捲烟局, 釀春局, 豆瓶局 등 상사가 설립되었다. 당시 서울을 비롯한 대도읍과 개항장에는 서구의 상사회사를 본 딴 각종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문헌에 나타난 회사만 해도 40여 개에 달하였다.<sup>23)</sup>

1905년 통감부설치 이래 일본의 내정간섭에 의한 朝鮮商權의 침탈이 더욱 거세게 전개되자, 민족계 상인들은 강력한 단결로서 이에 대처하였다. 1905년 7월 경성상업회의소의 설립도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성상업회의소는 종로 옥의전이 전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점의 家屋所有權을 통감부가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박탈하자, 연일 회합을 가지면서 그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경성상업회의소는 일본인 재정고문 메카다(目下田)가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금융공황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창립된 것인데<sup>24)</sup>, 정부에 대한 건의가 일본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상업은행의 설립을 계획하여 1906년에 度支

---

편, 『한국의 정치와 경제 9집』, 22-23쪽을 참고할 것.

19) 朴慶龍, 『開化期 漢城府 研究』, 一志社, 1995, 125-132쪽.

20)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편, 『日韓外交文書』 第8卷(淸案 I, 4冊); 박경용, 『개화기 한성부 연구』, 일지사, 1995, 115-117쪽.

21) 박경용, 상계서, 118-123쪽.

22)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일지사, 1985, 219쪽.

23) 金允植, 『陰晴史』 下卷 참조; 趙璣濬,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1973, 290쪽; 박경용, 상계서, 137쪽.

24) 이 회의소는 1884년에 창설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한성상무회의소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部大臣의 인가를 받아 韓一銀行을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또 경성상업회의소는 전국의 상업회의소와 제휴하여 隆熙 3年(1909년) 11월에 『商工月報』를 발간하여 민족계 상인들에게 국내외의 경제동향(實業論說, 金融, 統計, 物價 등)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sup>25)</sup>

일제하 경성시대의 상업은 조선인상인과 일본인상인 간에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1934년 6월 19일에 발표된 총독부의「조선시가지계획령」은 경성의 상업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상업구역에 들지 못한 舊상가는 파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새로이 상업구로 지정된 곳은 교통의 요충지대여서 地價가 높고 각종 부담이 증가해 조선인 중소 상인은 발붙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결국 1930년대 이후 급속히 추진된 경성의 府域 확대는 조선인의 부담 증가와 구매력 감퇴로 이어졌고, 이는 조선상인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경성 거주 조선인들은 대부분 이북, 즉 종로를 중심으로 북악산 남쪽에 거주했는데, 생활난으로 점차 청량리, 왕십리, 마포 등 교외로 옮겨가는 추세였다. 반면 일본인들은 수도 크게 증가했고, 거주 지역도 남산의 북측으로부터 府 중앙을 넘어 府內 모든 町洞으로 뻗어 갔다. 아울러 일인 거주 지역은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부각되고 지가도 크게 올라, 일인들이 손쉽게 빠르게 엄청난 부를 쌓는 기반이 되었다.

경성 거주 조선인은 일인 거주자에 비해 매우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조선인 상업은 크게 약화되었고, 조선인상인과 일상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특히 조선인상업의 주된 거래 상품이 대개 거주인구의 다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식료품, 의료품, 기타 잡화류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컸다. 이들 상품은 부피가 크고 많은 노력을 요했으나 값싸고 이윤이 낮았다. 이들 상품이 시장거래에서 점하는 비중은 높았지만 전체 상업거래에서의 비중은 그만큼 높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들 상품이 대부분 식생활의 기본 재료이거나 생활 일용품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공설시장 설립, 상인에 대한 간섭 등의 방법으로 판매 및 가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후반 전시 통제경제 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시장을 비롯한 모든 상업구조가 전시 체제하의 관제 배급 기구화되면서 확연해졌다. 그 결과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생활 필수품에 거래가 집중되었던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의 조선인상업은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곡물·식료품·일용품 등의 물가가 폭등하자 총독부는 일본인 거류민의 가사보호를 목적으로 각 시·읍에 공설시장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였다. 공설시장의 운영은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는 행정수단의 기능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30% 가까운 비율로 판매가격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의 발발과 더불어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설시장을 물가 조정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성부는 공설시장의 증설에 힘쓰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0년 말 현재로 10개소의 공설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공설시장의 설립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사설 일용품시장의 설립을 추진하였

25) 박경용, 상계서, 1995, 139-140쪽.

다. 1921년 8월에 영락시장의 설립을 비롯하여 11개소가 신설되었으며, 사설시장의 설립 및 경영권은 전부 일본인들에게 부여되었다. 따라서 광장주식회사가 경영하던 동대문시장만이 소위 민족계 시장의 명분을 유지하고 있었다.<sup>26)</sup>

일제시대 경성상업에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백화점의 번창이었다. 일본자본의 한국 진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쓰이재벌(三井財閥)은 직영점인 미쓰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의 지점을 1906년 한성에 설립했다. 장소는 本町(현 충무로 1가)이었다. 1921년 4월에는 지금의 미도파백화점 자리에 조지야백화점(丁字屋百貨店)이 설립되었고, 1922년 충무로 1가에 미나카이백화점(三井百貨店)이 세워졌다. 1926년에는 히라다백화점(平田百貨店)이 충무로 입구에서 문을 열었다. 1930년 10월에 개점한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지점은 대지 730평, 연건평 2,300평, 종업원 360명을 거느린 조선과 만주지역의 최대의 백화점이었다.<sup>27)</sup>

조선인들도 백화점 개설에 참여하였다. 1918년 유재선이 종로2가에 세운 계림상회를 필두로, 종로와 남대문 일대에 조선인 백화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규모나 품목 등에서 일본인 백화점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sup>28)</sup> 그러나 1939년 9월에 朴興植이 종로2가에 설립한 和信商會는 100만원의 자본금과 50만원의 불입자본금으로 현대식 백화점에 손색이 없는 백화점으로서 일본인 백화점과 맞설 수 있게 되었다.

경성의 소매업자는 중소 소매상, 백화점, 통신 판매상, 行商, 소비조합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인상인의 대부분을 점한 소매상가는 거의가 소규모의 영세업자였다. 조선인 소매상은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항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백화점과 소비조합 등 새로운 소매업자가 등장하여 상권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조선인 소매업자의 처지는 더욱 힘들게 되었다. 그 중에도 백화점의 급속한 영업 확대는 일반 소매상, 특히 조선인 소매상의 처지를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개 소매업에 종사하던 조선인상인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였다. 조선인상인의 영세성은 시기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였다. 조선인 업자의 경우 자본금 1萬円 미만의 업자가 전체의 90%를 점하였다. 일본인 업자는 대부분 5천엔 이상이었고, 1만엔 이상이 37%를 점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성의 府城 확대와 輸移入品の 국내 공급 확대 정책, 그리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이 발발하면서 발생한 전쟁 特需 등으로 경성의 상업이 다소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일제는 1940년 전후부터 상업자들을 정리·제거시키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1940년 말 현재 서울의 판매업자 수는 전체 인구와 비교하면 97명에 1점의 비율이었고, 도심지에 90% 이상이 밀집해 있었다.

---

26) 광장주식회사는 포목상으로 거부였던 종로 상인 박승직·장두현·최인성·김한규 등이 설립하였으며 동대문시장의 경영뿐만 아니라 토지가옥의 매매와 금전대부업까지 하였다. 당시 동대문시장과 민족계 시장으로서 쌍벽을 이루던 남대문시장은 1922년에 그 경영권이 일본인 회사인 중앙물산주식회사로 넘어갔다.

27) 서울학연구소,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인쇄공업협동조합, 1996, 168쪽.

28)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4권, 1981, 502-503쪽을 참고할 것.

일제는 이러한 본포가 생활필수품의 계획적 수급 확보에 부적절하고 과잉이기 때문에 점포의 총수를 1/3로 정리하고, 적정하게 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상업자 정리를 진행시켜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조선인 중소 상인이 희생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는 상업 발전의 일반적 추세라 할 소상공인의 대상인화나 중·대상인의 시장 설립·경영 혹은 회사·설립 경영 등을 통한 부의 축적과 성장이라는 발전 경로는 대다수의 조선인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일상은 객주업을 비롯한 중간 도매업자의 대다수를 점하며 유통을 장악하고 이윤을 독점하며 성장을 지속하였다.

## 5) 금융업

1900년을 전후하여 조선에도 은행이 개설되었고 일본의 은행들이 경성에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합방이후에는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 등이 운영되었다.

1896년 김종한·이완용 등이 발기하여 조선은행이 설립되어 1897년 2월부터 영업이 개시되었다. 조선은행은 민간은행이면서도 국고출납사무도 담당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주·평양·개성에 지점을 설치했으나, 설립초기부터 영업 부진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00년에 조선은행은 한국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여 재건을 꾀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적 여건상 재건에 실패하여 1901년 사실상 폐점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은행은 한국인이 최초로 세워져 경영한 근대적 은행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합방이전 또 다른 민족계 은행이 설립되었다. 1905년부터 시작된 ‘화폐·재정정리사업’으로 화폐공황이 초래되고 外劃, 어음 등 정통적 금융관행이 와해되는 가운데 조선인 상인은 자금의 숨통을 트기 위해 두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였다. 하나는 ‘화폐·재정정리사업’을 주도했던 대한제국 재정고문 메카다가 금융경색에 대한 대책으로 설립하였던 식민지 금융기구, 즉 漢城共同倉庫, 어음(手形)조합, 農工銀行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는 漢城商業會議所에 참여했던 서울의 상인이 중심이 되어 한일은행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실을 보았다.

한일은행은 주로 대출액이 예금액을 초과한 상황이어서, 상급 금융기관인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함으로써 자금 부족을 해결하였다. 한일은행은 1910년까지는 정부나 상급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예금을 통해 조선인 사회에서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자금조달 양상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하였다. 조선인 예금 중심의 자금 조달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경영난·영업망의 확대·경영진 교체를 배경으로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실행되었으며 그 차입금은 한일은행의 주요 자금원으로 자리잡았다. 조선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조선은행과 한일은행 사이에 상하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초기 한일은행이 표방하였던 ‘조선인의 독자적인

금융기구'라는 명분이 퇴색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한일은행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입을 통해 '조선은행-보통은행'이라는 통일적 수직관계, 식민지 금융체계에 포섭된 것이다. 그 밖의 민족계 은행인 조선상업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도 거의 식민지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의 지휘를 받는 위계질서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금융 면에서 지배하기 위하여 1909년 10월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을 설립했다. 이때는 이미 일본이 한국의 금융과 재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1904년 10월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해 온 메카다는 이듬해 1월 화폐조례를 공포하여 일본화폐를 무제한 유통케 하고, 일본의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조선의 국고를 취급하게 하는 한편, 화폐정리사업을 대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조선의 금융과 재정은 제도적·실질적으로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일본군이 서울 주변뿐만 아니라 함경도 등 변방의 치안까지 담당할 정도로 군사적·정치적 침략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점하자마자 1911년 8월 한국은행을 조선은행으로 개편하였다.<sup>29)</sup> 개편 당시의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지만, 영업의 확장에 따라 점차 증액되어, 1920년에는 8,000만 원에 달하였다.

한편, 1917년 11월부터 조선은행권은 만주에서도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1929년에 조선은행이 설치한 조선내의 지점 및 출장소는 10개소였다. 조선 외에 있는 지점은 일본에 4개소, 만주에 16개소, 중국에 4개소, 연해주에 2개소, 미국에 1개소였다. 조선은행의 영업범위는 일본의 대륙침략이 확대됨에 따라 확장되었다. 이것은 당시의 조선은행이 조선 내에서의 영업보다도 외지, 특히 만주에서의 영업에 치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영업의 범위는 몽고와 화북 일대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은행은 일본의 조선 지배 및 대륙 침략의 전개와 궤적을 같이 하면서 성장해간 전형적인 제국주의 금융기관이었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18년 6월에「朝鮮殖産銀行令」을 공포하였다. 일찍이 1906년이래 農工銀行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일본인들이 농공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여 회수불능의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농공은행의 파탄을 수습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식산은행은 그후에도 농공은행의 파탄을 반복하였다. 1922년도 대출을 보면, 각종 대출자금 중에서 상업자금은 60.3%라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면서 제1위에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식산은행이 참으로 주력해야 할 농업자금 및 공업자금의 비율은 각각 17.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농업자금의 대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공업자금의 비율은 2% 정도에 머물렀다. 일본의 對조선 식민지정책에 있어서 조선의 공업화는 안중에 없었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sup>30)</sup>

2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 육백년사』 제4권, 1981, 504-5쪽 참조.

30) 상계서, 506-513쪽.



### 3. 광복이후 서울의 경제

#### 1) 인구와 산업구조

광복 후에서 6·25전쟁 전까지 서울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기에 따라 인구의 일시 감소현상을 보였다. 서울의 인구는 1946년에 126만6천 명이던 것이 1949년에는 141만8천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수로만 분석하면 4년만에 51만7천 명(약 57.4%)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복당시 서울인구 중 귀국한 일본인 17만 명을 고려하면 증가인구수는 68.7만 명(약 76.2%)이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인구는 서울시의 인구밀도를 높여 1947년에 이미 1만 명 선을 돌파하였고, 1949년에 서울지역은 독섬, 은평, 송인, 시흥방면으로 약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서울의 인구도 12만1천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일본, 만주, 중국 등지에서 살고 있던 약 170만 명의 동포가 귀국하여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48만 명이 넘는 북한주민이 공산체제를 벗어나 남하하여 주로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은 1950-53년까지의 전쟁으로 막심한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를 입었다. 사망, 실종, 납치 등의 인명피해와 피난민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1950년 169만3천 명이던 서울인구가 1951년에 64만8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1953년 휴전이 성립되어 정부가 환도함에 따라 피난을 갔던 도시인구가 복귀되어 1953년에 서울의 인구는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1954년에는 124만2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란 후 파괴된 도시재건을 위한 전후복구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다시 서울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sup>31)</sup>

60년대 이후 1995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였다. 1963년에 서울은 양주군, 광주군 등의 일부를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였고, 60년대 이후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서울의 기존 고등학교와 대학의 인원이 증원되고 새로운 교육기관이 신설 확장됨에 따라 인구증가를 가속화시켰다.

그리고 서울은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고도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혜택이 편중되자 많은 지방인구가 서울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은 1970년에 인구가 5백만 명을 넘어섰고, 1988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1995년에는 서울의 인구가 10,595,943명으로 인구밀도가 17,491인이라는 최고의 인구수와 인구밀도를 보였다. 서울의 인구는 1995년을 고비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998년의 경우 10,321,496명으로 인구밀도는 17,046인이다.<sup>32)</sup> 오늘날은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는 셈이다. 조선시대의 한성이나 일제시대의 경성과는 달리 서울이

31) 이창섭, 「서울의 인구성장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9쪽; 서울특별시편, 『제39회 서울통계연보』, 81-82쪽.

32) 서울특별시편, 『제39회 서울통계연보』, 1999, 82-83쪽.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sup>33)</sup>

서울의 인구 급증은 대규모의 이농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한 사람들 중 1960년대에는 약 45%, 1970년대에는 약 35%가 서울을 1차 전입 지역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1980-85년에는 전체 순이동량 186만 명에서 서울로의 순이동이 29.6%인 55만 명이였다. 더욱이 1985-90년에는 전체 離村向都 인구 163만 명 가운데 서울로의 순이동은 20만 5천 명으로 12.6%에 그쳤다. 이렇게 볼 때 이농민의 서울 전입은 1960년대에 가장 활발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점차로 진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수도권으로 이주한 지방 인구들은 서울보다는 인천·경기를 전입 지역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서울 인구의 인천·경기로의 전출도 부쩍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 인구의 인천·경기로의 이주는 직장 이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에 따른 단순한 거주지 이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sup>34)</sup>

1998년 현재 서울의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3,603천 명(80.9%)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광공업 835천 명(18.8%)이며, 농림어업은 14천 명(0.3%)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해 전국 산업별 취업자 19,994천 명 중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3,595천 명(68.0%), 광공업 3,919천 명(19.6%), 농림어업 2,480천명(12.4%)과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은 농업국가 시대에도 농업이 중요한 산업이 아니었고, 그 동안 100년 사이에 서울은 상업, 행정, 금융 등 서비스 중심의 도시로서 크게 변모하였음을 말해준다.<sup>35)</sup>

1인당 GNP 측면에서 서울은 아직까지는 여타 도시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의 추이를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생산 증가율은 최근에 오면서 전국의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인 인천지역의 총생산액 자체는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sup>36)</sup> 1990년 현재 제조업체의 약 25%가 서울에 있지만, 5~9인 사업체는 약 31%, 500인 이상 사업체는 단지 약 12%만을 차지하고 있다.<sup>37)</sup>

1980년대 후반 이래 고용감소와 서비스 고용의 증대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구성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불황이라는 순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서울의 경우 1980년대 전반기에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완만히 감소하고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보다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구로구, 영등포구 등의 서울의 대표적 공업지역에서는 제조업 고용의

33) 한상진, 「1980년대 이후 수도권 지역의 산업 재구조화: 기업 전략과 지방 노동 시장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52쪽.

34) 상계문, 52-54쪽.

35) 서울특별시편, 『제39회 서울통계연보』, 1999, 137-9쪽, 557쪽.

3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구조와 제조업』, 극동인쇄주식회사, 1994, 2쪽.

37)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서울연구-유연적 산업화와 새로운 도시·사회·정치』, 도서출판 한울, 1993, 93쪽.

38) 상계서, 95쪽.

비중이 후반기에 보다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소매업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업서비스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의 제조업 고용비중의 감소는 탈산업화와 같은 현상이라기보다는, 주로 산업의 공간조직(예를 들어 본사와 공장의 지역적 분리)의 변화 및 하청관계 등의 생산외부화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상호 연관된 산업공간으로 더욱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산업부문에서 서울의 집중이 높은 업종들이 있으며, 새롭게 재편성되기도 한다. 먼저 전국과 서울지역의 높은 고용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본다.

전국적으로는 1980년대 동안 전자 산업의 고용이 급속히 증가하여, 90년에는 최고의 고용인수를 보이고, 반면 섬유는 1위에서 2위로, 의류는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의류 산업이 여전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가장 높은 서울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의 하나인 인쇄업은 전반적인 제조업 고용감소 속에서도 급속한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구에 특화 되어 있다. 국내 최대의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전자 산업은 수도권 지역에서 매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비교적 안정적 고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주도적 제조업은 섬유, 의류업과 같은 노동집약적이고 디자인 집약적인 산업과 전기전자와 같은 정보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오늘날 서울의 산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제조업의 생산기능의 쇠퇴와 서비스고용의 증대. 2) 영세 소기업, 기업분사기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의 높은 집중도. 3) 서울의 주요 산업은 섬유·의류산업과 기계·전자산업이며, 산업의 특성에 따라 서울 내에서의 분포패턴이 다르다. 의류·섬유 산업과 같은 경공업은 비교적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상당수 입지해 있다. 반면 기계·전자 같은 중공업은 몇몇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다.

## 2) 농업

광복이후 서울특별시는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경기도의 많은 지역이 유입되었으며, 그것은 대개가 농지였다. 1936년도에 편입된 행정구역이나 1949년에 편입된 지역 등은 대개가 농지였다.

1949년 당시 받은 성동구와 서대문구가 서울 전체의 50%를, 논은 영등포구·성동구·서대문구·성북구 등이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영등포 지역이 공업지대로 발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대개가 농지로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지면적과 농가호수는 점차 감소하였고, 1955년 말 현재 서울에 있는 농가호수는 전체 농가의 0.46%,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총농경지의 0.32%에 불과하였다.

39) 상계서, 97쪽.

서울지역의 농업은 대개 영세농업이었고, 5정보 미만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2년부터 1960년 사이의 농가별 농토비율을 살펴보면 1/2정보 미만의 영세농가가 50%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농업의 영세화를 면치 못하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농지의 축소화 현상인데, 이것은 도시의 땅값이 농촌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과 도시 집중화에 따른 형질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sup>40)</sup>

1962년도 말 현재 서울의 농가호수는 20,391호로서 총 가구수 55만 4,136호의 3.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12만 2,349명으로 서울시 총인구 298만 5,324명에 대해 4.0%를 점하고 있다. 한편 1966년도 말 현재 서울의 농가호수는 17,583호로 총가구수 72만 4,043호의 2.4%이며, 농가인구수도 총인구 380만 5,261명에 10만 8,023명으로서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농업이 타 업종에 비해 급격히 쇠퇴되는 현상을 보여준다.<sup>41)</sup>

1970년대 이후는 산업발전에 국가정책이 우선한 기간이기 때문에 점차 농경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역적인 발전, 예컨대 주택과 공장 등의 건립에 주력했기 때문에 점차 농경지가 사라지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은 동작구, 구로구 지역 등에서 심하게 일어났다.<sup>42)</sup>

### 3) 공업

광복직후 미군정시대의 남한공업은 전반적으로 혼란을 맞게된다. 자본·기술·원자재 부족과 남북한 경제의 분단 등으로 생산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서울의 공업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광복 직후 전반적으로 실물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회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서울이 그 증가 추세를 주도했다. 광복직후 서울은 공장수에 있어서도 남한 공업의 중심적 거점으로 위치해 있었다. 1946년 11월 현재 남한의 5,210개 사업장 중에서 각 시도별 소재지 비율을 보면 서울이 21.6%로 수위이고, 부산을 포함한 경남이 19.8%로 2위였으며, 그리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이 15.0%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市 단위로 비교한다면, 서울에 남한 전체 공장의 1/5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여타 시도의 집중률은 이보다 훨씬 뒤쳐지는 셈이 된다. 업종별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 볼 경우에도 서울은 기타공업의 51.9%, 인쇄제책업의 33.0%, 기계기구공업의 31.7%, 금속공업의 29.7%, 화학공업의 27.6%를 차지하여 해당업종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방직업의 경우에도 대구의 24.2%에 이어 22.4%로 두 번째로 높은 공장수 비율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은 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3)</sup>

4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83, 367-8쪽.

41) 상계서, 429쪽.

4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동작구지』, 성광문예, 1994, 240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구로구지』,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7, 227쪽.

1948년 건국이후 서울의 공업을 보면, 섬유공업은 영등포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자재 도입 등에 따라 비교적 빨리 복구되었으나, 다른 업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다만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필수품이 부족하여, 이를 생산하는 영세공장들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정부수립후 산업의 각 분야에서 발전적 추세를 보이던 한국경제는 전란으로 발전이 저지되고 다시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은 두 차례나 공산군에게 점령되었고 수복 때는 심한 시가전을 전개했으므로 피해가 격심했다. 서울시의 생산공장 피해상황은 전쟁전 1,481개였던 공장수가 1953년 말 296개에 불과하여, 공장의 파괴비율은 80%에 달하고 있다.<sup>44)</sup>

1953년 휴전이후 한국경제재건은 외국원조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의 생산시설도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전쟁직후 296개에 불과하던 공장수가 1955년에 들어와서 1,406개소로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도 1954년 3월의 30,477명에서 1955년 44,32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59년에 공장수는 2,235개소가 되었고, 종업원수도 85,809명으로 늘어났다. 휴전이후 서울의 공업은 상당한 발전을 보였다.<sup>45)</sup>

1961년에 집권한 군사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우선「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을 제정·공포하여 경영관리체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수반하여 중소기업은행을 발족시켜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등 그 육성을 위한 시책을 폈다. 이리하여 서울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자금을 배정 받아 침체되어 있던 중소기업계의 경기를 회복시켰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융자금을 지원하였다. 또 우량공산품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애용하도록 하였고 油類需給을 조성 배정하였다.

서울지역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서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소기업은 영세성 등으로 인해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기술문제 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은 주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요인 타개에 집중되었다. 1990년도 이후 자금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다. 1963년부터 1992년까지 25년간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283억원 불과하였으나, 1993년 783억원, 1994년 603억원, 1995년 931억원 등 3년간 2,317억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난 25년간 지원액의 8배에 달하였다.<sup>46)</sup>

그러나 이와 같은 공업 지도육성 시책도 서울에의 인구집중이 심해짐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비공업 지역내에서의 공장의 신·증설 억제와 함께 공업지역내의 공해배출업체의 지방이전 시책이 강구되었다. 그 전 단계로

43) 공제욱 외, 『1950년대 서울의 자본가』, 서울학연구소, 1998, 38쪽.

44)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2年版, 117쪽(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96, 356쪽에서 재인용).

45)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各年度版(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96, 361쪽에서 재인용).

4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총서(1)·서울행정사』, 1997, 902쪽.

1979년 1월 11일자로 공업배치법이 발효되면서 공장의 신설은 일체 금지되고 공업 지역내 기존공장에 한하여 증설을 허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시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시 관내에서의 이전을 금지하고 수도권 외곽에 정부에서 조성한 반월공업단지로의 이전을 1978년부터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제조업체수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도시형 공장의 증가세가 더 강함에 따라 전체 공장 수에서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즉 공장수의 경우 1971년의 3,079개에서 1979년에는 8,246개로, 종업원 수는 1971년의 24만 4,711명에서 1979년에는 49만 9,516명으로 306.5%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서울시는 공장 신설과 공업단지 조성을 계속 금지하며, 비공업지역에 있는 비도시형공장의 서울시역 외로 이전을 유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서울시는 제1단계로 비공업지역내의 비도시형공장을 우선으로 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도시형 공장을 포함 모두 699개의 공장을 인천의 南東工團으로 이전하였고, 제2단계로 비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 2,419개소의 경기도 始華工團으로의 이전작업에 착수하였다.

#### 4) 상업

광복후 미군정시기의 상업은 활발한 편이었다. 미군정기간에 동구시장을 비롯한 10개 사설시장이 증설되어, 1948년 말 현재 서울의 시장수는 사설시장 19개소와 공설시장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31개소에 달하였다. 또 새로 세워진 시장은 점포수가 많아 시장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였다. 국내생산이 미미했음에도 상업이 성행한 것은 구호물자의 도입과 대일본, 대중국과의 私무역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인 공장 및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자가 일시에 시장에 범람하였고, 귀국하려는 일본인들이 대량으로 가재를 방매하였기 때문이다.<sup>47)</sup>

6·25전쟁으로 인한 상업의 피해상황도 컸다. 우선 큰 시장피해는 12개소에 달했다. 즉 10개의 사설시장과 2개의 공설시장이 파괴되었다.<sup>48)</sup> 서울의 시장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시설노후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1955년도에 들어와 전재를 입은 시장과 시설이 노후한 시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복구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4년 시장수 28개소가 1958년 말에 38개로 늘어나고 월평균매매액도 50.7배 이상 늘어났다.<sup>49)</sup>

1960년에 들어서는 점차 국내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업활동도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추세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1962년도 말 서울에는 1개의 중앙도매시장과 72개의 시장이 있었으며 12,073개의 점포가 있었다. 그리고 일용품시장이 65개로

4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95, 348-9쪽.

48)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1952年版, 14-1167쪽(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96, 356쪽에서 재인용).

49) 서울特別市, 『市勢一覽』, 各年度版(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96, 362쪽에서 재인용).

점포수가 11,444개, 백화점 7개에 점포수가 1,246개가 있었다. 그리하여 1962년도 말 현재 서울시내 총 점포 수는 30,970개소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법인이 754개, 개인이 30,216개였다. 바로 전년도인 1961년과 비교해 보면 시장 수는 28개가 증가했고 점포 수는 4,694개가 늘어났다. 그리고 5년 후인 1966년도 말 현재 서울의 시장 수는 1962년보다 22개가 증가하였고, 점포 수도 2,861개가 늘어났다. 한편 백화점 실태를 보면 기존의 7개 백화점 외에 새로이 1962년 종로백화점,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천일백화점, 미우만백화점 등 5개가 개설 허가되었다. 1962년도 말 현재 백화점 점포 수는 1,297개이며 종업원 수는 2,449명이었다.<sup>50)</sup>

오늘날 서울은 한국 상업의 중심지이다. 전국에서 곡식·채소 등의 농산물, 생선·건어물 등의 수산물,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서울로 모여들고 또 전국의 곳곳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모든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따라서 큰 시장이 곳곳에 많이 생겨났다.

재래시장 외에 이제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농수산 시장이 세워졌고, 전자 제품만 취급하는 전자상가 단지가 들어섰다.<sup>51)</sup> 서울에는 크고 작은 시장들이 그 수효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다. 1998년 현재 서울의 시장분포를 보면 총 446개소로서, 그 중 일반시장 392개소, 백화점 29개소, 쇼핑센터 11개소, 대형점 11개소, 도매센터 3개소 등이 있다.<sup>52)</sup>

## 5) 금융·서비스업

### ① 금융업

광복 이후 한국의 금융은 일제가 벌여놓은 취약한 경제구조와 국토분단에 의해 정상적인 금융권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일제가 물러나면서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회사 발행의 株式 및 社債, 상환불능의 대출, 그리고 퇴거 일본인이 발행한 화폐의 급증에 의해 우리의 경제권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거기에서 계속되는 예금인출로 인해 금융기관은 자금난에 봉착하여, 일반은행은 비상시 대출금을 조선은행에서 용자를 받았으며 정부국고금의 分與를 訴請하여 1946년부터 분여조치가 실시되기도 했다.<sup>53)</sup>

1945년과 1946년을 전후하여 일부 無盡 및 신탁회사가 일반은행으로 승격되었고, 은행점포의 정리, 외환·무역업무를 담당할 換金銀行의 설립 등과 같은 부분적인 금융제도의 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일반은행은 1950년 4월과 6월에 이르는 기간 중 그 명칭을 변경하여 조선상업은행은 한국상업은행으로, 조선신탁은행은 한국

5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1996, 437쪽, 440쪽.

51) 신상훈, 『위례성에서 서울까지』, 계명사, 1994, 94쪽.

52) 서울특별시편, 『제39회 서울통계연보』, 1999, 212-213쪽.

53) 分與措置란 정부의 국고예금을 일반은행에 분산 예치토록한 조치로 1947년 7월 조선은행에 재집중시킬 때 까지 국고금은 각 금융기관에 分掌되어 있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95, 428쪽).

신탁은행으로, 조선저축은행은 한국저축은행으로, 그리고 조선상호은행은 상호은행으로, 그후 다시 한국상공은행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이들 일반은행들은 모두 그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었다.

광복직후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가 제대로 형성되기 이전에 나타난 금융업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가가 없는 업자들의 금융거래인 私設無盡, 契, 高利貸金業 등이 크게 성행한 점이다. 이는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 사설무진은 고리대금업자보다 금리가 저렴하였고, 계는 개인적인 신뢰감으로 조직화가 쉬웠고, 고리대금업은 광복이전부터 은행 다음가는 신용공여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사설무진은 6.25전쟁의 발발로 사라지고 그 대신 전쟁이후로는 사설 계가 크게 번창하였다. 1954년 한국은행의 추산에 의하면 계의 전국의 계약고누계액은 1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당시의 전 금융기관의 예금액이 166억원, 대출금이 18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계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sup>54)</sup>

광복후 수년간 금융관련 법규는 일제시대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금융기관도 단기상업금융기관으로 동질화되었으며, 중앙은행인 조선은행도 신용통제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50년 5월 ‘韓國銀行法’과 ‘韓國銀行 設立에 關한 件’이 제정 공포되어 비로소 금융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골자로 한 한국적 금융권의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해 다시 예금의 인출사태 등의 금융권 악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금지불을 제한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 동안에 북한의 인민권 통용과 미발행 조선은행권의 남발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혼란은 통제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유엔군에게 거액의 화폐를 대여했기 때문에 통화의 팽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휴전이후 경제원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금 및 원조자금의 취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설립이 요청되자 1953년 12월 韓國産業銀行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산업은행이 정부의 단독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으로 서울에 설립되며, 국가의 장기개발은행으로서 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발전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산업은행은 1954년 4월 舊 殖産銀行을 모체로 하여 공식 발족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자금 등을 장기 시설자금으로 기업에 대출함으로써 전재복구와 산업재건에 이바지하였다.

1962년 말 현재 서울에는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서울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국책은행이 있었다.

이들 은행 중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금융기관의 1962년도 말 현재 각종 예금잔액은 206억 9,100만원이고 총대출액은 194억 8,600만원이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더불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54) 상계서, 430-431쪽.



시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자 예금액이나 대출액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보면 1966년도 말 현재 상기 은행의 예금잔액은 778억 8,800만원(376%)으로서 1962년에 비하여 무려 57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출금도 382억 2,100만원이 늘어난 577억 700만원이 되었다(296%).<sup>55)</sup>

1998년 현재 한국에는 한국은행,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 16개,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 4개, 기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외국은행 등 2,446개의 은행점포가 있다.<sup>56)</sup>

이 외에 증권시장의 활동도 주목되는데, 한국의 증권거래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6년 2월 한국에서 朝鮮證券取引所에 의해 大韓證券去來所가 설립되어 1956년 3월 3일 개장하였는데, 舊法에 의거해 편법적인 營團制組織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5.16이전까지 상장회사를 위한 자금의 공급이 아니라 증권회사들이 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투기장의 경향이 농후했다. 대표적인 예가 1958년 1.16國債波動과 1959년의 大證券騷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증권시장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체제정비 등의 개선책은 1962년 이후에나 이루어지게 되었다.<sup>57)</sup>

대한증권거래소는 1962년 4월 1일 증권거래법의 실시에 의해 주식회사제로 바뀌었다. 그러자 과당투기와 대주주의 영향력과 압력의 증대로 증권거래소의 공신력을 위협하여, 1963년 5월 8일 주식회사제 대한증권거래소를 해체하고 특수법인체이고 공영제 비영리 조직인 한국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1971년 1월 다우존스방식에 의한 종합주가지수(KOSPI)를 산출하여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1979년 7월에는 증권거래소가 명동에서 여의도 신축건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79년 9월에 국제증권거래소연맹(FFBV)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83년 1월 새로운 종합주가지수(KOSPI지수; 시가총액식; 1998. 1. 14.=100)를 산출해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1983년 2월에는 증권공공온라인시스템(전산주문전달시스템)을 가동했다. 1988년 3월에는 민영화하여 회원제조직으로 개편하고, 같은 해 3월 3일에 전산매매시스템(SMAIS)을 도입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1년 6월 14일 외국증권사의 거래소회원 가입을 허용했고, 1994년 7월에는 채권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국내개인투자자가 해외로 증권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이듬 해 1996년 5월에는 외국기업의 주식 즉석발행 및 상장이 허용되게 되었고, 또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였다. 1997년 9월에는 매매시스템의 완전한 전산화를 이루었으며, 또 같은 해 12월에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55%로 확대하고 채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한도를 철폐하였다. 1988년 5월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완전히 철폐하여 외국인투자유치의 장벽을 제거하였으며, 1998년 12월 7일부터 토요일 휴장제를 실시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회원제조직으로 2000년 5월

5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 1996, 440쪽.

56) 서울특별시편, 『제39회 서울통계연보』, 1999, 214-215쪽.

5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5권, 1983, 442쪽.

기준 정회원 31개사, 특별회원 14개사를 가입시키고 있으면서 주식, 채권, 주가선물, 주가지수옵션 등의 유가증권매매거래 시장을 운영하면서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의 원활을 위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 ②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라 함은 '생산 활동의 결과가 물질적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유형의 물질이 아닌 용역을 창출하여 경제의 한 부문을 이루는 서비스업은 경제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그 비중이 커지게 된다. 서비스업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생산자서비스와 가계 소비의 영역인 소비자서비스 산업이다.

서울에서는 80년대 이후 생산자서비스(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등)가 크게 성장하였다. 그 성장원인은 빠른 기술발전의 적응, 기업 내 서비스의 외부화경향 증대, 기업조직의 변화 및 제품의 혁신과 시장차별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성장요인들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및 산업부문별로 비교해 보면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전국의 생산자서비스는 다른 산업부문보다 빠른 성장을 했으며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여가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전국에서 전산업에 대한 성장률은 전국보다 낮으나 생산자서비스 부분에서는 점차 점유비를 높여가고 있다.<sup>58)</sup> 서울에의 집중률이 높은 것은 생산자서비스의 대도시 지향적 입지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산자서비스의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의 공간적 집적과 관련된다.

서울시의 생산자서비스의 성장과 변화를 보면 생산자서비스는 1981년부터 1994년 사이에 업체수가 6.4%에서 8.0%로 점유비를 높여가고 있으며, 1981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4년에 2.27배로 성장하여 전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을 포함하는 사업자 서비스 부문이 탁월하게 높게 나타난다. 사업서비스 중에서도 조사정보관련 서비스가 가장 높다.

정보창출 서비스의 성장을 살펴보면, 1986년과 1995년 사이에 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양자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정보창출산업은 후기산업사회의 전형적 지적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성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이러한 산업의 대도시 집중과 도시 내 특정지역에의 집적도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sup>59)</sup>

소비자서비스의 대표적인 것이 음식업(식당, 주점, 다과점),숙박업,유기장업, 문화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산업은 대중의 소비 수준의 향상 정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점차 현대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의 경우 음식,숙박업은 1980년 중반 이후 판매액과 사업장 면적이 131%,

58) 조순철,「서울시 생산자서비스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47-8쪽.

59) 서울학연구소,「서울학연구」제11호, 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255쪽.

266%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상승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매장 면적도 대형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음식·숙박업의 입지 조건도 소득별, 학력별 혹은 직업 계층에 따라 차별화 하여 공간적 분절화가 현재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전체 근로자 가구의 소비 지출 변화의 추이를 보면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외식 비용의 증가 추세이다. 외식 비용은 1981년 서울 근로자의 소지 지출 가운데 2.1%를 차지하던 것이 1990년에 들어서 6.7%로 상승하였다. 약 10년 사이에 대중음식점이 약 390%라는 증가폭을 보인 것은 이러한 소비 성향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sup>60)</sup>

숙박업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도심이 사업체수, 종업원 수, 판매액 등은 줄었으나 매장 면적에 있어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형화된 숙박업체가 늘어난 반면 소규모 영세업체는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83년 이후 미용업은 이용업에 비해 배 이상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가구별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직업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확대와 지위의 향상에 기인한 것이다. 목욕탕업, 당구장·전자 유키장업은 1980년대 후반 증가 추세를 보다가 최근 다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개인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종사원도 늘어나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서울시의 산업 재구조화 즉 '탈산업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른바 제3차 산업 부문인 서비스업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중화되어 있는 논의인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업종을 기피하는 노동 풍조로 인해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 고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60)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구로구지』,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7, 285쪽.

# 美軍政期 教育財政의 實態

이 길 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 서 론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은 해방 공간에서 피점령민족인 한국인들과 점령자인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의식이었다. 이러한 공통 인식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타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은 갈등 없이 제도적 개혁들이 미군정과 한국인 교육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를 반영하여 당시 여론 동향에 있어서도 교육 개혁에 대한 한국인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sup>1)</sup> 그러나 의식 전환이나 제도 개혁만으로 교육 기회의 실질적 확장이나 교육 수준의 향상을 성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군정 전 기간을 통해서 교육 발전을 저해한 교육 내적 요소 세가지를 지적하자면 교원 부족, 교재 부족, 교육시설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이 세가지는 모두 교육재정<sup>2)</sup>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학교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이념이나 제도 못지않게 교육재정에 의해 상당히 좌우된다고 볼 때 미군정 하에서의 교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재정은 매우 핵심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훌륭한 교육재정 제도나 풍부한 교육재정이 최고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합한 재정제도가 학교 교육에 해악이 됨은 자명하다.

미군정기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각종 『年鑑』이나 『年報』등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자료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른바 ‘윌리엄 해예스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 캘리포니아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었던 윌리엄 해예스(William Hayes)는 1948년 2월 18일에 미국 육군장관 특별 고문에 임명되었고, 미군정 교육재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한국 문제 전문가 및 교육재정 분야의 권위자들과 사전 준비 모임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였다. 1948년 봄에 이루어진 약 2개월간의 한국방문 기간 동안에 해예스 교수는 한국내의 교육, 재정, 경제 분야 한국인 및 미군정 요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공식적인 회의와 관련 기관 방문, 그리고 각종 보고서 및 문서 열람등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을 중심으로 최종 보고서 “한국교육에 대한 재정지원(The Financial Support of Korean Education)”<sup>3)</sup>을 작성하여 1948년 5월에 육군장관, 민사

1) 이 길상(1998. 9), 「해방전후의 여론과 교육」 『정신문화연구』 제21권, 제3호.

2) 교육재정이라함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관리, 지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편(1998), 『교육학대백과사전』1, 744.

3) The Financial Support of Korean Education. Prepared by William Hayes, Special Consultant to the Secretary of the Army. May, 1948. 이길상, 『해방전후사자료집 II』

국장(Chief, Civil Affairs Division),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등에게 제출하였다. 비록 해에스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48년 3월에서 5월까지이지만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미군정기 전반의 교육재정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관한 이해를 하는 데 필요한 많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고는 『朝鮮經濟年鑑』 『朝鮮年鑑』 『朝鮮經濟統計要覽』 『朝鮮解放年報』 『經濟年鑑』 등에 수록된 당시의 일반 재정과 관련된 통계자료들, 신문기사, 그리고 해에스보고서 내용을 참고로 하여 미군정기의 교육재정 문제를 집중 검토함으로써 미군정기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 2. 미군정의 재정정책과 교육

### 1) 미군정의 화폐금융정책과 교육

해방 직후 남한 경제를 어렵게 만든 양대 요인은 전반적인 생산활동의 위축과 격심한 인플레이션이었다. 생산활동의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는 국가 세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교육재원의 축소를 가져왔고, 이른바 ‘해방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리는 물가수준의 급격한 상승은 교육 담당자인 교사계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동시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었다.

아래 <표1>에 나타나 있듯이 물가는 1945년 8월 해방 이후 급속히 폭등하여 1945년 말에는 10년전인 1936년 물가의 무려 28배, 1944년의 12배에 이르렀다. 다시 1946년의 물가는 1936년의 221배, 그리고 해방 당시 물가의 12배 수준으로 폭등하였다. 1947년의 물가는 1936년 물가의 402배, 해방 당시 물가의 23배 수준으로 이미 국민 경제 전체를 파탄시킬만한 위험 상태에 다다라 있었다.<sup>4)</sup> 이러한 물가 폭등은 미군정기 3년간 지속되었으며, 경제불안의 일차적 요인인 동시에 사회불안의 기폭제가 되었다.

<표1> 해방전후 물가지수

년 도	1936 = 100	1945. 8 = 100
1944	241	-
1945	2,817	160
1946	22,100	1,255
1947	40,200	2,283
1948	65,500	3,720

출처 : 金榮圭(1992), 「美軍政의 金融通貨政策」, 유광호외.  
『美軍政時代의 經濟政策』,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58에서 재인용.

483-556. 이하에서는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으로 표기한다.

4) 金榮圭(1992), 「美軍政의 金融通貨政策」, 俞光浩외, 『美軍政時代의 經濟政策』,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162.

미군정기 물가의 상승은 통화증발에 그 일차적 원인이 있었으며, 통화 증발을 가져 온 것은 미군정청이 통치력의 확립을 위해 필요로 하였던 군주둔비나 치안유지비,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매용 자금수요등에 있었다.<sup>5)</sup> 미군정 출범이후 통화 발행고의 연 증가율을 살펴보면 1945년 말은 179.4%, 1946년 말은 102.1%, 그리고 1947년 말은 88.5%씩 각각 증가하여 연평균 123.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모든 산업분야의 생산력 저하, 양곡등 생활필수품의 절대적 부족, 급격한 인구의 증가, 일제하에서 억압되었던 잠재수요의 폭발적 현재화, 경제적 혼란을 틈탄 매점매석 행위 등 제요인들이 상승 작용을 하여 물가상승을 악화시켰다.<sup>6)</sup> 미군정은 이러한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후 긴급원조 조치를 취하였다. GARIOA(Government Relief in Occupied Areas)와 OFLC(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주관의 원조를 통하여 미군정 기간 동안 남한에 총 434,322천불에 해당하는 구호물자가 도입되었으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sup>7)</sup>

한마디로 말해서 미군정의 금융통화정책은 민생문제 해결을 통한 미군정의 통치권 확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생산의 제고와 실업의 해소로 남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부흥시키는 데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sup>8)</sup> 그 결과로 초래된 물가의 폭등 현상으로 교육환경은 계속 악화되었고, 교사들의 이직율은 점차 확대되어 교육공급이 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예컨대 1946년에 비해 1948년의 물가는 세배이상 폭등하였으나 문교비는 비록 증가는 하였으나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며, 반면 학생들의 수업료는 10배 정도가 인상됨으로써 교육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당시 신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세계대전 후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는 인플레이의 선풍은 마침내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게 되어 각종의 아픔답지 못한 사례를 빚어내어 인생 문제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거니와 국가재정의 근본이 되는 세금의 납부 성적이 겨우 5할에 달하는 것과 시내 각 공립중학교 재학생들의 수업료 체납이 늘어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민하는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sup>9)</sup>

## 2) 미군정의 예산정책과 교육

미군정의 출범과 함께 道會, 府會, 邑會, 面協議會 및 각 郡.島에 설치되었던 學校 評議會가「地方議會解散」조치<sup>10)</sup>에 의해 폐지되고, 이어 지방행정을 관장하던 지방행

5) 군주둔비, 치안유지비, 농산물수매용 자금수요를 위하여 발행한 통화량이 미군정 3년간 총동화발행고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앞책, 223.

6) 같은 책, 166.

7) 같은 책, 210-212.

8) 같은 책, 222-223.

9) 東亞日報, 1946년 10월 20일자.

10) 軍政法令 第60號, 「地方會」, 1946. 3. 14., 原主文化社(1991), 『美軍政廳官報』 Vol. 1, 234.

정처가 폐지<sup>11)</sup>됨으로써 교육재정을 제외한 모든 국가 재정은 재무부에서 일괄 관장하게 되었다. 즉, 지방행정처에서 관장하던 도청 및 하급관청의 조세, 예산, 기금 등의 감독은 재무부로 이관하였고, 학교평의회에서 관장하던 학교보조금, 장려금, 기금, 예산, 경비의 감독은 문교부로 이관하였다.<sup>12)</sup>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각 부처장이 제출한「豫定經費要求書」를 바탕으로, 중앙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Board)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무부장이 편성하였고, 군정장관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군정하에서의 예산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였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945년 10월 1일부터 1946년 3월 31일까지를 하나의 회계연도로 하는 임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군정 3년간의 세출, 세입, 그리고 재정적자 규모를 예산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미군정하의 세입·세출 비교(예산액)

(단위:백만원, %)

연도	1945	1946	1947	1948
구분	(1945.10 ~ 1946.3)	(1946.4 ~ 1947.3)	(1947.4 ~ 1948.3)	(1948.4 ~ 1949.3)
세 출	1,177	11,800	19,445	35,119
세 입	328	8,013	15,435	25,558
재 정 적 자	849	3,787	4,010	9,561
재정적자비율	72.1	32.1	20.6	27.2

출처 : 朝鮮銀行經濟部, 『朝鮮經濟年鑑』, 1949, IV ~ 130.

군정 초기 6개월간의 예산 상황을 보면 세출 11억 7천여만원에 세입 3억 2천여만원으로 8억 4천여만원의 적자예산이었다. 군정 3년간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1948년 예산은 46년 예산의 거의 3배에 달하였으며 재정 적자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상의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물가 수준이 계속 폭등하였다<sup>13)</sup>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규모는 오히려 군정 후반으로 오면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군정하에서의 세출내역을 총예산과 문교예산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당시 예산 지출의 특징으로는 官業費로 분류되는 재무부, 운수부 및 체신부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치안비가 중요함을 차지하였던 반면에, 산업 진흥과 직접 관련된 상무부와 농무부의 지출은 매우 낮았다. 이는 당시 미군정이 한국경제의 재건에는 큰 관심이 없었으며 단지 치안의 유지등을 통한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주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sup>14)</sup>

11) 軍政法令 第74號, 「地方行政處의 廢止」, 1946. 4. 27, 『美軍政廳官報』 Vol. 1, 286.

12) 법령제74호의 제2조(직무와 직능의 이관).

13) <표1>에 나타난 것처럼 1945년 8월을 100으로 했을 때 1945년 12월은 160, 1946년 12월은 1,255, 1947년 12월은 2,283, 그리고 1948년 12월에는 3,720으로 20배이상 물가가 급등하였다.

<표3> 미군정하의 세출 상황

(단위 : 백만원, %)

	예 산 기 준								결 산 기 준							
	1945후반		1946		1947		1948		1945후반		1946		1947		194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세출	1,580	100.0	11,800	100.0	19,445	100.0	35,119	100.0	1,868	100.0	13,365	100.0	19,235	100.0	15,263	100.0
문교비	42	2.6	387	3.3	1,660	8.5	1,761	5.0	46	2.5	1,021	7.6	1,660	8.6	780	5.1

자료 :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8년판, 1949년판.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949년판.

編者未詳, 『朝鮮經濟統計要覽』 1949년.

經濟評論社(1981), 『韓國經濟百年史』

미군정의 중앙 재정제도는 日帝의 것을 거의 답습하였으나, 지방 재정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교육부문의 변화가 분명하였다. 일제하에서의 지방재정으로는 각 道, 府, 邑, 面의 재정, 일본인 교육행정을 주관하는 學校組合, 조선인 교육행정을 주관하는 學校費財政 등이 있었다. 일본인 교육과 조선인 교육의 재정이 별개로 구별되어 있었던 것은 일본인이 의무교육 제도였음에 반하여 조선인은 의무교육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sup>15)</sup>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미군정의 출범으로 당연히 해소되었다.

문교부 예산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점차 증대하였고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년차적으로 증대하였다. 예산 규모에서 볼 때 1946년에 비해 1948년의 문교예산은 4.3배 증대되었고,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45년의 2.6%에서 1947년의 8.5%, 그리고 1948년에는 5.0%로 확대되었다. 1946년의 경우에 문교부 예산은 비록 전체 예산의 3.3%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지방행정처(46년 4월 27일에 財務部 司計局第四課로 統合) 예산 18억원 중 6억원 가량이 지방교육재정에 충당되는 것으로 문교부에 이관되었으므로 실제 문교부 예산은 약10억원 정도로서 총예산의 거의 10%에 육박하였다<sup>16)</sup>. 이러한 교육예산의 급격한 증대는 1946학년도의 경우 의무교육제의 도입, 그리고 1947학년도의 경우 국립서울대학교 지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sup>17)</sup>

일제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정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예산의 상대적 비중이 어떠한가? 일제하에서의 교육예산 규모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4>에 나타난 바와 같다.<sup>18)</sup>

14) 崔 洸(1992), 『美軍政의 財政政策』, 유광호외, 앞책, 246-247.

15)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7, 50-52.

16) 당시 북조선의 경우에도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9%수준으로서 政務費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 朝鮮通信社, 『朝鮮年鑑』 1947, 52. 民主主義民族戰線, 『朝鮮解放年報』 1946, 280.

17)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율과 관련하여 Hayes Report는 1946-1947회계년도에 교육예산 총액이 1,509,875,044원으로 전체예산의 25.8%였고, 1947-1948회계년도 교육예산 총액은 1,660,242,480원으로 전체 예산의 10.7%였다고 분석함으로써 국내 자료와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8)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의 재정 통계는 자료마다 불일치가 매우 심하여 정확한 파악이 어렵



&lt;표4&gt; 일제하의 교육재정 상황

(단위 : 백만원,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세출 총액	425	528	708	856	1,061	1,125	1,672	2,442
문교비(비율)	15(3.5)	17(3.2)	20(2.8)	28(3.3)	29(2.6)	30(2.7)	48(2.9)	77(3.1)
교육보조금총액(비율)	42(9.9)	50(9.5)	60(8.5)	72(8.4)	85(8.0)	104(9.2)	104(6.2)	-

자료 : 세출총액 및 문교비는 『施政三十年史』, 518. 日本 大藏省대, 『昭和財政史』 V-16.

徐贊洙(1982), 「日帝下 韓國의 殖民地 財政에 關한 研究」, 嶺南大, 50에서 재인용.

崔 洸(1992), 「美軍政의 財政政策」, 유광호, 앞책, 248에서 재재인용.

교육보조금총액은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 537.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 후반기의 교육예산 총액은 대체로 전체 세출예산의 9%내외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정부 세출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교육부문 예산의 비율은 일제시대와 미군정 시대에 큰 차이가 없이 대체로 9-10%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미군정의 조세정책과 교육

미군정은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로 일제하의 稅制 및 稅政을 그대로 존속시켰다.<sup>19)</sup> 이후 국세체계는 여러 차례에 거쳐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으나 대체로 일제 시대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었다. 미군정은 과세범위 및 세율의 조정을 통한 세수 증대, 應能原則의 적용을 통한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세원 포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직접세중에서는 소득세, 간접세중에서는 주세나 유흥음식점세, 입장세, 지세(地稅), 임시이득세 등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국세수입은 1945~1948년 사이에 년 거의 2배씩 증가하였다.<sup>20)</sup> 군정 행정의 정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하였으나 중앙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국가 수입의 70% 전후는 전매사업으로부터 나왔다. 전매수입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3월 31일까지 남한 예산 4,207,777,563,56엔 중에서 2,920,150,746.12엔, 즉 전체예산의 69.4%를 차지하였다.<sup>21)</sup>

지방세 제도의 경우 미군정 기간동안 총 6차례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전체

다. 수입이나 세출의 경우에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예산의 경우에도 추가예산(요즘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대체로 불분명하다. 교육관계 예산의 경우에는 더욱 해석이 어렵다. 순수하게 문교부예산만 계산할 때와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할 때는 매우 큰 차이가 있게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19) 軍政廳法令 제21호, 「法律의 存續」 『美軍政廳官報』 Vol. 1, 142.

20) 崔 洸(1992), 254-263.

21) Grant E. Meade(1951),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안종철 옮김, 『주한미군정 연구』 (1993), 서울: 도서출판공동체, 186.

적인 골격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의 것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교육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지방세법 개정은 제5차와 6차였다. 1948년 6월 군정법령 제202호에 의해 市. 郡. 面에서 부과하는 地稅附加稅를 개정하면서 市. 郡. 面에서 징수한 지세의 90%를 學校費에 충당하도록 하였으나<sup>22)</sup> 미군정의 종료로 인해 당시 교육재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미군정 종료직전인 1948년 8월에 이루어진 제6차 개정은 教育區를 설치하고 각 교육구내에 教育區會를 설치하여 당해 구역내에 있는 공립학교의 운영과 재산관리를 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이 제도 또한 미군정의 종료와 정부 수립으로 실제로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국세수입으로부터 나오는 중앙정부보조금 이외에 미군정기에는 지방세로서 학교세(School Tax)를 부과하였다. 학교세는 道稅였던 戶別稅(Household Income Tax)에 부가하여 징수한 호별세부가세 중 일부로서 거둬들였다. 호별세부가세는 府. 郡. 面세였으며 수입액중 30/52을 학교세로 분류하여 지방교육 재정에 충당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3. 미군정기 교육재정의 실태

#### 1) 중앙집권화의 문제점

미군정 초기에는 지방군사정부 단위에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재정과 재정제도는 오히려 엄격한 중앙집권화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sup>23)</sup> 일제하에서 지방정부는 일상적으로 예산의 30% 이상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였으나 해방 직후의 황폐화된 경제로 인해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훨씬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적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미군정은 중앙집권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sup>24)</sup>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행정측면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한 듯하였으나 적어도 교육재정제도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에 비해 볼 때 중앙집중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중앙집권 현상은 우선 제도적 변화로 나타났다. 미군정의 출범과 함께 道會, 府會, 郡會, 面協議會 및 각 郡. 島에 설치되었던 學校評議會가 폐지되었고, 지방행정을 관장하던 지방행정처도 폐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는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군정 초기의 교육재정 운영도 군정청 학무국에 집중되었다. 학무국 총무과(Office of Administration, 45년 9월 12일에 Office of Business Management로 출발) 내의 예산회계계(Budgets and Accounts section)에서 국가 교육재정을 총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예산의 편성과 통제, 회계, 그리고 기록 정리 (2) 학무국의 잡비 관리 및 회계 (3) 초등학교

22) 南朝鮮過渡政府 法令 제202호, 「地稅令等の改正」, 제6조(지세의 배부)에 의해 각부, 읍, 또는 면에서 징수한 국세인 지세의 9할은 학교의 인정된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美軍政廳官報』 Vol. 1, 398.

23) 같은 책, 184.

24) 같은 책, 같은 쪽.

공제조합 기금의 관리(일제 시대 유산) (4) 지방 정부에 대한 중등교육 기금의 배정 (5) 재정에 관한 모든 통신이나 서한의 준비 (6) 학무국내의 타 부서 혹은 지원 기관에 대한 현금출납 등을 맡고 있었다.<sup>25)</sup> 군정 출범 초기에는 불과 다섯명의 한국인 회계 직원이 국가의 모든 교육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제하에서는 각 군에 군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비협회(School Budget Association)가 있었고 이 협회는 각면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는 학교평의회(council)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의회의 의장은 군수였다. 미군정과 함께 이 두 단체는 폐지되고 모든 기능은 군수에게 모아졌다. 그리고 지방에는 미국의 교육위원회처럼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자치기구가 없었다.

이런 제도적 변화와 함께 실제로 교육재정 내용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미군정기에 들어서 더욱 높아졌다. 1937년의 경우에 국고보조금이 약 1,500만엔이었고, 지방재정중 학교비예산<sup>26)</sup>이 약 2,400만엔, 그리고 학교조합예산<sup>27)</sup>이 약 400만엔 정도였었다.<sup>28)</sup> 교육재정의 30%정도만이 국고로부터 보조되었던 셈이다. 1942년의 경우에도 국세에 의한 문교예산은 약 3,000만엔 정도로 세출예산 총액의 약 2.7%에 불과하였으나 학교비예산 약 6,000만엔과 학교조합예산 약 600만엔이 더해짐으로써 총교육보조금은 세출예산총액의 9%를 상회하였다. 역시 국세에 의한 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30%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43년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정부의 교육예산은 약 4,800만엔이었으나 학교비예산 약 7,200만엔과 학교조합예산 약 700만엔을 합할 경우 총교육관계 재정의 규모는 1억 2천 500만엔에 다다랐다.<sup>29)</sup>

총교육재정중 중앙정부 의존도는 미군정하에서 오히려 높아졌다. 1947-1948회계년도 교육예산중 국고보조금은 1,660,242,480으로서 지방세인 호별소득세에 부과되는 학교세로부터 총당되는 지방교육재원 516,264,116의 3배 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총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미군정하에서는 약 70%-75%정도로서 일제시대의 30%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교육재정의 면에서는 미군정의 주장이나 민주주의 교육의 일반 이념과는 달리 중앙집권 현상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미군정 후반기 교육 실태를 조사한 윌리엄 해에스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집권화된 교육 통제체제를 가능하면 조속히 일소”하고 지방분권화를 추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별로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였다.<sup>30)</sup> 해에스교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방의 군단위 교육행정조직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의 입법 조치를 권고하였다. 즉, 도를 여러개의 교육구(Educational District)로 나누고, 교육구마다 교육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교육위원회는 국가 정책의 테두리내에서 구체적 교육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구성

25)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26) 지방재정에서 총당되는 조선인을 위한 교육예산을 말한다.

27) 지방재정에서 별도로 총당되는 조선내 일본인만을 위한 별도교육재정이었다.

28) 『朝鮮年鑑』 1947년판, 50-51.

29) 같은 책, 같은 쪽.

30)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 547.

되는 교육위원회는 중앙정부나 학교장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해당 교육구에 속한 학교의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해에스교수의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이 반영된 것이 1948년 8월 12일자로 공포된 법령제216호 『教育區의 設立』과 법령제217호 『教育區會의 設置』, 그리고 법령제218호 『公立學校財政經理』 등이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sup>31)</sup>

## 2) 법정 교육재원의 부족

문교부에서는 47년 5월에 초중등학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한 적이 있다. 지방세로부터의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의 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등 세부 사항이 조사되었다고 하나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이 보고서는 1947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각도 학무국장 회의에 보고되었고, 결국 학교 재정 문제가 심각함을 인정하여 최종 건의서 속에 “면 단위에서 징수할 수 있는 새 교육세를 신설”하여 학교 재정난을 해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군정장관과 민정장관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이들은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육세를 신설하여 중등교육비에 충당하는 방안과 함께 읍면 단위에 성인교육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sup>32)</sup> 이런 건의 내용들은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를 신축하면서 面稅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물의를 빚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sup>33)</sup>

비록 양적인 측면에서 미군정 교육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증가하는 물가상승률, 세입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은 일제시대에 비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sup>34)</sup> 해에스보고서에 의하면 미군정기 교육재정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가의 교육재원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한다. 1946년도 당시 학교 하나 신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약 665만원 정도로 추정<sup>35)</sup>해 볼 때, 1946-1947회계년도 문교부 예산 총액은 전국에 학교 50여개 신설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다.

미군정기 교육재정은 크게 법정재정(legal finance)과 비법정재정(extra-legal finance)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 교육재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세인 戶別稅附加稅와 중앙정부보조금(National Subsidies)으로부터 충당되었다. 호별세(道稅)에 부가되는 府.畝.面稅인 호별세부가세의 30/52이 학교세(School Tax)로 분류되어 지방 교육재정에 사용되었다. 일제하에서 20/35이었던 것에 비해서 약간 비율이 높아진

31) 『美軍政廳官報』 Vol. 4, 459-479.

32) 東亞日報, 1947년 5월 21일자.

33) 東亞日報, 1947년 11월 29일자, Weekly Summary Week Ending, 31 May 1947, 이길상, 해방전후사자료집 II, 308.

34)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 536.

35) 1946-1947회계년도 교육 예산의 원안은 약 3억 6,500만원이었다. 그러나 2개 학교의 신설 계획으로 인해 1,300여만원이 많은 3억 7,8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당시 학교 하나 신설에 필요한 금액이 약 65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Summary of Activities for Week Ending 23 February 1946, 이길상, 『해방전후사자료집 II』 88.

것이다. 중앙정부보조금은 국가예산중 도나 지방 정부를 통해 지원되는 교육재정을 말한다. 지방 행정조직의 미비로 인해 미군정기 전반을 통해 전체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중앙정부보조금의 비율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 법정 교육재정의 세번째 형태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였다. 수업료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였으며, 초등, 중등, 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부과하였다. 당시 수업료 징수 방식 중 특이한 점은 해당 지역 거주자와 타 지방 출신자간에 수업료에 3배 전후한 큰 차등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946년 1월 7-8 양일 동안 군정청에서 열린 각도 학무과장과 사범학교장 회의에서는 수업료를 초등학교 2원 이내, 중등학교 20원, 전문학교는 30원 이내로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sup>36)</sup> 1년 후인 1947년 9월에 중등학교의 수업료는 서울의 경우 시내거주자는 50원, 시외 거주자는 150원(종래 100원)으로 인상되었다. 1948년 당시 수업료는 초등학교 월 10원으로부터 중등학교의 경우 월 250원에 이르는 등 1946년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인상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대학의 수업료는 학교에 따라 달랐으며 대체로 일제시대 말에 비해 50배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 부족의 일차적 원인은 역시 혼란한 사회적 여건하에서의 세원 포착이나 징세의 어려움에 있었다. 1947-1948 회계연도의 경우에 전체 소득가계중 약 60%만이 과세되었으며 과세된 호별소득세중 약 60%정도가 납부되었으며, 그중 30/52인 약 5억 1,600만원 정도가 교육재정에 충당되었다. 만일 80%정도가 납부되면 그 액은 6억 8,5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었고, 소득의 90%에 과세가 되고 80%정도를 징수하면 교육재원이 약 5억원 정도 추가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에스교수는 세무공무원의 신중한 선발, 회계절차 개선, 세무공무원의 책임의식 강화등에 의해 호별소득세 과세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해에스교수는 이와 함께 토지세율 인상을 통한 새로운 교육재원 마련을 건의하였다. 즉 토지세율을 인상하고 그 중 일부를 교육재원에 배분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13.2%인 토지세율을 17.2%로 높이고 징수한 토지세액을 교육구에 58%, 도에 21%, 그리고 각 지방(부, 읍, 면)에 21% 비율로 배분함으로써 교육재정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38)</sup> 토지세에서 발생하는 교육보조금은 각 도에서 관리하되 각 지방에 설치할 교육위원회에 등록학생 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도록 제안하였다. 해에스교수의 이러한 제안은 실제로 제4차 세법개정을 통해 입법화되었으나 군정의 종료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 밖에도 농산물에 대해 10% 이내의 세금을 부과하여 교육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안, 국가 예산의 10%를 매년 문교부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는 방안 등도 부족한 교육재원 확충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미군정기 전기간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었던 교육재원의 부족은 교사 처

36) 東亞日報, 1946년 1월 8일자.

37) 1948년 4월 1일부터 군정청 지시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는 면제되었다. Hayes Report, 535.

38) 당시 토지세 수입중 45.6%는 중앙정부에, 27.2%는 도에, 그리고 나머지 27.2%는 군에 배정되고 있었다.

우를 악화시킴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재원 부족의 결과로 야기된 교육시설의 부족은 교육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교육기회의 확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비법정 교육재정의 과다

법정 교육재정의 부족은 불가피하게 기부금, 특별부과금, 사친회, 기타 비법정 교육재원에의 의존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학교별, 지역별 차이의 심화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학교가 법정 재원보다는 비법정 재원에 의존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지역사회 전체 혹은 피교육자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몇몇 소수 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등교육 비용의 최소 1/3, 그리고 중등교육비용의 1/2 이상이 이러한 법률외적 재원에서 충당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5% 가까운 재정을 이러한 법률외적인 경로를 통해 마련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sup>39)</sup> 이러한 비법정 교육비의 과다 현상은 무상 보편교육 실현의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교육은 어차피 합법적이지 않은 재원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들은 은연중에 일본 사람들이 조장해 놓은 ‘학교교육은 오직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관념을 답습하고 있었다.

1947년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서울시 학무국에서는 신입생 아동에게 부당한 기부금을 요구함으로써 일부 학생들이 입학에 포기하는 폐단이 많음을 지적하고, 기부금이니 혹은 교육보조금이니 무슨 명목이던지 당국의 정당한 승인 없이는 기부금을 일체 폐지하도록 각 중등학교장에게 통첩을 발하였다.<sup>40)</sup> 문교부에서도 중등학교 입학에 둘러싼 기부금 강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통첩을 각도 학무국에 보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는 하나 정책과 현실은 매우 괴리되어 있었다. 1947년 7월 18일 문교부에서 지시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였다. 첫째, 기부금을 절대로 강요하지 말 것, 둘째,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 하여 입학에 절대 취소하는 일이 없을 것, 셋째, 중등학교후원회연합회에서 회비를 결정하면 그 결정 이상을 받지 말 것 등이었다.<sup>41)</sup> 실제로 당시 서울시내 대부분의 중등학교의 입학금은 수업료, 후원회비, 용지대, 학생회비 등이 4천원 정도였고, 이외에 책상값으로 3천원을 부과하여 총 7천원 정도를 징수하는 외에 기부금으로써 대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한다.<sup>42)</sup> 국민학교의 경우에도 금액의 차이만 있었을 뿐 유사한 형태의 기부금 강요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 즉 학교 당국자와 후원회가 솔선하여 최고 5천원, 최저 1천 6백원까지를 학교에 납입하여 달라는 통지서가 발송되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sup>43)</sup> 1948년에는 중등학교 입학에

39)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 536.

40) 東亞日報, 1947년 6월 13일자.

41) 漢城日報, 1947년 7월 19일자. 중등학교후원회연합회는 당시에 결성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문교부에서 조직을 추진중이었던 단체였다.

42) 東亞日報, 7월 18일자.

필요한 공식적·비공식적 경비가 적게는 1만 4천 5백원으로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sup>44)</sup>

근대 교육의 일차적 특징은 그것이 수혜자부담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던 법률외적 교육재정을 양성화함으로써, 교육이 일부 소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앙정부의 교육보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국가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교육비 절감 노력을 통해 비공식 교육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도 논의되었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예컨대, 교사의 평균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해예스교수에 의하면 당시 미국인 교사들이 주당 평균 25시간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반면에 한국인 교사들은 18시간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교장실, 서무실, 교무실등 사무용 공간의 과다도 해소되어야 할 요소였다. 작은 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교육재원 절약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 4) 교육재정의 구성과 운영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군정 당시의 교육재정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었다. 해예스교수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의 학교가 어떻게 재정을 충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한다.<sup>45)</sup> 우선 한국의 학교들이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이 학교마다 아주 다양하였다는 점이다. 즉 학교마다 서로 다른 종류와 규모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식이었다. 게다가 한국의 교육자들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심지어는 교장들도 학교의 수입 규모나 재정 충당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매우 일반적이고 애매모호한 얘기를 주로 하였으며, 제시하는 자료들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의미없는 것들이었다. 당시 문교부 관리들조차도 정확하게 어떤 학교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의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률적 방식(legal method)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과 법률외적 방식(extra-legal method)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의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피상적 사실뿐이었다.

1946-1947회계년도 지출예산이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문교부가 의무교육비로 요구한 10억여만원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비판하고 하루빨리 특별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다.<sup>46)</sup> 1946회계년도 문교부 예산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총액 3억 8천여만원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되도록 편성된 것이었다.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로는 교원단기 양성소 설치비 천만원, 국립음악학교, 국립미술학교 신설비 천만원 정도가 특색이었

43) 東亞日報, 1947년 8월 29일자.

44) 東亞日報, 1948년 6월 25일자, 7월 20일자.

45)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 534.

46) 東亞日報, 1946년 4월 17일자.

다.<sup>47)</sup> 문교부에서는 당초에 의무교육비로 15억원의 임시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군정청에서는 지방행정처 예산에 6억원을 포함시켜서 국민학교 교사의 신축, 수리, 증축등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와 함께 중등학교 교사 신축과 수리에 필요한 예산 8천 5백만원도 포함시켰다.<sup>48)</sup> 문교부에서는 다시 5월 말에 의무교육실시를 위한 특별예산으로 11억원을 군정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9)</sup>

문교부에서는 1947-1948회계년도에 8천학급 증설을 목표로 무려 49억원의 예산을 신청하면서 의무교육관계 지방보조금 25억원을 요구하였고,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최종 배정한 문교예산은 18억원 정도였다. 그중 실업기술 교육비가 4억 5천만원이었고 나머지 13억 5천만원 가운데서 의무교육 관계 지방 교육보조로서 11억원 가량 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sup>50)</sup> 1947-1948회계년도의 중앙정부보조금(문교예산)의 부문별 사용계획을 보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1947-1948회계년도 문교부 예산

내역	액수(원)
총무국	8,925,400
성인교육국	16,328,400
편수국	5,120,200
보통교육국	1,337,188,500
고등교육국	2,698,400
부산수산대학	6,607,400
대구농업대학	5,698,900
대구사범대학	4,520,300
서울대학교	162,744,400
교원양성	68,138,600
교화국	7,662,600
국립도서관	3,940,700
국립박물관	2,679,300
과학박물관	2,244,800
국립민속박물관	1,375,400
기상국	20,129,200
영어연수소(ALI)	229,400
문교부장실	258,800
문서보관소	2,195,880
연구 및 특수과목	1,555,900
총계	1,660,242,480

자료 :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 538.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육을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85%를 차지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예산이 문교부 총예산의 1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에 따른 막대한 시설 및 인건비 부담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다음

47) 東亞日報, 같은 날짜.

48) 漢城日報, 1946년 4월 23일자.

49) 東亞日報, 1946년 5월 28일자.

50) 漢城日報, 1947년 4월 8일자.



으로는 교원양성, 성인교육 등의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다.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공립고등교육기관은 문교부를 통해 국가예산(national appropriations)에서 직접 재정 지원을 받았다. 공립중등학교들은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공립초등학교들은 지방(부.군.읍.면)세와 함께 도-국가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통해 운영되었다. 중앙정부보조금은 각도 학무국에 의해 학급수 및 교사수에 기초해서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비교적 엄격한 회계절차에 따랐으므로 지방에 비해서는 공정하게 배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7-1948회계년도 교육 분야의 총 재정 규모는 여기에 나와있는 문교부를 통해 배분되는 중앙정부 보조금 1,660,242,480과 지방세인 호별소득세에 부과되는 학교세로부터 총당되는 재원 516,264,116원이었다. 호별세부가세중 30/52의 비율로 징수한 학교세는 군수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재정위원회(School Finance Committee)에 의해 교사수, 학생수, 기타 기준에 따라 각 면에 배정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학교의 교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에 의해 배정비율이 좌우되었다. 중앙정부보조금(13억 3천여만원)이 당시 초.중등학교 운영비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sup>51)</sup>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나머지 50%인 13억여원 중 지방세로부터의 교육예산 5억여원을 제외한 8억여원은 학부모들로부터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징수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초.중등학교 교육비 중 학부모 직접 부담 비율이 약 30%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학생들에게는 법정 수업료를 징수하였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는 단지 사립학교가 학교재원 마련에 있어서 민간부분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데 있었을 뿐,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 교사급여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공립과 사립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중앙정부보조금, 지방세, 수업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외적 재원에 의해 충당하고 있었으며, 법률외적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것이 보편 교육을 가로막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4. 결 론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미군정기는 이른바 '일제 식민지 교육으로부터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으로의 전환기' 혹은 개화기에 시작된 '교육근대화의 완성 시기'로 이해하여 왔다. 미국이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의 강제 이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정 3년간 한국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미군정기 교육재정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미군정 당국이 적어도 교육재정 면에 있어서는 교육민주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가시적인 노력을

51) Hayes Report, 이길상 자료집, 539.

기울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몇 가지 측면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이 드러났다.

우선 미군정하에서 교육재정은 일제시대보다도 더욱 중앙집권화되었다는 점이다. 중앙집권적인 군국주의 교육체제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적합한 교육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미군정의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재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일제시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으며, 이런 현상은 군정 3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출 규모에 있어서도 미군정기에는 전반적으로 일제시대에 비해 총지출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재정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교육예산 규모도 늘어났으나 당시 물가의 폭등 현상을 고려하면 교육예산의 실질 증가는 거의 없었다. 교육예산에 대한 실질 증가 없이 부족한 교원, 교재, 교육시설의 보완은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장애 요소에 대한 해소없이 교육의 질적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법률외적 재정(학부모로부터의 비공식적 교육비 징수)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제1차적 조건인 교육 기회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일부 추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교육예산 배분의 불균형도 문제였다. 1개 국립대학 지원예산이 당해연도 문교부 예산 총액의 10%를 상회하였던 예에서 나타나듯이 지역간, 학교등급간, 학교간 재정 배분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 교육이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 모순 구조가 미군정기에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군정 3년의 교육재정을 검토해 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국 교육이 일종의 악순환의 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sup>52)</sup> 한국인들이 상업, 산업, 농업, 의학 등 근대화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기까지는 한국의 경제적 위치가 자급 수준으로 향상될 수 없었으며, 반면에 그러한 자급 수준의 경제에 이르지 않는 한 자원 부족으로 인해 당시대가 요청하고 있던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

52) Education in Korea: The Situation and Some of the Problems, Prepared by Horace H. Underwood, Advison to the Director, Department of Education. August 28, 1947, 이길상, 『해방전후사자료집 II』 438.

# 한국의 FTA정책

고 용 수

甲南大学

## 1.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으로 전환한 한국

### 1) 다각주의에서 FTA추진으로

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무역정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나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다각적 틀 안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면, 96년 제1회 WTO각료회의 등의 국제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주의의 확대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입장은 97년의 통화 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바뀌었다.

통화 위기를 거친 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컨디셔널리티라는 압력 하에, 한국은 무역, 직접투자,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상당히 진전시켜 왔다. 그 때까지 「수입처 다각화 품목」으로써 대일 수입을 제한해 왔던 제도는 99년 7월에 철폐되었다. 9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국내주식 투자, 채권 투자의 제한도 철폐되었다. 그 위에, 같은 해 6월에 시행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 토지소유 제한이 완화되어 2001년부터 환율 거래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또, 통화·금융 위기의 후유증으로 부채처리에 고심하는 기업을 정리(기업·사업매각)할 필요성과, 국내의 자본부족으로, 김대중 정권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98년 5월에 외국인을 포함한 적대적 M&A(합병·매수)가 허가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시행으로 외국인 100%출자에 의한 투자도 인정되었다.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수속을 간소화, 단일 기관으로서 신속히 수속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설치했다(원스톱 서비스).

이와 같은 일련의 무역, 직접투자,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최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FTA추진을 평결하고 무역정책의 입장을 변경했다. 그 후 많은 FTA대상국 중에서, 먼저 칠레와 정부간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 99년 12월에 칠레와 제1회 FTA교섭이 개시되었다. 또, 98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를 향한 한일 파트너쉽을 구축하자」고 제안, 수뇌회담과 그 후의 각료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한일 경제관계 긴밀화를 위한 협의가 열려, 양국의 연구기관에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가 시작되었다. 또한 99년 한국은 뉴질랜드, 타이와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개시, 2002년에는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할 방침을 결정했다.

## 2) 한국이 FTA추진으로 전환한 배경

한국이 지금까지의 다각적 자유화의 방침을 바꾸고 FTA추진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일까.

첫째로, 세계로 확대되는 FTA의 조류에 뒤쳐진다는 위기감과 그러한 폐해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 2002년 6월말까지 세계에서 143건의 FTA가 체결되었는데, 특히 95년 WTO설립 후 80건 이상이 체결되어, 세계의 FTA의 조류는 가속화하고 있다. 2000년 현재 FTA를 전혀 체결하지 않은 국가(지역)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극히 소수가 되었다. WTO레벨의 자유화 무역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가운데, FTA등 지역무역협정(RTA)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도, 무차별적 원칙에 반하는 폐해로 간주하는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FTA가 확대됨으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촉진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 위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FTA 미체결이라는 사실에서 초래되는 폐해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EU와 멕시코의 FTA체결에 의해, 재멕시코 한국기업이나 일본기업이 모국으로부터 부품, 기계류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가 필요하게 되어, 이 같은 수입이 무관세가 되는 재멕시코 미국.구주기업에 비해 실제적인 손해를 본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FTA추진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 것이다.

둘째로,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직접투자유치를 위해서도 FTA가 필요하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98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자의 규제를 대폭 완화,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국 직접투자의 신고액은 97년 70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52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98년 이후의 대표적인 대한국 직접투자자는 표2와 같이, 금융기관에의 투자증대와 기업정리에 따른 투자가 증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 외국인의 대한국 직접투자(신고기준)

(단위 : 억 달러, %)

	총액	미국	구성비	EU	구성비	일본	구성비
1991	14.0	3.0	21.4	7.5	53.6	2.3	16.4
1992	8.9	3.8	42.7	2.4	27.0	1.6	18.0
1993	10.4	3.4	32.7	3	28.8	2.9	27.9
1994	13.2	3.1	23.5	3.9	29.5	4.3	32.6
1995	19.5	6.4	32.8	4.6	23.6	4.2	21.5
1996	32.0	8.8	27.5	8.9	27.8	2.5	7.8
1997	69.7	31.9	45.8	23.1	33.1	2.7	3.9
1998	88.5	29.7	33.6	28.8	32.5	5.0	5.6
1999	155.4	37.4	24.1	62.5	40.5	17.5	11.3
2000	152.2	29.2	19.2	43.9	28.8	24.5	16.1
2001	112.9	38.9	34.5	30.1	26.7	7.7	6.8
2002	91.0	45.0	49.5	16.6	18.2	14.0	15.4

(출처)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

<표2> 주요 대한민국 직접투자 사례(1988~2000년)

(단위 : %)

업종	외국인투자기업	피투자한국기업	투자금액(인가)	투자비율
금융	ING(네덜란드)	한국주택은행	2.8억 달러	10
	뉴브리지.캐피탈(미)	제일은행	4.4억 달러	51
	골드만.삭스(미)	국민은행	3.3억 달러	9
	코멜트뱅크(독)	외환은행	2.9억 달러	42
	알리안츠(독)	제일은행	4억 달러	100
	알리안츠AG(독)	하나은행	1.6억 달러	11
제조업 기타	필립스(네덜란드)	LG필립스LCD	1.6억 달러	50
	IPIC(아랍수뇌국연방)	현대정유	5.1억 달러	50
	COSTCO(미)	COSTCO현지법인	4억 달러	100
	일광금속(일)	LG일광정련	2.2억 달러	50
	토레(일)	토레새한	1.5억 달러	56

그러나,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한국 이상으로 중국이나 ASEAN이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는 현상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기초한 표3을 참조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직접투자 추진을 확인해 두자. 이에 의하면 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아시아 지역으로의 직접투자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과 홍콩으로의 투자가 그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투자를 대폭 웃도는 직접투자가 중국, 홍콩에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는 국제수지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투자는 재인도네시아 자회사가 모회사 등으로 부채반납을 함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어, ASEAN으로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ASEAN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화위기 이후에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추진, 2003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 ASEAN 자유무역지역(AFTA)에 의해 확대된 시장을 시야에 넣어, 직접투자의 인가는 이 시기에 확대되고 있다.

<표3> 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국제수지 베이스)

(단위 : 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남, 동, 동남아시아(1)	963.4	862.5	999.9	1,311.2	943.7
중국	442.4	437.5	403.2	407.7	468.5
홍콩	113.7	147.7	246.0	619.4	228.3
대만	22.5	2.2	29.3	49.3	41.1
한국	28.4	54.1	93.3	92.8	32.0
싱가폴	107.5	63.9	118.0	54.1	86.1
ASEAN4	158.8	92.4	52.9	32.9	28.2
인도네시아	46.8	-3.6	-27.5	-45.5	-32.8
말레이시아	63.2	27.1	39.0	37.9	5.5
타이	36.3	51.4	35.6	28.1	37.6
필리핀	12.5	17.5	5.8	12.4	17.9

(주) UNCTAD의 통계에서는「서아시아」이외의 아시아를「남, 동, 동남아시아」로 하고 있다.

(출처) UNCTAD, *The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인도네시아의 투자조정청(BKPM)의 통계에 따르면, 직접투자 인가액은 99년 109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54억 달러로 확대되었다(제트로 2002).

이와 같이 아시아 각국에서 직접투자의 유치경쟁이 보이는 가운데, AFTA와 같이 광역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투자처기업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직접투자 유치자세를 강화하는 한국정부에게,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협소한 시장제약을 극복하고 광역시장권을 형성하는 FTA를 추진하는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셋째로, 한국에 있어서 아시아 각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가 긴밀화되고 근린아시아 각국과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표4는 한국의 수출추이를 보여 주는 것인데, 90년대 후반 이후 대중국·홍콩수출의 구성비가 높아져, 2002년에는 대미국수출을 웃도는 최대의 수출시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아시아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에 49%까지 상승, 2002년도 48%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5에서 한국의 대외직접투자(실행기준)를 알 수 있는데, 98년을 하한선으로 그 후 확대되는 대외투자에서 투자건수에서는 압도적으로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투자금액을 국가별로 보면, 98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최대로, 중국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으나, 2002년에 대중국투자가 8.0억 달러, 1,266건이 되어 대미국투자인 4.9억 달러, 429건을 넘는 최대의 투자지역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무역, 투자 등의 경제관계가 긴밀하게 된 아시아 각국과 FTA를 포함한 경제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 위에, 통화위기 후에 일본의 신미야자와플랜에 의한 300억 달러 규모의

<표4> 한국의 지역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수출총액	미국	일본	중국+홍콩	ASEAN5
1990	650	194	126	38	51
1991	719	186	124	58	71
1992	766	181	116	86	86
1993	822	181	116	116	93
1994	960	206	135	142	114
1995	1,251	242	171	198	165
	<100>	<19.3>	<13.6>	<15.9>	<13.2>
1996	1,297	217	158	225	185
1997	1,362	216	148	253	185
1998	1,323	228	122	212	137
1999	1,437	295	159	227	160
2000	1,723	376	205	292	180
2001	1,504	312	165	276	144
2002	1,625	328	151	339	159
	<100>	<20.2>	<9.3>	<20.9>	<9.8>

(주) < >는 수출 총액에 대한 구성비.

ASEAN5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지원체제 실시와 아시아간에서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하고 통화 위기에의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첸마이.이니셔티브 등의 형태로, 아시아지역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도, 아시아 FTA를 향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표5> 한국의 대외직접투자(총투자기준)

(단위 : 건, 억 달러, %)

	총투자건수			총투자금액					
	전체	아시아	구성비	전체	아시아	구성비	북미	구성비	
1991	445	270	60.7	11.2	4.3	38.0	4.6	41.1	
1992	497	360	72.4	12.2	5.2	42.6	3.9	32.0	
1993	688	553	80.4	12.6	5.0	39.7	3.9	31.0	
1994	1,488	1,214	81.6	23.0	11.5	50.0	5.7	24.8	
1995	1,324	1,039	78.5	31.1	17.3	55.6	5.5	17.7	
1996	1,466	1,076	73.4	43.9	18.1	41.2	16.0	36.4	
1997	1,320	910	68.9	35.6	17.0	47.8	8.9	25.0	
1998	608	393	64.6	47.0	20.2	43.0	9.6	20.4	
1999	1,079	663	61.4	32.3	12.4	38.4	13.9	43.0	
2000	2,034	1,156	56.8	48.1	14.4	29.9	13.3	27.7	
2001	2,096	1,399	66.7	49.3	12.7	25.8	14.4	29.2	
2002	2,346	1,714	73.1	24.0	13.3	55.4	5.0	20.8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

## 2. 한국-칠레 FTA

한국이 최초의 FTA교섭국으로 선택한 칠레와는 99년 12월에 제1회 정부간 교섭이 개시, 2002년 10월에 타결되어 2003년에 정식서명에 이르렀는데, 연내에라도 양국간의 국회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국-칠레 FTA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로, 한국-칠레 FTA는 관세의 철폐에 의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일본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경제연휴협정(EPA)을 비롯해서 근년의 FTA와도 공통되는 특징으로, 재화(財貨)의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이나 투자, 국내 경제정책도 포함한 협정이다.

둘째로, 관세철폐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칠레수출의 66%에 상당하는 휴대전화, 승용차, 트럭, 컴퓨터 등의 품목은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있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의 수출 관세철폐의 스케줄은 표6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업제품의 99.9%, 전품목의 87.2%를 발효와 동시에 철폐하고 품목수에서 한국 측 96.2%, 칠레 측 96.5%에 해당하는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로, 표6의 관세철폐 스케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농산물로는 쌀, 사과,

배 등 21품목이 예외품목으로서 자유화의 대상외가 되고, 마늘, 양파 등 373품목(농산물 품목의 26%)도, WTO 도버개발어젠더(DDA, 신라운드)의 교섭종료 후에 자유화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FTA추진에 대해 한국내에서 농산부문으로부터의 강한 저항이 있어, 그것을 배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칠레측도 세탁기, 냉장고 등의 공업제품 12품목, 농산물 42품목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표6> 한국.칠레 FTA의 한국측 관세철폐 스케줄

(한국 HS10항의 품목수, %)

관세철폐시점	전분야	공업제품	농산물	임산업	수산업	농산물 등의 주요품목
즉시철폐	9,740 (87.2)	9,101 (99.9)	224 (15.6)	138 (58.2)	277 (69.5)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밀, 양모, 토마토
5년 이내	701 (6.3)	-	545 (38.1)	70 (29.5)	86 (21.5)	양모
7년 이내	41 (0.4)	1 (0.01)	40 (2.8)	-	-	과일주스(포도, 딸기), 복숭아, 칠면조
9년 이내	1 (0.01)	-	1 (0.07)	-	-	그 외의 과일주스
10년 이내	262 (2.3)	-	197 (13.8)	29 (12.3)	36 (9.0)	건조과일, 돼지고기
계절관세(10년 내 철폐)	1 (0.01)	-	1 (0.07)	-	-	포도
16년 이내	12 (0.1)	-	12 (0.8)	-	-	과일혼합주스
쿼터설정+DDA 이후 의논	18 (0.15)	-	18 (0.26)	-	-	소고기, 닭고기, 자두
WTO의 DDA 이후에 의논	373 (3.3)	-	373 (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자유화품목의 대상외	21 (0.2)	-	21 (1.5)	-	-	쌀, 사과, 배
전체품목수	11,170	9,102	1,432	237	399	

(주) ( )는 각 분야 품목 수의 구성비

(출처) 한국 외교통상부.대외 경제정책연구원『한.칠레 FTA의 주요내용』서울, 2003년 3월.

이렇게 한국에서 처음으로 FTA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칠레 양국에게, 무역 등의 경제관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2001년에 한국의 대칠레 수출과 그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억 달러, 0.38%로, 한국의 대칠레수출은 7.0억 달러(동 관련품이 7할), 총수출의 0.49%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FTA가 초래하는 실제적인 경제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한국의 FTA 첫 걸음이고, 앞으로의 한국 FTA정책을 위한 모델케이스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 3. 한국.일본 FTA교섭



통화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그 연장선에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도모했는데, 그것은 98년 10월의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서 나타났다. 98년 10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FTA를 포함한 한일경제협력의 방향성이 논의되어,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서「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관한 행동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직후, 양국 정부에 가까운 연구소에서 FTA에 관한 공동연구가 시행되고, 2000년에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게다가 99년 3월에 오부치 수상의 방한에서「한일 경제 어젠더 21」이 발표되어, 투자협정의 추진, 기준인준과 지적소유권의 협력 등이 합의되었다. 2002년 7월부터는 FTA에 관한 산관학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간 교섭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99년부터 교섭이 시작된 한일투자협정은 투자의 허인가 단계에서부터 내국민대우, 상호기업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활동에 현지조달이나 기술이전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이미 2003년에 발효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이고, 이미 긴밀한 무역·투자·기술 전이 등의 경제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양국에서 FTA를 체결하는 것은, 선진국간에 필적하는 물건, 돈, 기술 전이의 자유화라는 기본틀이 동아시아에서 생긴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데다가, 한일에 중국이 가입한 형태나 ASEAN이 합세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형식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토대가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또 근년, 한일간의 산업협력이 진전되고, 한일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되어, 양국의 산업계에서 한일 FTA추진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IT·전자 산업이 놀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의 한일 기업의 연휴도 강해지고 있다. 도시바·미츠비시 등의 일본 전기메이커는 개발비용 삭감을 위해, 한국측에 설계까지 맡겨서 가전(세탁기 등)을 조달하는 수평분업(ODM : Own Design Manufacture=수탁 기업이 설계, 디자인을 맡아 상대처 브랜드로 생산)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반도체 DRAM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톱으로, 액정에서도 삼성전자, LG필립스LDC가 세계의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니나 마츠시타가 액정 텔레비전용으로 한국으로부터 액정패널의 조달을 확대하는 등, 이들 전자부품을 일본의 전기메이커가 구입하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또 아사히화학이나 스미토모화학이 이러한 액정메이커를 대상으로 도광판 등 액정재료를 공급하는 합병기업을 한국에서 설립하거나, 한국 반도체메이커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장치가 수출되는 등, 한일의 분업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메이커에서도, 닛산에 자본 참가한 르노가 2000년에 삼성자동차를 매수, 르노삼성자동차를 설립시켜, 닛산계열의 부품메이커와 르노삼성과의 거래도 확대되고 있다. GM은 2002년에 대우자동차를 매수하고 GM대우자동차기술을 설립했는데, 동사에는 스텝키도 15%의 자본참가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한 GM대우자동차기술이 완성차를 북미나 중국에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한일 분업관계는, 현재 한국측의 자동차·동부품과 전자제품의 수입에 8%의 관세가 들지만, FTA에 의해

한일간이 관세가 없는 확대시장이 되면 한일기업 쌍방이 이익을 보는「Win-Win 전략」으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관련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한일의 제휴와 기술자 교류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00년 9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계 관계자에 의한「한일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포럼」의 설립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2002년의 동포럼에서는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요청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FTA에는 어떠한 과제가 있을까. 첫째로, EPA와 같은 무역, 서비스, 금융협력, 지적재산권 외에 인재육성과 인적 교류, 중소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십협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통화위기를 전후로 해서 IT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보였는데, IT관련 기술자나 IT벤처가 한일의 국경을 넘어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일본의 IT산업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또,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부품산업육성이 과제였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중소기업수가 확대되면서, 부품산업의 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97년의 통화.경제위기에 의해 많은 중소부품메이커가 파탄에 이르러, 다시 중소기업메이커의 육성이 과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책협력도 기대되는 바이다.

둘째로, 한일 쌍방이 경제개혁을 상호 학습하고, 보다 확실한 구조개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1997년 후반의 통화위기 이래, 급속한 기업.금융부문의 개혁을 동시병행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일본도 거품경제 붕괴 이후, 동일한 문제를 안은 채 개혁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으나, 한국의 신속한 공적자금주입과 엄격한 경제책임추구, 단기간의 불량채권처리라고 하는 금융시스템개혁의 경험은 일본측에도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한국의 기업개혁에서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과제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이나 선경그룹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낡은 경영체질이나 분식결산의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발본개혁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일 양국에게, FTA 등의 경제협력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시급히 개혁하고, 국내경제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 4. 노무현 정권의 FTA정책

2003년 2월에 한국에서는「개혁」을 내건 노무현 정권이 발족했다. 인터넷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어 등장하고,「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 신정권은 어떠한 아시아 정책, FTA정책을 내세울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21세기를「동북아시아 시대의 도래」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아시아정책의 캐치프레이즈는「한국이 동북아시아 경제권에서 중심적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북조선에 대한 태양 정책을 계승하고「평화적 번영정책」에 의한 대북대화와 평화정착을 추구하면서, 성장성이 넘치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그「중

심적 국가가 되려고 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한국의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인제와 생산기술, IT인프라를 무기로, 인천 신공항, 부산, 광양을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복합적인 센터로 하여 생산, 물산, 금융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 정권은 남북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FTA나 중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관계의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위에 최근 들어 동아시아 각국이 FTA교섭을 급진전시키고 있는 사실이 노 정권하의 한국에도 자극을 주고 있다. 한국보다 조금 늦게 FTA교섭을 시작한 일본은 2002년에 싱가포르와 EPA를 체결하고, 관세철폐뿐만이 아니라 인재육성, 중소기업육성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싱가폴은 이미 2000년에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고 있고, 99년에 칠레, 2000년에 캐나다, 멕시코, 미국, 호주와 FTA교섭을 개시하고, 2003년 1월에는 한국에도 FTA를 제안했다.

그리고, 근년 중국이 대아시아 FTA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의 ASEAN+3(한, 중, 일) 정상회담에서, ASEAN에 FTA를 제안하고 2001년의 동 정상회담에서는 중국-ASEAN의 FTA를 10년 이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더해서 중국은 농산물에서 먼저 자유화를 개시하는 얼리.하베스트(early harvest)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의 ASEAN+3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ASEAN+3의 FTA를 제안하고 적극적인 대아시아 경제외교, FTA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각국이 앞다투어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상황과 더불어, FTA제안도 경쟁적 관계에 있어, 한국내에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FTA적극추진의 주장은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 정권은 노동조합, 중소기업, 지방이나 농촌 등의 사회적인 약자를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FTA추진이나 그에 따른 개혁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농업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이나 ASEAN, 한국이 FTA추진을 내세우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구주연합(EU)과 같은「아시아 공통의 집」이라고도 불릴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증대되고 있다. 노 정권의 동북아시아 경제권도 이와 공명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EU에서 무역 등의 경제통합이 지역내의 대립과 전쟁을 예방하는 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표로서 추진되어 왔듯이, 아시아의 브레인이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질곡과 대립을 극복하고 아시아에서의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한 정치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深川由起子(2002),『日韓經濟緊密化構想的實現을 위한 課題-東아시아經濟連携의 基軸을 바라며-』九州大學韓國研究센터主催 國制심포지움,『日韓自由貿易協정이 여는 未來』  
中島朋義(2002),『日韓自由貿易協定の 效果分析-部門別視點-』 ERINA Discussion Paper

- No.0202, 環日本海經濟研究所.
- 渡邊賴純(2000),「WTO와 整合的인 日韓自由貿易協定の 條件」, 아시아 經濟研究所編,『21世紀의 日韓關係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아시아 經濟研究所.
- 尹春志(2003),「글로벌 리즘안에서의 東아시아 地域主義」, 平川均.石川幸一編,『新 東아시아 經濟論[改訂版]』, 미네르바書房.
- 金奉吉.井川一廣 編著(2003),『韓國의 構造改革과 日韓.東아시아의 經濟協力』, 神戶大學經濟 經營研究所, 研究叢書60.
- 高龍秀(2000),『韓國의 經濟시스템』, 東洋經濟新報社.
- 제트로(2002),『2002年版 제트로 投資白書』
- 韓國外交通商部(2002),「韓.칠레 FTA協力妥結」(同部HP : <http://www.mofat.go.kr/>).
- 韓國外交通商部.對外經濟政策研究院(2003),『韓.칠레 FTA의 主要內容』, 서울.
- 鄭仁教(2001),「韓.日 FTA의 經濟的 效果和 政策示唆點」, 政策研究 01-04, 對外經濟政策研究 所(KIEP), 서울.
- Inkyo Cheong(20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Policy Analyses 02-02, KIEP.

#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금융노동에 있어서의 Dualism의 심화 —은행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창 명

甲南大学

## 1. 서론

19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한국에서도 동년 말에 심각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IMF에 의한 긴급지원하에서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부문의 개혁이 경제위기 대책으로서 실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위기에 직면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부문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은행업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에서는 고용조정, 경비 절약, 생산성 향상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한국의 은행에서는 경영합리화에 수반하여 조직의 유연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명예퇴직 등으로 정규직 노동자를 삭감하거나 파트타임·과건 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고용 유연화 정책의 전개와 노동시장 불안정화에 관해서 듀어리즘(dualism)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검토하려는 것이다. 먼저 듀어리즘에 관한 개념과諸이론에 관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노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하면서 설명한다. 다음으로 90년대부터 한국 인사관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인사관리와 정규직 노동자의 삭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대체화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인사관리 변화에 의한 고용 불안정화에 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금융노동에 있어서 듀어리즘 경향의 심화에 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2. Dualism의 개념과 諸이론

일반적으로 듀어리즘은 이중구조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먼저 노동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듀어리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Doeringer와 Piore(1971)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상대적 高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다양하고 많은 승진기회, 고용의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1차 노동시장과 상대적 低임금, 열악한 근무조건, 승진기회의 결여, 고용의 불안정성을 특

정으로 하는 2차 노동시장으로 2分化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sup>1)</sup>.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관한 의논에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였다. 그것은 노동시장 유연성(flexibility)에 관한 문제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관한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주요한 경제문제로 대두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서구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강력한 단체교섭력과 국가의 사회민주주의적 개입에 의해 임금과 고용이 계속적으로 경직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선진국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킴으로써 시장수요 변동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Thatcher 정권하의 영국 등 198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노사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켰다<sup>2)</sup>.

듀어리즘을 노사관계의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듀어리즘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규제를 가하거나 노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미조직 부문을 확대시킴으로써 시장원리가 자유롭게 작용하는 영역을 확대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Goldthorpe, 1984, 329). 즉, 경제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임금 cost의 절약과 경기변동에 대한 ‘衝擊吸收者(shock absorber)’로서 의식적으로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을 억제하거나 수급관계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의 교섭력에 규제를 가하여 그 힘을 꺾고 정부에 의한 자본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五十

1 이 개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이중구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경제와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주목되어 왔다(新川, 1993, 232-233). 그러나 이러한 이중구조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며 (Piore, 1980), 일본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노동시장 유연성은 논자에 따라 구분방법이 다르지만,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의 多機能化를 통해 기업내 노동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려는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이다. 이는 다양하고 가변적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신속적으로 생산과정을 바꿀 수 있는 유연 생산관리 체제(flexible management system: FMS)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계약임금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임금을 기업의 업적과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적으로 조정하는 임금유연성(wage flexibility)이다. 임금유연성은 거시적 수준에서는 주로 최저임금제도, 물가안정제도 등 경직적인 임금제도를 완화, 철폐하여 임금의 下方 신속성을 실현하려는 것이며, 미시적 수준에서는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경직적 임금구조를 생산성 임금제, 성과급제도를 통해 보다 유연한 임금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노동시간 유연성(working hour flexibility)이다. 이는 변형노동시간제와 같이 노동시간을 신속적으로 편성하려는 것이다.

넷째, 시장수요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 수, 즉 고용량을 조정하는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이다. 수량적 유연성은 노동시장 유연성의 형태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추구되는 형태이다. 왜냐하면 기능적 유연성과 임금 유연성에 비해 수량적 유연성은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의 폭을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嵐, 1998, 8). 그리고 “작은 정부’의 실현과 시장 원리의 확립을 통해서 자본 주도에 의한 경제 再활성을 도모”한다(石田, 1992, 250).

따라서 경제위기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경제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의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iore(1980)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의해 경직된 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요부문(primary sector)과 2차적 부문(secondary sector)의 이중구조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erger(1980)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전통적 부문(traditional sector)의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 부문은 오랫동안 전통성이 존속해 온 것이 아니라 현대적 부문(modern sector)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전통적 부문은 상대적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비조직 노동력을 통하여 급진적인 노조세력의 확대를 막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고 있다.

Goldthorpe(1984)는 듀어리즘의 특징으로써 이민노동자(외국인 노동자), 하청제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하청제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증가에는 듀어리즘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듀어리즘이 노조에 대한 직접적, 전면적 공격을 꼭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일정분야에서 시장의 힘을 확대시킴으로써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Goldthorpe, 1984, 335; 石田, 1992, 277).

따라서 노조는 듀어리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 노조의 힘을 지켜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전국노조는 다음 두 가지의 전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Goldthorpe, 1984, 339; Sengenberger, 1981, 243-259). 첫째는, 경영자에 의한 듀어리즘 전략의 전개를 막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통한 규제를 요구하거나,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노동자의 노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듀어리즘 확대에 반대하고 계급지향적 노동조합운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조가 듀어리즘을 수용하여 2차 노동시장의 노동력을 충격흡수자로 기능시킴으로써 노조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첫째 전략은 노조의 강력한 조직역량이 필요하고, 노조를 구성하는 중핵 노동자의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노조의 관심은 둘째 전략인 노조를 구성하는 중핵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집중하게 된다(Goldthorpe, 1984, 340).

### 3. 인사관리의 변화와 고용의 불안정화

#### 1) 신인사제도와 경제위기 이후 인사관리에 대한 영향

금융산업의 세계화, 구조변화, 기술혁신 등 경영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의 재편성을 촉진시키고, 경제위기 이후 은행간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비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직의 재편성을 통한 노무비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 은행업에서 생긴 노동시장 변화의 특징은 중·고년층을 중심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삭감하고,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은행업의 인사제도의 특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초부터 신인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코스별 관리제도의 하나이며, 모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총합직·일반직 등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총합직의 경우 고도적인 경영, 기획 업무와 관련하고 있고, 최고 경영직까지 승진이 가능하며, 전근의 사령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편, 일반직의 경우 단순반복적인 일상적 사무노동을 담당하고, 전근은 없지만 승진은 중간관리직(대리)까지로 한정되어 있다(조순경·권현지·최성애, 1995, 38-39). 이런 점에서는 일본 금융기관의 코스별 노무관리와 유사하다<sup>3)</sup>. 그런데 한국의 경우 코스별 고용관리가 학력 차별이나 남녀 차별을 숨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주의보다 연공주의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별 고용관리가 원래 갖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박우성·유규창·김병연, 1999, 16).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인사제도의 경영전략은 코스별 고용관리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인사고과의 강화, 직급과 직위의 분리, 경력개발제도 등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조직 중핵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정예 체제를 만들며, 그 이외의 인력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이창순, 1998, 128). 신인사제도는 고용구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은행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먼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간주되어 있는 중고년 노동자와 단순한 업무에 비해 임금이 높다고 간주되는 여성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같은 책, 125; 김상곤, 1996, 5). 이렇게 금융산업에서 신인사제도가 보급됨으로써 은행 인원수는 경제위기 발생 이전부터 점진적이지만 감소하게 되었다(표 1).

〈표1〉 경제위기 발생 전 7대 도시은행 연도별 인원수 (단위: 년, 명)

3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은행업에 있어서 경영합리화의 충격은 장기 정착화의 경향에 있는 여성 노동자의 ‘戰力化’·‘파트타임화’, 상대적으로 비대화된 중·고년 남성 노동자의 처우, 다양한 인재 확보·육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고용 코스를 復線化하고, 노동력 구성과 노동 내용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渡辺, 2001, 43). 따라서 한국의 신인사관리 제도 도입의 경제적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일본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국민	합계
1991	10,006	9,522	9,276	9,617	10,289	8,431	14,631	71,772
1993	9,497	8,911	8,817	9,069	9,562	8,155	14,949	68,960
1995	9,020	8,230	8,748	8,596	8,676	8,464	14,701	66,432
1997	8,998	8,322	7,965	8,911	7,498	8,188	13,502	63,384

자료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1998), 100.

경제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인사관리는 신인사제도에서 보이는 특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사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를 보면, 실시·실행중·계획중의 합계로 본 경우, 비정규직의 확대(57.0%),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64.5%)이 각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직면한 후 한국 금융기관의 신인사제도는 그 기능의 하나인 고용구조의 양적 유연성 확대라는 측면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즉, 한국 금융기관에 있어서 소수의 중핵 노동자와 다수의 단순 노동자로 재편이 시작된 것이다(이창순, 1998, 128).

<표2> 경제위기 발생 이후 구조조정 내용별 실시 여부 (단위 : %)

항목	이미 실시	진행중	계획중	소계	무응답
계열사·관계사 매각	10.8	6.5	6.5	23.7	76.3
인수·합병	11.8	6.5	6.5	24.7	75.3
업종전환·사업영역 변경	5.4	5.4	4.3	15.1	84.9
분사화·사업부제 실시	5.4	3.2	4.3	12.9	87.1
팀제 실시 등 조직개편	46.2	5.4	5.4	57.0	43.0
기업 소유구조 변경	15.1	4.3	5.4	24.7	75.3
외주하청·아웃소싱 확대	8.6	6.5	8.6	23.7	76.3
조직통폐합·축소(부서)	38.7	9.7	15.1	63.4	36.6
조직통폐합·축소(점포)	30.1	7.5	7.5	45.2	54.8
조직통폐합·축소(지주회사)	3.2	5.4	5.4	14.0	86.0
자동화·정보화	14.0	19.4	3.2	36.6	63.4
연봉제·성과급 도입	31.2	9.7	20.4	61.3	38.7
능력주의 인사제도 도입	11.8	11.8	19.4	43.0	57.0
비정규직 확대	25.8	19.4	1.8	57.0	43.0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46.2	4.3	14.0	64.5	35.5
인력 재배치	25.8	7.5	11.8	45.2	54.8
퇴직금 누진제 폐지	28.0	3.2	14.0	45.2	54.8

사원복지 축소	32.3	8.6	7.5	48.4	51.6
임금삭감	32.3	6.5	6.5	45.2	54.8
노동시간 연장	8.6	8.6	7.5	24.7	75.3

자료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2001a), 32.

## 2) 정규직 노동자의 삭감

경제위기 이후 IMF의 요구에 따라 금융산업의 고용조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금융노동자가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일반은행에서는 1997년말부터 1998년 4월까지 4개월에 1만 2천명(전년말 대비 전체의 10.8%)의 인원이 삭감되었다(표3). 그 내역을 보면, 일반행원(11.0%)이나 하급 책임자인 3·4직원의 감소율(4.9%)보다 상급 책임자인 1·2급 직원(17.6%)의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인원삭감 대상이 중·고년층을 중심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한국 국내 26 일반은행에서의 직급별 인원 변동** (단위 : 명, %)

	1995년 말	1996년 말	1997년 말	1998년 4월
1·2급	7,580 (5.2) <6.6>	7,864 (3.7) <6.8>	7,727(-1.7) <6.8>	6,359(-17.6) <6.3>
3·4급	30,672 (6.0) <26.7>	32,561 (6.2) <28.2>	34,016 (4.5) <30.0>	32,365(-4.9) <31.9>
행원	68,756(-1.3) <59.9>	67,804(-1.4) <58.7>	64,715(-4.6) <57.0>	57,584(-11.0) <56.9>
기타	7,870(-3.9) <6.8>	7,229(-8.1) <6.3>	7,035(-2.7) <6.2>	4,979(-29.2) <4.9>
계	114,878(0.8) <100.0>	115,458(0.5) <100.0>	113,493(-1.7) <100.0>	101,287(-10.8) <100.0>

주 : < >내는 총인원 대비 구성비이며, ( )내는 전년말 대비 증감률이다.

자료 : 은행감독원 검사통괄국 정보개발과(1998).

그리고 1998년 후반부터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동년 6월에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발표하였다(금융감독위원회, 1998c ;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 2001, 584). 먼저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7은행(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에 대해서는 경영자 교체, 합병, 점포정리, 인원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이행계획서의 작성과 인원삭감의 항목

에 관해서는 삭감을 30%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요구하였다. 또 경영정상화가 매우 어려운 5개 은행은 경영업적이 우량한 은행에 흡수되게 되었다. 이 5개 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은행을 인수한 은행에서 3개월 동안 계약직원으로 채용되지만, 파업 등으로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금융감독위원회, 1998b). 결국 그 노동자들 중 약 3분의 2는 재계약되지 않는 전망이 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부실은행에 대해서도 1999년말까지 40% 정도 고용삭감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인터넷 한겨레신문, 1998.9.3.).

이를 계기로 한국 은행에서는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행해졌다.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조정에 수반하여 은행원이 급격히 삭감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였다. 1997년말부터 1999년 6월까지 일반은행 행원이 3만 9천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7년말 대비 34% 감소한 결과가 되었다(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2000)<sup>4</sup>.

<표4>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일반은행 노동자 수 (단위: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임원·직원수	113,994	75,677	74,744	70,559	68,360

자료: 허재성·유혜미(2002), 21.

### 3)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대체화

경제위기 이후 금융산업에서는 정규직 노동자가 명예퇴직 등으로 삭감되었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채용되었다. 일반은행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1997년 말 15,043명에서 1999년말 20,796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직원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말 11.7%에서 1999년말 21.8%로 급격히 상승하였다(표5). 특히 경제위기 때 정규직 근로자들을 한번 삭감하고, 경기회복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그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sup>5</sup>.

좀더 자세히 보면,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여성이 창구계로서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채용되어 있으며, 특히 창구계 여성직원을 중심으로 재고용되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2000).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원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파트타임의 경우는 대부분이 여성이다<sup>6</sup>. 표6을 보면,

4 증권회사 직원수도 1997년말부터 1998년말까지 약 4천 9백명이 감소하였다(금융감독위원회, 1999).

5 1998년의 사례를 보면, 제일은행에서 530명, 외환은행에서 130명이 명예퇴직 후 재고용되었다(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1998, 127).

6 1998년 4월 당시 한국 8대 은행의 경우도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국민은

경제위기 이후 은행이 정규직의 경우 남성을 채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1998년을 제외하고 여성을 채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5> 일반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성 (단위 : 명, %)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전체 직원수	129,037	94,690	95,540
정규직 노동자 수	113,994	75,677	74,744
비정규직 노동자 수	15,043	19,013	20,796
비정규직의 비율	11.7	20.1	21.8

자료 : 노사정위원회(2000).

<표6> 은행의 연도별 채용인원현황(21개 기관) (단위: 명)

년도		1998	1999	2000	2001	합계
정규직	남자	1,322	872	741	658	3,593
	여자	847	202	423	372	1,844
	소계	2,169	1,074	1,164	1,030	5,437
비정규직	남자	2,554	982	679	720	4,935
	여자	3,896	5,731	3,765	4,554	17,946
	소계	6,450	6,713	4,444	5,274	22,881

자료: 시석중(2003), 21.

이렇듯이 금융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다음과 같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시석중, 2003, 22).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보면, 창구계약직은 100만~120만원, 콜센터계약직은 76만8천~110만원, 후선사무계약직은 76만8천~100만원, 용역청경과 용역기사는 92만~105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40~50%에 불과하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계약은 6개월이나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휴일·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보호도 적으며, 사회보험의 적용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4. 노조의 대응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기업별 노조가 중심적인 조직체계이므로 노동조합운동의

---

행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성 파트타임 노동자였다(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1998, 126)

중앙집권도는 낮다. 민간노조들의 대부분은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독립성은 강하며, 단체교섭도 기업별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급노조는 하급노조가 위임할 경우에는 단체교섭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사권이나 승계권, 기타 파업에 대한 승인권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급노조의 기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배무기, 1995, 29).

이러한 사정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조직간 이기주의’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자기 사업장 노조원의 이익만 지켜주면 된다는 기업별 노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다(한국노총 조직사무국, 1998). 이에 따라 기업규모 간의 임금·근로조건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거나 경쟁 기업들에 소속하는 노조들간의 연대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계층 내부의 단결이 어려워져서 노동조합운동발전의 장애가 된다.

금융산업의 노동조합운동도 또한, 상급노조의 기능이나 재정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위기사 금융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단체교섭·단체교섭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III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1998년 여름부터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금융 노동자가 삭감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노련은 대규모의 고용삭감이 실시될 9은행노조를 중심으로 동년 9월에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였지만, 각 노조가 잇따라 연대에서 이탈하여 개별교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금융감독위원회, 1998a) 총파업은 철회되었고, 노조측은 1997년말 대비 32%의 고용삭감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많은 은행들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삭감이 실시되어 금융노조에서 노조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노조가 약체화되었다(표 7).

이 총파업 실패를 계기로 금융노동조합운동의 산별화가 본격화되었다. 금융노련에서는 1999년에 이용득을 위원장으로 하는 新집행부가 탄생하였다. 신집행부는 1998년의 실패가 전술·전략의 실패라기보다는 기업별 노조와 연맹체제의 한계에 있다고 판단하였고(최규덕, 2000), 기업별 노조 체제에 의한 조직간 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노조의 산별화를 제1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에 금융노련 산하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라는 단일 산업별 노조가 결성되었고, 금융노련 산하 24노조와 약 6만 5천명이 참가하였다<sup>7)</sup>.

〈표7〉 금융노련의 노조원수

(단위: 명)

	1997년 12월	2000년 6월
--	-----------	----------

7 그러나 산별연맹이 단일 산업별 노조로 전환을 결의하여도 산하 단위노조가 조직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단일 산업별 노조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산별연맹 산하에 단일 산업별 노조를 만드는 방법을 잠정적으로 선택하였다(최규덕, 2000). 또 2000년 7월 4일 시점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노조원수는 61,132명으로, 금융노련의 노조원수(82,695명)의 74%에 상당하였다.

노조원 수	127,507	91,142
-------	---------	--------

자료 : 류기락(2001), 143.

한편 민주노총 산하의 금융노조도 산별화의 움직임이 가속화시켰다. 경제위기 이전에 민주노총 산하에서는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형 은행을 제외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노조가 1999년 2월에 조직통합을 실현시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금융노동조합운동의 산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산업별 노조나 산별연맹이 금융노조의 상급단체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2000년 6월에 정부는 부실은행을 정리·통합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금융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노조와 타협할 의사가 없었고, 노조는 은행 강제합병에 수반되는 조직 재편과 고용조정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였기 때문에 정부와 노조의 대립은 심각하였다(선한승, 2000, 3). 금융노련은 7월 1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였고, 노조원 투표로 90% 이상의 지지를 얻어 총파업 준비에 들어갔다(인터넷 한국경제신문, 2000.7.3.; 2000.7.4.).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7월 11일 총파업 때 결근한 은행원은 1만 2천 5백명으로 소은행직원의 10.3%(금융노련 소속 노조원의 15%약에 상당함)에 불과하였다(인터넷 한국경제신문, 2000.7.12.).

그 주요원인은 주택·하나·한미 등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닌 우량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 불참가를 표명한 노조가 증가한 것에 있다. 그래서 파업이 실행되는 은행에서 그렇지 않은 은행으로 예금이 대폭적으로 이동하여 파업을 철회하는 노조가 급증하였다(인터넷 한국경제신문, 2000.7.12.). 결국 이 문제는 기업별 노조 체제로 인한 조직간 이기주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노조의 산별화가 진행되고 있어도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상급단체의 기능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충격흡수자로서 기능시킴으로써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저하하는 등 노종조합의 조직력이 약체화되었다(박창명, 2002). 금융산업 노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1998)의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노동조건 차별에 대해 반대 비율(48.7%)이 찬성 비율(25.9%)을 상회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반대(48.3%)가 찬성(30.2%)을 상회하고 있

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도 또한 반대(42.1%)가 찬성(30.8%)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조의 산별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2001a)의 조사에 의하면, 노조규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이하 case1)”가 12.2%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하 case2)”가 71.1%,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이하 case3)”가 16.7%였다. 또 단체협약의 경우도 case1이 16.5%인 반면, case2가 54.1%, case3이 29.4%로 case1을 상회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산하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면서도 그 활동이나 정책적 자세에 소극적인 측면이 나타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과 고용의 불안정화,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에 관해서 검토해 왔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의 내용이 한국의 금융노동에 있어서의 듀어리즘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세계화, 구조변화, 기술혁신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은행들간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그래서 은행들은 비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 조직 재편성을 통한 노무비 삭감을 도모하게 되었다. 여기서 은행들이 활용한 인사관리제도가 신인사제도였다. 은행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인적 조직을 복선 코스로 분류함으로써 급격한 노동력 구성이나 노동내용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게 되었다. 이 신인사제도는 내부노동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다른 인력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탬한다는 의미에서 듀어리즘에 맞는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은행은 신인사제도의 주요기능인 정규직 노동자의 삭감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대체화를 통하여 고용의 양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듀어리즘을 심화시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즉 은행들은 인건비를 삭감하고 경기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의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은행 노동시장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단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승진·근로조건 등의 차별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II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듀어리즘이란 노조의 교섭력에 규제를 가하거나 노조의 미조직부문을 확대시킴으로써 시장원리를 더욱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노조 조직력을 약체화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듀어리즘적인 고용 유연화 전략은

노조원의 감소나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초래하여 노조를 약체화시켰다.

이에 대해 경제위기 이후 산업별 노조는 노조의 산별화를 추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모색하고 듀어리즘의 심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은행 수준에서 보면 은행노조는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것은 은행노조의 대응이 듀어리즘을 수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충격흡수자로서 기능시킴으로써 노조원인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으로 작용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별 노조가 은행노조의 상급단체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은행노조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조직간 이기주의가 금융 노동조합운동의 고도집권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듀어리즘적인 경향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韓國語文獻

#### (資料)

- 금융감독위원회(1998a), 「부실은행 정리에 즈음한 금융감독위원장 발표문」.  
금융감독위원회(1998b), 「5개 정리는행 근로자 대책」.  
금융감독위원회(1998c), 「부실은행 정리관련 금융위원장 국민담화문」.  
금융감독위원회(1999), 「증권회사 임직원 및 점포 현황」.  
노사정위원회(2000), 『향후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  
은행감독원 검사통괄국 정보개발과(1998), 「일반은행의 인원 현황(1998.4월 기준)」, 금융감독위원회 자료.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 분석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2000), 「전국산업고용구조의 변화와 전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2001a), 「구조조정과 사무금융 노동조합 -실태와 과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2001b), 「사무금융산별노조 건설방침(토론안)」.  
한국경영자총협회(1999), 『노동경제연감(1999년판)』.  
한국노총 조직사무국(1998), 「왜 산별노조인가?」, 한국노총 자료.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2000), 「金融部門 改革 推進方向」,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段階 4大部門 改革 推進方向』, 2段階4大部門改革推進方向報告會議 자료.

#### (著書)

- 김상곤(1996), 「신인사제도와 간접자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신인사제도 및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3-44.



김형기(1997),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한울.

박우성·유규창·김병연(1999), 『은행산업 연봉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배무기(1995),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대립에서 협력으로의 전환』, 경문사.

조순경·권현지·최성애(1995), 「기술변화와 노동운동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중앙연구원.

최영기·김준·조효래·유범상(2001),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論文)

김상조(2000),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 『산업노동연구』 Vol.6, No.2, 1-35.

류기락(2001),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집합행위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Vol.7, No.2, 129-164.

박창명(2002),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비교분석 -코포라티즘과 이원분할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선한승(2000), 노사정위원회의 금융대타협 역할과 성공요인 노사정위원회 자료.

시석중(2003), 「비정규직의 확산방지와 보호방안 —은행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금융산별 공동노보 노동의 미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Vol.5, 21-25.

이창순(1998), 「조직의 유연화와 조직구성원의 주변화」, 『慶熙大企業經營研究』 No.5, 117-139.

최규덕(2000), 「특집 2 금속산업노조 상반기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사회』, 8·9월호.

허재성·유혜미(2002),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자료.

#### (新聞)

인터넷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인터넷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 2. 英語文獻

Berger, S. (1980), "The Traditional sector in France and Italy", in S. Berger and M. Piore ed., *Dualism and Discontinuity in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8-131.

Doeringer, P and Piore, M. (1971), *Internatio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D. C. Heath Co.

Goldthorpe, J. H. (1984), "The End of Convergence: Corporatist and Dualist Tendencies in Western Societies," in J. H. Goldthorpe ed., *Order and Conflict in Contemporary Capitalism*, Clarendon Press, 315-343.

Piore, M. (1980), "Dualism as a Response to Flux and Uncertainty," in S. Berger and M. Piore eds., *Dualism and Discontinuity in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29-49.

Sengenberger, W. (1981), "Labour Market Segmentation and the Business Cycle", in F.

Wilkinson ed., *The Dynamics of Labour Market Segmentation*, London: Academic Press, 243-259.

### 3. 日本語文献

五十嵐仁(1998), 『政党政治と労働組合運動—戦後日本の到達点と21世紀への課題』, お茶の水書房.

石田徹(1992), 『自由民主主義体制分析—多元主義・コーポラティズム・デュアリズム』, 法律文化社.

新川俊光(1993), 『日本型福祉の政治経済学』, 三一書房.

渡辺峻(2001), 『コース別雇用管理と女性労働(増補改訂版)』, 中央経済社.

# 조선에 있어서의 인견직물업의 전개와 일본제국경제권

福岡 正章

京都大学

본고의 목적은 1930년대 조선의 인견(人絹)직물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공업화가 일본, 조선, 만주라는 일본제국경제권에 끼친 영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1930년대의 조선공업화 연구에 있어서는 공업화의 내용과 메커니즘 등에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30년대에 공장 및 회사의 증가, 공산품시장의 확대, 노동자수의 증대라는 현상이 나타나 공업화가 진전되었다는 평가에는 거의 이론(異論)이 없다<sup>1)</sup>. 한편 섬유산업은 전 조선의 노동자수에 점유하는 비중과 생산액 면에서도 조선의 공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이었으므로 선행연구도 조선에 존재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명확해졌다. 일본의 근대적인 면방직업이 조선에 진출함과 동시에, 일본 자본이 면작농민에의 수탈을 강화함에 따라 농촌에서는 자급적인 가내 면직물업도 존재하게 되는 이중구조가 형성된 점이 명확해졌다<sup>2)</sup>. 또한, 경성방직과 조선방직이 개항 이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면직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이입대체(移入代替)해 가는 과정도 밝혀졌다<sup>3)</sup>. 요컨대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섬유산업의 조선진출과 조선내에서의 섬유산업 발전이 조선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검토 대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섬유산업이 발전했다는 것이 동북 아시아 규모의 경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고는 조선의 공업화라는 사회변화가 일본제국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인견직물업의 전개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당시, 조선의 인견직물업은 직물을 짜기만 하는 직포전문(織布專門)공장, 염색만을 하는 염색전문(染色專門)공장, 직포와 염색을 일관(一貫)작업으로 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겸영(兼營)공장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으며, 염색전문공장과 겸영기업은 일본에서 진출해 온 것이 중심이었으나 직포전문공장에는 조선인 공장도 존재했다. 다만 인견사(人絹糸)는 모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였다.

본고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 조선의 직물 소비에

1)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堀和生,『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有斐閣,1995年. 金洛年,『日本帝國主義下の朝鮮經濟』,東京大學出版會,2002年을 들 수 있다.

2) 權赫泰,「日本纖維産業の海外進出と植民地」,一橋大學經濟學研究科博士學位請求論文,1997年.

3) 주익중,「後發者와 後後發者-일제하 朝鮮紡織(株)와 京城紡織(株)」,『경제사학』32호,2002년 6월. 이 외의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정안기,「朝鮮紡織의 戰時經營과 資本蓄積의 전개」,『경제사학』32호,2002년 6월.

曹晟源,「近代 日本 綿業과 植民地 朝鮮」,『연세경제연구』2호,1996년 가을.

주익중,「확장기의 京城紡織」,『경제사학』29호,2000년 12월.

서 차지하는 인견직물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염색전문공장, 경영기업이 조선에 진출해 온 요인을 살펴본 후에, 조선의 인견직물업의 생산구조, 즉 직포부문과 염색가공부문의 분업구조를 검토한다. 이어서 2장에서는 조선에서의 인견직물업의 수출시장과 수출형태를 분석하여 일본제국 경제권에 있어서 조선 인견직물업의 위치를 확인한다.

## 1. 조선에 있어서의 인견직물업의 생산구조

### 1) 조선에 있어서의 인견직물업의 자리매김

인견직물은 일본에서 인견사(人絹糸)가 직물에 사용됨에 따라 1920년대말부터 조선에서도 소비가 증가해 왔다. <표1>은 조선에서의 인견직물, 공장제 면직물, 견직물의 소비동향을 추급한 것이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모든 직물의 소비가 1936년까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직물 개별적 소비동향을 보면, 면직물은 일본으로부터의 이입(移入)량이 감소하는 1937년부터 소비도 감소해 간다. 그에 비해 인견직물의 소비는 1920년대 말경부터 급속히 증가해서 1938년에는 면직물의 소비에 필적할 정도가 되며, 이후에 일본으로부터의 이입 감소에 따라 소비량도 감소하게 되나 그 감소 경향은 면직물에 비해서 완만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견직물의 소비는 42년에 이르러서도 1936년과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1941년에 대일본방적의 청진공장이 가동됨으로서 조선 국내에서 인견사의 생산이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직물은 38년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이입증가와 조선 국내의 생산증가에 의해 소비가 증가해 간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아, 30년대 후반의 조선에서 인견직물의 직물 소비에서의 비중이 면직물에 이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견직물의 생산 및 수이입(輸移入), 수이출(輸移出)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지적해 둘 점은, 수이입은 사실상 모두가 일본에서 이입된 것이라는 점이다. 192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 이입품을 소비하고 있었으나, 1931년부터는 조선 국내에서 생산이 행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국내에 염색일관(一貫)의 경영기업과 직포전문공장이 서서히 설립됨에 따른 현상이었다. 그러나, 36년에서 39년까지의 이입량은 생산량의 약 다섯 배에서 일곱 배에 달하였다. 즉, 소비되는 인견직물은 일본으로부터의 이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생산과 수이출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수이출은 36년에서 39년까지의 4년 동안에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그 기간의 생산과 수이출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절반 내지 3분의 2정도가 수이출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37년에는 생산량을 초과한 양이 수이출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장에서의 인견직물 소비의 확대는 일본으로부터의 이입증가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때문에 조선은 네덜란드령 인도, 인도와 함께 일본의 삼대(三大) 인견직물시장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

한 시장이 되어갔다<sup>4)</sup>.

그러면 이러한 소비 확대는 어떠한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이하의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제로 도시의 포목상은, 인견 이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주로 조포(粗布), 세포(細布) 등의 면포 가공품만을 점포 앞에 나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인견물로 점포 앞을 채워 고객의 구매열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태다.<sup>5)</sup>」

특히 도시의 포목상이 면직물 대신에 인견직물을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포목상의 인견직물 취급현상은 소비 확대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인견직물 소비의 확대라는 조선사회의 변화가 경영기업, 염색 전문공장이 조선으로 진출하게 되는 요인의 하나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표 1

4) 山崎廣明,『日本化纖産業發達史論』東京大學出版會, 1975年, 192페이지.

5) 宮林泰司,『朝鮮に於ける織物に就いて』朝鮮綿糸布商連合會, 1935年, 27페이지.

## 2) 조선 인견직물업의 생산구조

### ① 겸영기업

인견직물은 30년대 초에 이르면 소비증대에 따라서 조선 내부에서도 생산이 개시된다. <표2>는 1937년경 조선에 있었던 직포전문공장 및 겸영기업의 대표자와 그 월산(月産) 직포 능력 등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직물, 조선방직, 태창직물, 부산직물, 경기염색의 5사는 제직(製織)과 동시에 염색 가공을 행한 염색일관의 겸영기업이었으며, 그 외는 직포전문 공장이었다. 겸영기업 각각의 연혁을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직물은 32년에 이토츄(伊藤忠)가, 경기염색(京畿染織)은 37년에 동양면화(東洋棉花, 이하 동면으로 표기)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었고, 조선방직은 원래 면방직업이었으나 30년대 초두에 인견직물의 제직과 염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 직물은 마직물에서 전환한 것이다. 겸영기업 중에서 유일한 조선인 공장인 태창직물(泰昌織物)은 중국과의 견직물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던 백윤승(白潤承)이 설립한 대창무역사(大昌貿易社)가 1918년에 소규모 직물 공장인 대창직물(大昌織物)을 설립한 것에서 시작된다<sup>6)</sup>. 태창직물은 인견직물을 생산하기 이전에 견직물을 생산했으나, 30년을 전후로 인견직물을 제직하기 시작하여, 30년에는 견직물과 인견직물의 생산비는 2대 8의 비율이었다<sup>7)</sup>. 이들 5사는 30년대에 인견직물의 제직과 가공을 시작했다.

이들 겸영기업 중에서 상사계인 조선직물과 경기염색의 2사는 1930년대에 조선에 진출한 것인데, 진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34년 이후, 일본 본국에서는「인견 불황(人絹不況)」이라 일컬어지는 사태가 이어져 인견직물의 가격은 하락세였기 때문에 염색업자도 일본수출직물(日本輸出織物) 염색공업조합 연합회(染色工業組合聯合會, 이하 염공련으로 표시)를 결성하여, 생산 할당과 가공임 협정 등을 행하고 있었다<sup>8)</sup>. 한편 인견직물의 염색가공을 염색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던 상사(商社)측에서 보면 염색업자의 자립화는 바람직한 사태라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에서는 공업조합 통제 등의 근거가 되는 공업조합법(工業組合法)이 시공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 공업조합법의 시행 유무가 상사 자본의 조선진출을 재촉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그 외의 3사는 조선에서 인견직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른 인견직물업에의 진출이었다고 생각된다.

6) 趙璣濬, 『韓國企業家史』, 博英社, 1974年, 189-190페이지.

7) 權泰穩, 『韓國近代綿業史研究』, 一潮閣, 1989年, 265페이지.

8) 白木澤旭兒, 『大恐慌期日本の通商問題』, 御茶ノ水書房, 1999年, 317-320페이지.

9) 조선직물을 설립한 이토츄(伊藤忠)의 조사부장은 1938년 4월에 일본인견직물공업조합연합회(이하 인공련)가 주최한 인견 좌담회에서 이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자네들은 대 자본으로 조선에 진출했는가라고 반문 받는다면, 그것은 내지(內地)의 엄중한『통제 어기기』 또는『통제 벗어나기』를 위한 것이다.」 『北支.滿鮮における座談會概要』, 人工連, 『人絹』2卷 5號, 1938年 5月, 35페이지.

표2

37년의 이들 5사의 직포 생산 능력은 직기대수가 1417대로 <표2> 중에서 과반을 차지한다. 제직수량은 176만 9천평방야드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5사의 일개월간 염색 가공능력은 <표3>에서 알 수 있는 대로 409만평방야드이다. 이것은 일개월간의 직포 생산 능력에 비하여 약 두 배 이상의 가공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의 겸영기업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직물을 가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위탁가공에 응할 여력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실제로 이들 겸영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제직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경기염직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동면(東棉)이 경영하고 있는 직물공장(경기염직을 가리킴-필자)을 보면 기계는 최신식, 정비는 완전하여 문제가 없고, 츠다식(津田式) 철제 직결 모터를 구비하여 내지(內地)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상적인 공장은 매우 드물 것이다. 전부 10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목하 설치 중인데, 현재 운전하고 있는 200대의 직기로 생산되는 상품의 대부분은 인견 평직으로 일부의 직기에는 자카드 및 도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계로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아깝지만, 장래에는 고급품으로 나아가 가공할만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본다.<sup>10)</sup>」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카드가 딸린 직기, 도비가 딸린 직기 등 고급품을 제직할 수 있는 직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제로는 평직(平織)이라는 저급품을 제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 표3

#### ② 염색 전문 공장

염색 전문 공장과 그 가공 능력을 나타낸 것이 <표4>이다. 조선에서의 염색 전문 공장은 창화(昌和), 환화(丸和), 유정염공(柳町染工), 일선염공(日鮮染工)의 4사로 이들의 직물 염색가공능력은 428만 4천평방야드였다.

10) 人工連北支.滿鮮調査團,『日滿支經濟ブロックと人絹織物~北支.滿鮮調査報告書』 1938年, 61페이지.



이들 염색 전문 공장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화공업은 조선의 타카세 합명회사(高瀨合名會社), 타나나오상점(谷直商店), 오사카직물수출조합(大阪織物輸出組合)의 구성원이었던 후지모토마사루(藤本勝)상점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것이었다<sup>11)</sup>. 그리고, 일선염공은 후쿠이현 견인견사포 수출조합(福井縣絹人絹糸布輸出組合)의 조합원이었던 야마다센노스케(山田仙之助)가 설립한 것<sup>12)</sup>이었고, 장화공업은 츠지히사(辻久)상점의 계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up>13)</sup>. 상사계 자본인 조선직물과 경직염직이 일본에서 염공련에 의한 가공임, 가공수량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관계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에서 인견직물의 현지 생산을 개시한 것을 서술했다. 염색업의 조선진출도 일본에서의 이러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직물상의 행동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염색업의 조선에의 진출은 어떠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을까. 염색업이 조선에 진출해 오기 이전의 조선 인견직물업은 조선 국내에서 염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직물을 조선에서 제직하여 이들을 일본에서 염색한 후, 다시 조선에 이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임의 관계상, 조선내에 이출되는 일본품보다 1탄(一反)당 1엔(円)내지 1엔 50전(錢) 정도 비용이 더 들어 일본품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였다<sup>14)</sup>. 그러나 조선에의 염색 전문 공장의 진출은 이러한 경비를 저하시키게 되었다.「지금까지 염색 공장이 (조선에) 없었기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았던 많은 소공장(小工場)도 직기만 설치한다면 채산을 취할 수 있<sup>15)</sup>게 된 것이다. 결국, 염색 전문 공장의 진출은 조선인 공장도 포함한 직포전문공장이 증가하는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표4

### ③ 직포 전문 공장

이어서 제직전문공장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 제직전문공장은 11개 공장 중 3개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선인의 공장이었는데, 조선인 공장 중에 인견직물공장으로

11) 朝鮮織物協會, 『朝鮮纖維要覽』, 1943年, 160페이지.

12) 紡織雜誌社, 『紡織要覽』, 1939年, 346페이지.

13) 「黎明期における朝鮮の人絹」, 人工連『人絹』1卷 7號, 1937年 7月.

14) 「内地人絹を遏壓」, 『京城日報』, 1931年 3月 20日.

15) 「朝鮮に於ける大工業の勃興と資本系統」, 朝鮮工業協會, 『朝鮮工業協會報』28號, 1935年 5月.

로 출발한 것을『조선공장명부』에서 찾아보면新光직물(新光織物), 아사히견직(旭絹織), 해동직물(海東織物), 조선 직물 공업사(朝鮮織物工業社)가 보인다. 서경 염색소(西京染色所), 목포직물(木浦織物), 조선견직(朝鮮絹織)은 견직물 공장으로부터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조선인 공장은 주로 생사와 인견의 교직물(交織物)을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표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사히견직, 조선 직물 공업사, 서경 염색소 등이, 동면, 이토츄, 초리(蝶理)등 일본의 섬유 전문 상사를 통해서 원사의 구입, 제품의 판매를 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영기업과 직포전문공장의 인견직물 생산량을 대비하여 본다. <표5>는 경영직 공장의 인견직물 생산을 추계하여, 조선 전체의 인견직물 생산량에서 이를 제외하고 작성한 것이다. 이를 보면 1933년부터 1938년에 걸쳐서 공장수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장수에서는 조선인 공장을 중심으로 증가해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처럼 직포전문공장의 부문에서도 공장수, 생산량 모두가 30년대에 발전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의 일개월간 생산량은 38년에 약 85만평방야드에 지나지 않았고, 경영기업과 염색 전문공장의 가공능력에 걸맞는 만큼의 직물을 조선 국내에서 생산할 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5

### 3) 조선에 있어서의 인견직물업의 전개

전절에서는 조선 인견직물업의 구성요소인 직포전문공장, 염색전문공장, 경영기업 각각의 분업관계를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조선 인견직물업의 생산 구조는 염색가공 능력에 비해 직포 능력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이 명확해졌다.

<표6>은 조선내의 인견직물 생산과 이입품 염색 가공 실적의 추계를 비교한 것이다. 염색 가공 실적은 단위 해당의 가공임으로,『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의「가공 및 수리란」에 기입된 인견직물의 가공액을 뺀 것을 이입 인견직물의 가공으로 계산했다. 다만, 이 자료에서는 1940년에 가공 및 수리란의 기재형식이 바뀐에 따라 이 이후의 데이터에 관해서는 추계할 수 없었다. 이 표에 따르면 이입품 가공의 최

성기인 38년은 이입품의 약 70%가 염색 가공되어, 조선내 생산은 그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내에서의 인견직물은 완만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것보다도 이입 인견 원단의 가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직포공장의 저생산성에 따라 조선직물협회염색부가 조선총독부식산국에 이입 인견직물의 면세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sup>16)</sup>. 당시 조선에서는 총독부의 재정상의 이유에서 주정(酒精), 직물(織物), 주정함유음료(酒精含有飲料)의 세 종류에 수입세와 같은 종류의 이입세가 부과되고 있었다<sup>17)</sup>. 이 진정서는 조선내에서 인견직물업이 미발달해 있으므로 일본으로부터의 인견직물의 이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일본제 인견직물과의 경쟁이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이입 인견직물의 면세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8)</sup>. 최종적으로 이 진정서가 받아들여져, 37년 4월에는 인견직물이 면세대상이 된다<sup>19)</sup>. 이 시점에서 조선의 겸영직포업과 염색업이 일본본국과의 분업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독부의 조치는 직포 전문공장을 총독부에 의한 보호 외에 두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조선의 인견직물업은 인견직물을 일본에 의존하면서 전개되어 간다.

## 표6

### 2. 제국경제권에 있어서의 조선의 인견직물업

#### 1) 인견직물 수출의 형태

전장에서는 조선의 인견직물 생산의 중심이 일본제 직물의 가공에 있었던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러한 생산의 양상이 인견직물 수출의 양상을 어떻게 규정한 것일까.

조선의 인견직물 수출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제1의 것은 적체 수출(積替輸出)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조선내의 이입수속을 행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유치한 후, 그대로 수출로 돌리는 것이다. 제2의 것은 보세 가공 재수출(保稅加工再輸出)이라고

16) 「協會錄事」 朝鮮織物協會, 『朝鮮織物協會誌』 1號, 1936年 11月, 65페이지.

17) 山本有造, 『日本植民地經濟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1992年, 70페이지.

18) 「協會錄事」 前掲誌.

19) 「協會錄事」 同上誌 2號, 1937年 6月, 65페이지.

할만한 것으로 보세의 상태 즉, 이입세(移入稅)를 지불하지 않고 일본에서 이입된 직물을 가공 공장에 반입하여 일년 이내에 수출하는 것이다<sup>20)</sup>.

그리고, 제3의 것은 조선내에서 직포로부터 염색가공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거친 후 수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규정속에서 제2와 제3의 것을 조선내 생산품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수출형태의 양적인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적체수출과 조선내 생산품의 추이를 보자. 적체수출의 수량은『조선무역 월표』의「내지(內地)산 수출이라는 항목을 채용했다. 이에 따르면 1936년 이후 적체 수출은 36년 1054만평방야드, 37년 1802만평방야드, 38년 13만평방야드, 39년 117만평방야드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내 생산품 수출은 36년 67만평방, 37년 2072만평방야드, 38년 2261만평방야드, 39년 2170만평방야드로 37년에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보세 가공 재수출과 조선내 제직(製織)품 수출의 구별을 위해 <표7>를 작성해 보았다. <표7>에서는 소비목적의 이입이 600만평방야드에서 800만평방야드 정도로 일정하나,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입은 수출과 병행한 형태로 증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37년 5월에는 재수출 목적의 이입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 해에 수출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37년 4월에 일본 인조 견사포 수출조합연합회(日本人造絹糸布輸出組合聯合會), 인공련, 염공련이 조선에서 수출을 관리하고 있던 조선 총독부와 일본의 상공성(商工省)에 진정을 한 결과, 조선 총독부가 조선 인견직물 염색 동업조합(朝鮮人絹織物染色同業組合)의 조합원 공장에서 가공한 것만 수출을 인정한 것에 기인한다<sup>21)</sup>. 이는 실질적으로 제1 형태의 수출이 금지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37년 5월에 재수출 목적의 이입은 158만 8천평방야드로 같은 달의 수출은 172만 5천평방야드이다. 이 숫자를 통해 수출의 약 92%가 가공재 수출품으로 점유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수출되는 인견직물의 수출품종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37년 4월부터 38년 3월까지의 1년간의 수출품목을 표시한 것이다. 조선에서는「보통품」 즉, 저가격, 저부가가치품인 평직(平織), 문직(紋織), 보일(voile), 주자(朱子)가 수출수량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축면 등의 고급품은 12% 정도에 그치고 있다<sup>22)</sup>. 따라서 조선으로부터의 수출 품목은 그 대부분이 저가품, 저부가가치품의 저급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절에서 검토한 것을 요약하면 조선 인견직물업은 주로 저급품의 보세 가공 재수출을 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 神戸絹人絹輸出組合,『朝鮮經由人絹織物輸出組合と鮮内人絹織物業界の實狀に就いて』 1937年, 6페이지.

21) 朝鮮銀行調査課,『鮮滿支財界彙報』 1937年 5月, 11페이지.

22)「鮮産人造絹織物檢査成績及關係統計表」 朝鮮織物協會,『朝鮮織物協會誌』 8號, 1938年 9月, 22페이지.

## 표7

## 2) 조선 인견직물업의 수출 시장

조선의 인견직물업의 수출시장은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에서의 인견직물의 수출 수량을 시장마다 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일본에서의 이입량의 증대와 수출량의 증대가 비례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이입량이 감소하면 수출량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조선의 인견직물업이 직물의 면에서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 된다. 특히 37년에서 39년까지의 수출량은 이입량의 10%에서 30% 정도로, 조선의 인견직물업과 일본의 분업관계가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수출 절정기는 1937년으로 약 3875만평방야드를 수출하고 있었으나, 수출시장에 관해서 말하자면 일본제국권외의 수출에 관해서 그 비율이 높았던 37년 24%, 38년 28%에 그치고 있었다. 일본제국권외의 수출지는 모로코, 네덜란드령 인도, 이라크 등의 구미의 식민지 지역이 중심으로, 1939년 이후 조선에 있어서도 인견 링크제가 채용되어 일본제국권외에의 수출 증가가 도모되나, 38년을 즈음하여 일본제국권외에의 수출이 급속히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조선 인견직물업은 일관되게 일본 제국권을 시장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만주국, 중화민국, 관동주 각각의 시장상황에 관해 보기로 한다. 우선 조선에 있어서 전체의 절반내지 3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주시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련 상공회의소(大連商工會議所)의『년보』에서 만주국의 1930년에서 1935년까지의 인견직물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조적인 것은 일본과 중화민국에서의 수입에 관해서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30년 48만 2천엔이었으나, 33년 368만엔, 35년에는 1727만엔으로 약 40배 가까이까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화민국으로부터 만주국이 수입한 금액은 30년 67만엔, 31년 55만엔, 33년 86만엔으로 33년까지 만주국에서의 시장 점유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33년을 전기로 일본으

로부터의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화민국은 정체되었다. 33년 이후 중화민국으로부터 만주국이 수입한 금액은 34년 86만엔, 35년 23만엔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으로부터의 수입량도 32년 2천엔에서 33년에는 약 4만엔으로 증가하였고 35년에도 같은 정도의 금액을 수입하고 있었다<sup>23)</sup>. 이것은 만주국이 관세정책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 분리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조선 인견직물업은 상해제의 인견직물이 들여지지 않게 되었던 만주시장에 수출을 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만주시장에서는「(만주에서의) 인견직물의 매상은 역시 값싼 물건, 규격품이 가장 잘 팔린다. 이 외에 색다른 물건은 그다지 팔리지 않는다<sup>24)</sup>」고 하여, 만주인들이 저급품을 즐겨 입어 이러한 기호가 조선의 인견직물 수출에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 표8

봉천(奉天)역에 착하하는 인견직물의 발송 경로를 봄으로서 인견직물의 만주에의 유입경로를 보기로 하자. 1934년도의 내지 연락의 인견직물은 461톤으로 1936년은 386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선연락의 인견직물은 1934년 8톤에서 1936년에 106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철선에 관해서 보면, 대련(大連)에서 발송된 인견직물은 1934년 1320톤, 1935년 1978톤, 안동(安東) 발송의 인견직물은 1934년 2047톤, 1936

23) 만주국이 조선으로부터 수입한 인견직물의 금액이 <표8>의 수량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朝鮮貿易年報』를 통해 조선의 만주를 겨냥한 수출 금액을 확인하면, 35년에는 104만엔이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조선의「경유수출」을 만주국 측의 해관(海關)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포함시켰고, 조선 측은 조선의 수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4)「北支.滿鮮における座談會」, 人工連,『人絹』2卷 5號, 1938年 5月, 28페이지.

년 6432톤으로 급상승하고 있다<sup>25)</sup>. 안동에서 발송된 인견직물은 조선 경유의 인견직물이라 생각되므로 조선을 경유하여 만주에 유입되는 인견직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추측된다.

중화민국에의 수출은 그 대부분이 화북으로의 수출로 점유된다. 화중, 화남에의 수출이 보인 것은 35년 4천야드, 38년의 30만 8천편방야드뿐이었다. 이 이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북으로 수출이 집중된 이유는 1935년에 성립한 일본의 괴뢰정권인 기동(冀東)정권에 의한 관세 인하의 결과이다. 1938년「중화민국 유신정부」가 성립하여 인견직물의 관세가 종래의 80%에서 45%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그래도 화중, 화남에의 수출은 늘어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관동주에의 수출이다. 관동주에의 수출은 만주국에 이은 수출량이다. 그러나 이들 인견직물은 관동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관동주를 경유하여 화북, 만주로 재 수출되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아온 것처럼 조선 인견직물업은 일본제 인견직물의 만·관·화북방면의 보세 가공 재 수출기지로서 일본제국경제권에 자리매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일본과 조선의 인견직물업의 대립

조선에 있어서 인견직물업의 전개는 조선을 매개로 일·만간의 새로운 인견직물 유통 루트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견직물업과의 대립도 일으켰다. 이 대립의 과정에서 조선의 인견직물업은 조선 독자의 가공임, 가공 수량 등을 통제해 가게 된다.

#### ① 조선시장을 둘러싼 판매경쟁

1934년 이후, 「인견불황」에 따라 일본에 있어서 인견직물 가격의 하락과 일본의 인견매상의 금융 불원활은 조선에 인견직물의 이출덤핑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인견직물 가격이 채산 가격을 밑돌게 되었다. 조선에서의 인견직물(평직의 경우)은 직물의 이입운임, 염색 가공 요금을 고려해서 야드당 10전(錢) 5리(厘)가 채산점(採算点)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도매상의 이출덤핑에 의해 36년 1월에서 평직의 시가는 9전 7리까지 하락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조선내의 경영기업이 채산 악화에 빠져, 염색 전문공장은 조업이 중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sup>26)</sup>.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선직물, 조선방직, 태창직물, 부산직물의 4사는 인견직물의 판매가를 일본정도로 인상하는 가격 협정을 맺는다. 이 가격협정에 조선 염색 정리, 창화공업 등의 염색 전문공장도 가세하려고 했으나 이들의 염색 전문 공장은 협정에의 참가를 거부당하는 대신에 경영기업측이 가격 유지 방책을 지지할 것과 염색

25) 人工連北支. 滿鮮調查團前掲書, 43-44페이지.

26) 「内地業者の投げ賣りで半島は人絹の洪水」 『京城日報』 1936年 2月 15日.

가공임금의 최저가격 협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했다<sup>27)</sup>. 더욱이 겸영기업 4사는 2월 12일, 조선내의 도매상인들에게 평직 10전 5리를 표준으로 하여 모든 인견직물의 가격을 최저가격에 못박아 그 이하로는 판매를 행하지 않을 것을 통고했다<sup>28)</sup>. 그 결과, 시가는 회복으로 향해 10전 정도까지 회복했다. 그리고 1936년 2월 17일 겸영기업의 4사는 채산이 가장 악화된 평직의 최저가격을 10전 2리에서 10전 5리 정도로 인상할 것을 결정한 후, 조선방직, 조선직물이 평직의 조업을 단축하고, 부산직물, 태창직물은 동제품의 생산을 중지하여 시가의 회복에 힘썼다<sup>29)</sup>.

이상과 같이 일본으로부터의 가격이 낮은 인견직물의 유입에 대해서 조선내의 겸영직포기업은 가격 협정, 조업 단축 등 독자적인 카르텔행위로 대응했다.

## ② 염색가공통제를 둘러싼 대립

여기에서는 조선에의 직물 이입과 가공수출을 둘러싼 염공련과 조선 인견직물 염색 동업조합간의 대립을 보자. 염공련은 조선의 염색 공업의 발전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염색되지 않은 직물이 이출 증대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미 1935년 9월 17일에「내지(內地)에서 생지(生地)를 이입하여 조선에서 염색하는 것은 내지의 염색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sup>30)</sup>」는 이유에서 조선직물 협회 염색부에 염공련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거나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직물의 이입을 자체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 대하여 조선직물 협회 염색부는 동년 9월 21일, 염공련 대표에게 본국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염공련)에 가입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또한 이입제한에 관해서는「검토한 뒤에 회답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sup>31)</sup>. 조선에 진출해 온 겸영기업, 염색전문공장은 염공련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조선에 진출해 온 것이었다. 그 때문에 염공련의 통제에 편입되는 것은 이들이 조선에 진출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염공련은 1937년 4월 7일에 수출 인견직물에 관해서 조선, 대만 등 외지에 있어서도 본국과 같은 수출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조선에 있어서도 공업조합법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수출을 위한 인견직물 가공의 통제를 도모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조선 총독부와 일본의 상공성에 제출했다<sup>32)</sup>. 그러나 결국 실시된 것은 조선으로부터의 수출검사만으로, 즉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은 조선에서의 적체 수출에 한한 것이었다. 인견직물의 조선이출과 조선내 가공에 관해서 아무런 통제도 없었으므로, 조선의 인견직물업의 이해(利害)상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겸영기업과 염색전문공장의 8개 회사<sup>33)</sup>에 의해

27) 「協會錄事」 『朝鮮織物協會誌』 1號, 1936年 11月, 66페이지.

28) 京城日報前掲記事.

29) 「滯貨一巡で人絹市價立ち直り」 『京城日報』, 1936年 2月 18日.

30) 「協會錄事」 『朝鮮織物協會前掲誌』.

31) 同上

32) 同盟通信社, 『人絹年鑑』, 1938年, 500페이지.

33) 이 여덟 개의 회사는, 조선직물, 태창직물, 경기염직, 부산직물, 조선방직과 염색전문공장인



조선 인견직물 염색동업조합이 결성되었다. 동 조합은 수출 직물의 검사뿐 아니라 가공임금의 협정, 가공수량의 조절, 직공임금의 협정 활동도 행하였으며 이러한 8사는 일본과는 별도의 자치적인 통제를 행하게 되었다.

조선의 직물 이입과 가공 재수출이 통제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염공련은 조선 인견직물업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결의하여 1937년 7월 17일에 염공련 임시 총회에서 조선인을 향한 인견직물 염색가공에 관해서 이하와 같은 결의를 채택한다<sup>34)</sup>.

- ① 초과 생산은 무제한으로 승인한다.
- ② 통제 수수료는 종래의 반액으로 한다.
- ③ 일반 협정 가공요금은 현행의 반액으로 한다.

결국, 이러한 결의의 내용은 조선인을 상대로 한 이출을 염공련의 가공수량 통제, 가공임금 통제에서 떼어냄으로서 조선방면의 직물 이출에 특전을 부여하여 조선의 인견직물업과 본격적인 경쟁을 행하려 한 것이었다.

이러한 염공련의 조치에 대하여 조선측이 어떠한 대응을 취했는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1937년말에 이르면 양자에 접근 기운이 양성되고, 1938년 1월에는 양자의 교섭이 개시된다. 이 교섭시에 문제가 된 것은 조선측의 가공요금과 매달의 직물 이입 수량, 가공수량에 관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가공요금에 관해서는 조선측의 기술적 열위를 감안하여 염공련의 가공요금과의 사이에 요금차가 인정되었다<sup>35)</sup>. 가공수량에 관해서는 조선시장을 겨냥한 가공은 통제에서 떼어지게 되었다<sup>36)</sup>. 그리고 직물 이입의 제한에 대해서 무엇이 논의되었는가는 불명확하나 가공요금, 가공수량에 관해서는 조선 인견직물 염색동업조합에 의한 독자적이며 자치적인 통제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인견직물의 염색 가공 통제를 둘러싼 대립은 조선의 경영기업, 염색업이 일본의 섬유 상사와 직물상이 진출해 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일본의 섬유전문상사, 직물상과 염색 가공업의 이해대립이 조선과 일본의 자치적 통제의 문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일본산 인견직물의 이출덤핑문제와 일본과 조선의 염색가공 통제를 둘러싼 일련의 분쟁 속에서 조선의 인견직물업은 가공임, 가공수량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자치적으로 통제를 행해가게 되었다.

### 3.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에 있어서의 인견직물업의 발전 구조를 검토해 왔으나 본고에서 명

---

환화공업, 창화공업, 일선염공이다.

34) 同盟通信社前掲書, 161페이지.

35) 「根本方針に基づき兩者の諒解なる」 『京城日報』 1938年 1月 28日.

36) 「内鮮人染業統制實行上は紛糾か」 『京城日報』 1938年 2月 13日.

확히 할 수 있었던 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기업, 염색 전문공장의 진출은 조선내부에서의 직포전문공장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직포부문의 능력이 염색 가공 능력에 비해 뒤떨어져 인견직물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조선의 인견직물업 조선은 만.관.화복을 대상으로 일본제 인견직물의 보세가공 재 수출기로서 일본제국경제권으로 자리매김 되어 간다.

둘째, 조선에 있어서 경영기업, 염색 전문공장의 진출은 조선을 경유하여 만주로 향하는 새로운 유통 루트를 형성했다.

셋째, 조선과 내지(內地)의 염색 가공 통제를 둘러싼 대립은 일본의 섬유상사, 직물상과 염색업과의 이해대립을 반영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조선은 독자적으로 가공수량, 가공임 통제를 확정해 갔다.

요컨대, 조선에 있어서 인견직물업은 직물을 일본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면서도 조선을 매개로 한 새로운 일.만(日.滿)간의 인견직물 유통 루트를 형성했다. 또한 1930년대 일본의 경제통제를 둘러싸고 염색가공 통제는 일본 본국의 자치적인 통제를 벗어나 조선 독자로 행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것은 제국권내에 있어서 경제통제가 조선과 일본에서 이중구조가 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인견직물업의 전개는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일본 제국의 경제구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투고규정

-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코리아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코리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타자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글일 경우는 “한글”, 영어일 경우에는 “Word”로 입력한다.
-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 원고일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문 원고일 경우 그 분량을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 Notes for Contribu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members of ISKS; and
-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by "한글" or "Word".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s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区舟橋町2-2 OIC Center  
国際高麗学会「国際高麗学」編集委員会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Funah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Email : info@isks.org

### 논문모집 \*\*\*\*\*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송 재 목(大阪經濟法科大学)  
편집위원 문 영 호(조선사회과학원)  
이 길 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瀧澤 秀樹(大阪商業大学)  
高 龍 秀(甲南大学)  
편집간사 배룡, 김홍수, 권해미

국 제 고 려 학

---

발행일 2003년 8월 31일  
편 집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총장 송재목  
발행처 국제고려학회  
國際高麗学会「國際高麗學」編集委員會  
〒543-0024 日本 大阪市天王寺区舟橋町2-2 OIC Center  
TEL : +81-6-6768-8425 FAX : +81-6-6763-5080  
Email : info@isks.org HP : <http://www.isks.org>

---

# Vol. 9

---

## <Pyongyang>

### Papers from “the Conference on Economic Laws of the D.P.R.K”

-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Business Related Laws  
of the D.P.R.K  
*An, Hyo-sik* 1
- Legal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in the D.P.R.K  
*Kang, Jong-nam* 16
- Main Elem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the D.P.R.K  
*Mun, Chol-man* 32

## <Seoul>

- One hundred years of 20th century Economic Development of Seoul  
*Yoo Kwang-ho* 60
- Educational Finance of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Gilsang Lee* 82

## <Japan>

- FTA Policy of South Korea  
*Koh Yong-soo* 97
- Deepening of the Dualism Trend in Korean Financial Labor  
after the Economic Crisis  
*Chang-myeong Park* 107
- The Rayon Industry in the 1930's Korea and Yen-bock  
*Fukuoka Masaaki* 121
-